

워크숍 자료집

우리나라 FTA와 전자금융법제

2010. 10. 27.



워크숍 일정

1. 일 시 : 2010년 10월 27일 (수) 15:00~18:00

2.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3. 세부내용

사 회 : 문준조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 1 주제: 전자금융에 대한 우리나라 국내법 규제내용과 개선방안

발 표 : 강준모 (금융감독원 IT 선임조사역)

제 2 주제: 전자금융거래에 인한 금융산업의 변화 전망

발 표 : 강현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식서비스단 단장)

제 3 주제: 전자금융거래와 소비자 보호

발 표 : 김선광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 4 주제: 중국 전자금융거래입법의 현황과 과제

발 표 : 오일환 (중국법정대학교 교수)

제 5 주제: 우리나라 금융시장 개방과 FTA

발 표 : 현대호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종합토론자

- 이훈중 (동국대학교 교수)

- 김형준 (한국정보화진흥원)

- 김유석 (한국금융투자협회 팀장)

- 손영화 (선문대학교 교수)

목 차

제 1 주 제 전자금융에 대한 우리나라 국내법 규제내용과 개선방안	9
I. 서 론	11
1. 문제의 제기	11
2. 전자금융거래법 제정배경 및 제정원칙	12
II. 현행 우리나라의 전자금융거래 관련 규제 현황	14
1. 전자금융거래법 이외의 전자금융거래 관련 규제체계	14
2. 전자금융거래법의 전자금융거래 규제체계	17
III. 전자금융거래법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37
1. 정보IT기술의 발전과 현행법상 금융정보보호 체계	37
2. 전자금융거래 인증방법과 발전방향	42
3. 해외 전자결제업자의 국내시장 접근과 관련 법률 문제	45
4. 전산시설·금융거래정보(신용정보)의 해외이전 시 관련 법률문제	48
5. 마일리지·포인트 등의 확산과 전자금융거래법 규제	50
제 2 주 제 전자금융거래로 인한 금융산업의 변화 전망 ...	53
I. 들어가며	55
II. 전자금융서비스 현황	57
1. 전자금융서비스의 정의	57
2. 전자금융서비스의 특성	58
3. 전자금융서비스의 분야별 현황	59
4. 전자금융거래법의 제정 및 시행	61

Ⅲ. 전자금융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제언	63
1. 전자금융이용자의 스마트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63
2.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적극적 활용	70
참 고 문 헌	75
제 3 주 제 전자금융과 지급결제업무에 관한 법적고찰	77
Ⅰ. 들어가며	79
Ⅱ. 현실인식의 토대	80
1. 전자금융	80
2. 전자화폐	82
3. 전자결제시스템	84
Ⅲ. 지급결제업무	86
Ⅳ. 금융소비자보호	87
1. 법익보호의 필요	87
2. 약관에 의한 보호	88
3. 개인정보의 보호	89
Ⅴ. 나오며	90
제 4 주 제 中國에 있어서 電子銀行業에 대한 規制의 現況과 課題	93
Ⅰ. 序 論	95
Ⅱ. 電子銀行業의 發展과 現行 規制形式	96
1. 전자은행업의 생성과 발전	96
2. 전자은행업에 대한 현행 규제형식	99

Ⅲ. 電子銀行業規制의 主要内容	101
1. 전자은행의 개념과 종류	101
2. 전자은행업무관리방법의 적용범위	101
3. 전자은행업무의 신청 및 변경	102
4. 전자은행업무의 리스크관리	106
5. 데이터의 교환 및 이전의 관리	108
6. 전자은행업무의 외주에 대한 관리	108
7. 국경간 업무활동에 대한 관리	109
8. 전자은행업무에 대한 감독관리	110
9. 전자은행에 대한 안전평가	112
Ⅳ. 電子銀行業에 대한 規制의 特色과 向後의 改善課題 ...	113
1. 전자은행업에 대한 규제의 특색	113
2. 전자은행업에 대한 규제의 향후 개선과제	114
Ⅴ. 結 論	115
제 5 주 제 우리나라 금융시장 개방과 FTA	117
제 1 절 국내 금융산업의 개방현황	119
1. 의 의	119
2. 금융서비스 개방경과	120
3. 금융산업별 개방현황	121
4.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124
제 2 절 우리나라 FTA 금융서비스협상의 주요 내용	125
1. 금융서비스 개방방식	125
2. 우리나라의 FTA 진행현황	128

제 3 절 한·미 FTA와 국내금융산업	129
1. 미국의 금융분야에서 FTA 체결전략과 우리나라와의 협상과정	129
2. 주요 타결내용	130
3. FTA 금융협상에 대한 평가	147
4.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148
 중 합 토 론	 151
토 론 문(이훈종)	153
토 론 문(김형준)	155
토 론 문(김유석)	161
토 론 문(손영화)	163

제 1 주 제

전자금융에 대한 우리나라 국내법 규제내용과 개선방안

강 준 모

(금융감독원 IT 선임조사역)

I. 서 론

1. 문제의 제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각 산업영역의 정보화 내지 지식화가 보편화 내지 정착화 단계에 까지 이르게 되면서 많은 부분 업무영역 내지 업무방법의 큰 변화가 초래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금융권의 경우 정보통신기술이 가장 기초적인 업무수단이 되면서 금융업무와 금융산업 구조에 많은 변화가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이러한 현상은 구체적으로 은행·증권분야 등 전 금융권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인터넷뱅킹¹⁾, 스마트폰뱅킹, 전자적 공과금납부 등 주로 환(換)업무와 지급결제업무에 집중되고 있으며 증권분야에서는 사이버주식거래, 스마트폰주식거래, 유가증권의 전자화(무권화) 현상이 대표적이다 할 것이다. 보험권역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보험판매 기타 비금융권역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 포함)의 발행, 소액자금이체 또는 지급결제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등 아주 편리하고 다양한 전자금융서비스가 현재 제공 중에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서비스를 하나

1) '10. 6월말 현재 19개 금융기관에 등록된 인터넷뱅킹 고객수는 6,334만명으로서 '10. 3월말(6,163만명)에 비해 2.8% 증가하였으며, 입출금 및 자금이체 거래기준으로 전자금융거래(비대면거래)는 전체 거래 중 86.7%(인터넷뱅킹 34.1%)를 차지하여 대면거래(13.3%)를 압도하고 있다. 한국은행, 2010년 2/4분기 국내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현황, '10. 7. 27 참고.

의 매체(예를 들어 휴대전화에 IC칩을 장착후 이용)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유비쿼터스(Ubiquitous) 금융‘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전자금융의 기술적 발전양상의 이면에는 전자금융의 취약점도 문제되고 있는바 서비스제공자의 입장에서는 전자금융거래 시스템상의 각종 위험²⁾을 감안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용자 입장에서는 각종 해킹위험에 대비한 스스로의 보안의식을 고취하고, 감독당국은 전자금융서비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감독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전자금융거래법 제정배경 및 제정원칙

가. 제정배경

기술한 금융권의 변화 이외 통신회사 등 비금융기관이 전자지급결제 분야에 진출하기 시작하고, 금융기관들의 IT업체와의 전자금융거래 관련 업무제휴 사례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법, 상법 등의 규율체계로는 많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체계적인 법체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많은 민원³⁾ 등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감안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규율 또는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또한 전자금융은 그 기술적 특성상 금융정보의 위·변조나 전산장애에 따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불명확하거나 현재 규범체계 내에

2) 전자금융거래에는 전략 리스크(Strategic Risk), 보안 및 시스템 리스크(Security & System Risk), 평판 리스크(Reputation Risk), 법률 리스크(legal Risk), 국가간거래 리스크(Cross-border Risk) 등이 존재한다. 금감원, 금융기관 전자금융업무 감독규정 해설, '01. 10 참고.

3)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전자결제 이용과정 중 소비자불만 또는 피해를 경험한 소비자는 설문응답자 전체(1,575명)의 40.3%로 나타났는데 결제수단별로 전자화폐(60.9%), 휴대폰 및 ARS결제(50.5%), 온라인계좌이체(42.6%), 신용카드(25.6%), 이메일뱅킹(25%) 순으로 나타났다. 전자금융거래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2002. 8. 참고.

서는 해석상 책임입증이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에게 전가되어 있어 이용자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다. 특히 이용자는 정보통신기술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며 실제적으로 관련기술을 제공하는 자는 금융기관이므로 금융사고발생시 관련 원인에 대한 입증을 시스템제공자가 해야 할 것이나 통상적으로는 이용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법원칙으로 되어 있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원칙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해당특성으로 인해 기존 오프라인 거래에서는 겪어 보지 못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여⁴⁾ 정보기술의 안전성과 관련한 새로운 기준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외 비금융회사의 무차별적인 전자금융업 진입에 따라 기존의 금융 관련 법규가 예상하지 못한 비금융회사에 대한 전자금융업 감독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⁵⁾ 기존 금융업에 대해서 해당회사의 재무건전성 기준이라든지 자산운용 기준 등 비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제활동 담보를 위한 관련기준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금융기관과의 업형태(다른 업과의 겸업 가능)를 고려 비금융기관에 적합한 감독기준을 반영하는 범규범 수요가 대두됨에 따라 이러한 점을 감안 재정경제부는 2000년부터 관련 기초 연구작업을 통해 '06.4.28 전자금융거래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나. 제정원칙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작업 당시 전자금융 통일규범(법) 제정방식⁶⁾에 대한 논란의 소지도 있었으나 통일적인 법체계 마련 및 금융IT 감독

4) 최근 피싱(Phishing)을 통한 ID, 패스워드의 도용으로 인해 최근 1년간 소비자, 은행, 신용카드사는 117억달러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다고 가트너(Gartner)는 언급하고 있다. ID절도 조직화·국제화, 전자신문, '05. 4. 11일자 신문기사 참고.

5) 이러한 점은 역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만 존재할 뿐이고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비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전자금융 감독정책의 편향성'이라는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다.

6) 전자금융 일반을 통괄하여 규율하는 통일법을 제정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으며 현재와 같이 산재한 법규범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자금융을 규율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제정정식에 대한 이견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 않았다. 다만 전자금융 감독을 위한 규정기술 방식에 대한 논의가 가장 핵심이었는데 적용된 원칙은 1) 최소기준의 제시 2) 규제최소화 3) 모든 금융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단일규정이 마련 등이 그것이었다.

전자금융 분야는 기술발전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최소한의 기준만을 제시함으로써 금융기관이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안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는 점, 또한 전자금융의 발전을 저해할 정도의 기술규제 내지 상품규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규율은 어느 특정 금융영역이 아닌 전 금융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반영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후술할 바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 하위규범에서 지나치게 세부적인 기술규정이 도입됨에 따라 기술발전과 하위규범간 괴리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이하에서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국내법규 규제현황을 살펴보고 전자금융거래법상 몇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정방향에 대해 논하기로 한다.

Ⅱ. 현행 우리나라의 전자금융거래 관련 규제 현황

1. 전자금융거래법 이외의 전자금융거래 관련 규제체계

현재 국내 전자금융 관련규범은 전자금융거래법 이외에도 여러 법률분야에 흩어져 있다.

전자금융 관련 전자문서의 송·수신시기 기타 보관에 관한 사항은 전자거래기본법이 적용되고 본인확인을 위해 사용하는 공인인증서에 대해서는 전자서명법이 적용되며, 지급수단(발행업)과 관련해서는 전자

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이라 한다) 기타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이하 ‘전자어음법’이라 한다) 등이 각각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공정위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전자금융거래법상 결제대금예치업의 근거⁷⁾가 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대금지급 확보를 위한 조치(보험가입 등)를 언급⁸⁾하고 있다. 여전법은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유사하지만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하는 선불카드⁹⁾에 대해서 선불카드업자의 상환의무(제22조), 발행권면한도(제24조제3호), 기타 선불카드 발행금액의 공탁(제25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불결제대행업(PG : Payment Gateway)자를 신용카드의 가맹점으로 보고 결제대행업자의 준수 의무를 규율¹⁰⁾하고 있다. 전자어음법은 기존의 종이어음이 가지는 폐해(무제한적 배서에 따른 연쇄파산 방지 및 종이문서 유통에 따른 보관·물류비용)를 보완하며 조세투명성 및 디지털환경에 따른 기업간 결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전자적 방식에 따른 약속어음을 발행·유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전자어음의 등록·관리를 위한 전자어음관리기관 지정의 근거법이 되고 있다.

7) 동법 제13조제2항제10호.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서는 결제대금예치업자의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결제대금예치업(Escrow)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8) 제8조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확보), 제24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등이 그것이다.

9)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록(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말한다)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선불카드소지자의 제시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이 그 기록된 금액의 범위내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한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

10) 동법 제19조에서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을 언급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결제대금예치업과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로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전자금융에 있어 개인정보(신용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 등이 적용된다.

신용정보법은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거래정보와 보험계약 내역에만 적용¹¹⁾되며 원칙적으로 신용정보의 보호보다는 엄격한 조건하에서 신용정보의 이용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할 것이다. 정보통신망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은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통신사실자료(IP, Mac Address 등)의 보호에 관련되는 법률로 금융기관 등이 보관하는 전자금융거래 정보에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서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초기 전화(유무선)소액결제 서비스를 지급결제대행업자(PG)로 보아 금감원에 등록을 하고 해당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으나, 정보통신부의 요청에 따라 전화소액결제 서비스 부분을 전자금융거래법상 지급결제대행업에서 분리¹²⁾하여 정보통신망법상 ‘통신과금서비스’로 새롭게 규정¹³⁾한 바 있다.

이외에도 금융권 정보보호 업무를 위해 금융권 주요통신기반시설 보호¹⁴⁾를 위한 ‘통신기반보호법’이 있으며, 파업·자연재해·전쟁 등에 대비한 금융권 비상대응매뉴얼 작성의 근거가 되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그리고 금융회사의 정보통신 보안업무¹⁵⁾ 관리감독을 위한 ‘보안

11) 은행거래, 증권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이 적용되며 원칙적으로 제3자가 이용할 수 없는 정보로 규율되고 있다.

12) 동 서비스는 통신사업자가 과거 전기통신사업법상 과금대행서비스(장관 승인업무)로 계속 수행하던 업무인 관계로 이러한 특성을 감안 방통위가 관리감독하게 되었다.

13) 정보통신망법 제53조 내지 제61조. '09.2월 현재 29개 사업자가 방통위에 등록되어 있다.

14) 금융권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된 서비스는 인터넷뱅킹 서비스(15개사)와 HTS(주식거래)시스템(15개사)이 있다. 년 1회 이상 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분석 의무가 부과되며, 해킹공격정보분석 및 공유를 위해 금융 ISAC(은행권 : 금융결제원, 증권분야 : 코스콤)이 지정되어 운영중이다.

15)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비밀문서에 대한 취급·관리, 통제보안, 시설보안 등을 말한다.

업무 시행세칙' 및 '정보통신보안업무관리지침'이 제정되어 금융권에 적용되고 있다.

2. 전자금융거래법의 전자금융거래 규제체계

동 법률은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가 확산되고 전자화폐 등 새로운 전자지급결제수단이 등장함에 따라 비대면성·비서면성 등의 전자적 특성을 반영하여 전자금융거래의 기본요소와 절차를 정하고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재경부가 '02. 10월 처음 입법예고하였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03. 7.) 및 국무회의 의결('03. 8.)을 거쳐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공청회에서 제기된 몇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논의가 지지부진되다가¹⁶⁾ 16대 국회 회기종료에 따라 자동폐기('04. 2.) 되었다. 이후 재경부는 동 법률안을 재차 추진하기 위해 추가 입법수요 조사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04. 8월 재 입법예고를 하고 차관회의('04. 12)를 거쳐 국회를 통과('06. 4.)하였다.

기본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이하 거래법이라 略한다)상 전자금융거래는 오프라인 금융거래와 전달채널만 다른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금융거래이므로 기존의 오프라인 거래에 대한 법적 제도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별도 규율이 꼭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자적 장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금융거래에 거래법이 적용되지만 일반이용자에게는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기술발전에 따라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거래상대방간 계약(협약)으로 기본적인 규율을 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아울러 거래법은 정보통신기술이 근간이 되는 전자금융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거래법적 규정에 관해서는 최소한의 규율만 규정하는 최소입법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사업법적 규정에 대해서는 아주 세부적인 사항까

16) 국내외적으로 처음 시도되는 통합법이라는 입법 부담과 금융기관등의 무과실책임 조항과 관련한 이해당사자의 강력한 이의제기로 논의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

지 규율하는 최대입법주의를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¹⁷⁾

가. 제1장(총칙)

1) 전자금융거래의 개념(제2조제1호)

전자금융거래의 개념을 이해하기에 앞서 금융거래의 개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기관이 금융자산¹⁸⁾을 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기타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를 말하는데 이를 간단하게 여·수신거래, 유가증권거래, 지급·추심거래, 기타 거래 등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인 은행업무에 속하는 여·수신거래는 기본적으로 소비대차 혹은 소비임치의 법적 성격을 띠며 유가증권 거래의 경우는 매매계약을 기본으로 하지만 혹은 중개계약 내지 위임계약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두 거래의 기본적인 계약구조는 금융기관대 거래당사자(이용자) 2 당사자간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¹⁹⁾

이와는 달리 지급·추심거래 등 환²⁰⁾업무는 지급인, 수취인을 당사자로 하는 거래행위에서 발생한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융서비스로서 거래당사자는 금융기관에 대해 대금지급이라는 사무처리를 위임한 것으로 위임계약적 성격을 가지며 금융기관이 사

17) 정경영, 전자금융거래법의 도입에 따른 법적 과제, 전자금융거래법의 기본과제(한국금융법학회 창립기념학술대회), 2003. 11., 7면.

18)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의미한다(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19) 정경영, 앞의 논문. 8-9면.

20) 격지자간의 채권, 채무 관계를 현금수수 없이 은행, 우체국 등을 통해 결제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크게 내국환 업무와 외국환 업무로 구분되며 기능적으로는 송금환과 추심환으로 나눈다. 대표적인 환업무로 우편환, 전신환, 당좌이체, 은행지로(GIRO) 업무 등을 들 수 있다.

무처리를 해주는 3당사자구조를 가진다. 기타 거래에는 보증거래, 신탁 재산 관리, 보험거래와 같이 기술한 금융거래에는 포함되지 않는 거래형태를 포함하게 된다.

기술한 금융거래를 이용자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제공하는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해당기관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 없이 또는 의사소통 없이 자동화된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 이를 전자금융거래라 본다.²¹⁾ 전자금융거래는 일반 금융업무와 구별되는 별도의 새로운 업무가 아닌 금융회사가 해당업 서비스를 어떤 매체²²⁾를 통하여 어떻게 제공하는지에 따라 정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러한 전자금융의 예로서 인터넷뱅킹, PC뱅킹, IPTV뱅킹, 온라인 증권거래²³⁾, 폰뱅킹²⁴⁾, CD/ATM을 통한 자금이체·입출금거래, 사이버몰(Cyber Mall)을 통한 보험계약체결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2) 거래법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제2조, 제3조)

가) 거래법 적용대상

거래법의 적용대상은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보조업자 그리고 이용자이다.

먼저 금융기관은 동법 제2조제3호 및 대통령령에서 그 범위를 명시적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금융위원회설치등에관한법률 제

21)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거래법 제2조제1호).

22)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기타 정보송수신 처리장치 등을 포함한다(거래법 제2조제8호).

23) HTS(Home Trading System) 및 ARS를 통한 증권거래 및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통한 증권거래 서비스도 등장하고 있다.

24) 크게 일반 유선전화기를 이용한 텔레뱅킹과 무선전화기를 이용한 휴대폰 뱅킹(Wap : Wireless Application Protocol)방식 및 IC칩(Chip) 방식, 스마트폰 방식으로 세분)으로 나눈다.

38조에 규정된 기관, 여전법상 여신전문금융회사, 우체국, 새마을금고·연합회(거래법 제2조제3호), 각종 특수은행(산업, 중소기업, 수출입 은행), 각종 조합·조합중앙회(농협, 수협, 산림조합), 금융지주회사 및 지주 전산자회사, 보험협회, 보험개발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화재보험협회, 한국금융투자협회, 신용정보회사·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이 금융기관에 해당된다.²⁵⁾

전자금융보조업자라 함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보조하거나 그 일부를 대행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 또는 결제중계시스템²⁶⁾의 운영자로서 금융위가 정하는 자를 말한다(거래법 제2조제5호). 이러한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예로서 VAN(Value Added Network)사업자,²⁷⁾ 결제중계시스템제공자(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بانک타운), 일부 제한적인 경우 하에서 SI(System Integration)업체²⁸⁾ 등을 들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관계에 기초하고 있어야 한다. 기초계약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를 보조하거나 그 일부를 대행하는 업무는 전자금융보조라 볼 수 없다.²⁹⁾ 전자금융보조업자는 현행 거래법 하에서는 감독당국의 감독·

25) 동법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사항에 적용되는 법률임에도 각종 협회나 공사 등에도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은 과거 ‘금융기관 전자금융업무 감독규정’상 금융기관의 범주에 속하였던 배경도 있으나, 해당업무가 금융회사 업무와 밀접한 관계로 해당 기관의 IT부문에 대한 검사권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금융기관 범주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26) 금융기관과 전자금융업자 사이에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달하여 자금정산 및 결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정보처리운영체계를 말한다(거래법(안) 제2조제6호).

27)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신용카드사·은행과 가맹점간 거래정보의 송수신을 대행해주거나 은행으로부터 현금인출기 업무를 위탁받아 업무수행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업을 수행한다.

28) 단순히 정보시스템만을 판매한 경우는 제외하며 시스템판매 이외에도 운영인력을 제공하여 주는 경우에 한정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삼성SDS, LG CNS, IBM 등을 들 수 있다.

29) 비금융기관(포털업체)이 제공하는 계좌통합서비스(account aggregation)의 경우 스크린 스크래핑(screen scraping) 기술을 이용 금융기관 등과의 별도의 계약없이 이용자

검사 대상이 아니어서 실질적인 금융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사고³⁰⁾가 발생할 경우 직접적 조치가 어려워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경우 우회적으로 금융기관을 경유하여 관련 자료요청 내지 해명을 요구하는 하는 감독검사상의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관련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거래법은 규정하고 있다(거래법 제39조).

전자금융거래의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거래법(안) 제2조제7호). 따라서 일반 소비자(개인)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한 회사(법인)도 포함된다.³¹⁾

나) 거래법 적용범위(제3조)

거래법은 원칙적으로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에 의해 전자적 장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금융거래(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에 적용한다. 다만 이용자에게 큰 영향이 없는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간 따라 정하는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전자금융거래³²⁾는 동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있다. 또한 우체국과 새마을금고(연합회)에 대한 감독검사권은 각각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가 보유하고 있어 금융위는 해당 기관에 대한 감독과 검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므로 거래법은 이러한 점을 감안 동법 제5장(전자금융업무의 감독)을 적용배제하고 있다(거래

의 금융정보를 해당 금융기관 웹사이트에서 긁어와 제공해 주는 것이므로 전자금융보조업자로 보기 힘들다.

30) VAN사업자의 신용카드 오류승인 사고('04. 5), VAN사업자 위탁운영 CD기내 개인정보 복제를 통한 부당현금인출 사고('03. 5) 등이 있었다.

31)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에 따르면 “거래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동약관 제2조제1호).

32) 한국은행통신망(BOK-wire)을 통한 총액결제시스템(동시결제), 금융결제원을 통한 차액결제시스템(차액결제) 등이 있다.

법 제3조제2항).³³⁾

나. 제2장(전자금융거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1)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제5조)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사용하는 경우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의 신원·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여기서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각종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³⁴⁾을 가리킨다. 따라서 직불카드³⁵⁾, 선불전자지급수단(실물자체 및 관련정보), 신용카드(실물자체 및 카드정보) 등과, 홍채정보·지문정보·음성정보 기타 개인식별번호(ID)도 포함될 수 있다. 이외에도 전자서명법상 비밀키(전자서명생성정보), 인증서도 접근장치에 포함되며 既述한 장치 등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비밀번호도 접근매체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 특히 카드의 종류와 관련 자기띠를 가진 형태 외 IC칩의 형태 그리고 카드정보³⁶⁾ 자체도 이러한 접근매체의 한 종류가 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접근매체의 발급은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³⁷⁾한 후에 발급해야 하나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미리 이용

33) 다만 감독검사 관련규정을 제외한 거래법(안) 일반규정에 대해서는 적용을 받는다.

34) 1. 직불전자지급수단·선불전자지급수단·신용카드 그밖에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2. 전자서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생성정보(비밀키) 및 동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인증서, 3. 이용자번호 또는 이용자의 생체정보, 4. 1 내지 3의 장치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가리킨다(거래법 제2조제10호).

35) 오프라인상에서 카드가맹점에서 단말기를 통해 결제하는 직불카드는 있지만 온라인상에서 직불기능을 하는 관련 온라인형 직불카드는 아직 없다.

36) 최근 휴대전화에서 별도 소프트웨어를 사용 신용카드 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CVV 값 등)를 저장하고 결제하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37) 동법의 유권해석 주체인 금융위는 거래법상 본인확인의 방법을 금융실명법상 본인확인(실지명의증표 확인) 방법으로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형태의 접근매체를 실지명의증표 확인없이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로부터 서면동의를 구하였거나 통보 후 일정기간 내 이용자의 동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확인 없이도 갱신 또는 대체발급이 가능하다.³⁸⁾ 또한 접근매체는 기본적으로 양·수도 또는 질권설정의 대상목적물이 되지 아니한다.³⁹⁾

2)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의 책임(제8조)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는 접근매체의 위조·변조 기타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⁴⁰⁾해야 한다(동조제1항). 다만 일정한 경우⁴¹⁾ 금융회사 등은 그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동조제2항). 아울러 금융기관 등이 손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민법 일반원칙에 따라 통상손해(민법 제393조)에 대해서만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울러 금융기관은 이러한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동조제4항). 특히 피해보험과 관련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정보 삭제로 인한 피해 등을 보전하기 위해 ‘e-비즈 배상책임보험’상품이 출시되어 일부 사업자가 기

38) 주로 신용카드의 갱신·대체발급 방식이 동일하며, 공인인증서의 경우 창구에서 본인확인 후 온라인상에서 발급하도록 규정되고 있다.

39) 다만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양도 또는 담보제공 목적으로 양·수도 또는 질권설정이 가능하다. 최근 전화금융사기의 처벌 근거가 되는 법률이 거래법인데, 주로 해당사기는 양도자로부터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받아 양수자가 사용하는 경우이므로 거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처벌된다.

40) 전자자금이체 사고의 특성상 고객이 은행측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비밀번호 유출에 관한 책임소재 입증은 은행 측에 있다고 판시한 사례(서울지법 98가합106668 판결).

41) 1) 개인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 사용위임, 양도·담보목적 제공, 접근매체를 누설·노출·방치한 경우(전자금융거래약관에 동 내용이 반영된 경우에만 인정), 2) 법인 이용자가 금융회사 등이 제공하는 정상적인 보안체계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을 말한다.

가입중이며, 손해보험사 공동상품으로 다시 재보험을 들고 있다.⁴²⁾

금융기관 · 전자금융업자 보험(공제) 가입 기준

구 분		보험금액	대상 기관
금융기관 별	은행	20억원	○ 시중은행, 농협중앙회, 기업은행, 농협 단위조합(공동가입)
		10억원	○ 지방은행 · 외은지점, 수협중앙회, 산업은행, 체신관서, 신용카드업자, 수협 단위조합 · 신용협동조합 · 상호저축은행 · 새마을금고(공동가입)
	증권	5억원	○ 증권회사, 증권금융, 선물업자
	기타	1억원	○ 전자금융거래법 및 시행령상 금융기관중 위 금융기관을 제외한 금융기관* *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공동보험 가입자 제외), 여신전문금융업자(신용카드업자 제외) 등
전자금융 업무별		2억원	○ 전자자금이체업,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1억원	○ 전자화폐 발행업,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지급결제대행업,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 등

3) 접근매체의 분실 · 도난책임(제9조)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접근장치의 분실 ·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의한 당해 접근장치의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동조 제1항).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의 분실 · 도난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조 제2항).

42) 보험 부보내용은 1) 해킹 · 바이러스로 인한 고객정보 삭제, 변조로 인한 손해, 2) 관리자 부주의에 의한 고객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 3) 위조 또는 부정접근에 근거한 금융거래에 따른 고객손실, 4) 적절한 신분확인 없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따른 고객손실 등이다.

제2항과 관련 다른 접근장치 분실(ex. 신용카드)의 경우에 금융기관 등이 책임을 지는 것과 비교하여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분실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를 부담시키는데, 이는 동 접근수단에 충전된 가치를 결국 현금과 같은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음에 기인한 것이다. 다만 후술하겠지만 분실·도난 신고시점 이후라 하더라도 실 무상으로는 발행업자가 해당 금액을 진정한 소유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어 이 부분을 실무적으로 풀어야 할 것인지 관련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인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전자화폐 등의 분실시 사업자가 일정한 경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약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당해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동조 제3항).

4)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지위(제10조)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전자금융보조업자의 고의나 과실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간주하는 이행보조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동조제1항). 따라서 피해자(이용자)는 금융기관이나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내부적으로 금융기관이나 전자금융업자는 보조업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동조제2항).

동조의 배경은 전자금융보조업자를 금융기관 등의 대리인으로 볼 경우 대리인 법리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대리인만이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책임이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영세하거나 일부 무자력인 전자금융보조업자인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용자에게는 불리한 상황이 전개된다. 따라서 이용자가 전자금융보조업자의 고의, 과실로 손해를 입더라도 보조업자보다 더 나은 자력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로부터 먼저 배상을 받도록 하여 이용자 보호에 보다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규정이라 할 것이다.

5) 지급의 효력발생시기(제12조)

전자지급수단에 의한 지급효력은 ① 전자자금이체의 경우에는 수취인의 계좌를 보유하는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의 전산계좌원장에 입금기록이 완료된 때, ② 전자적 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수취인에게 현금이 지급된 때, ③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의 경우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④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의 경우에는 지급정보가 수취인의 계좌를 보유하는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완료된 때 발생한다.

동조는 자금을 이동시키는 전자금융거래(전자지급거래)의 경우에는 지급인의 지급이 완료되는 시점을 명확히 규정하여 지급인과 수취인 간의 지급이행시기에 대한 분쟁소지를 제거하고자 규정된 것으로, 수취인의 계좌를 보유하는 은행 전산계좌원장 내지 수취인의 지정 전자적 장치에 도달하여야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수취인의 금융기관 계좌 내지 전산계좌원장에 거래지시가 도달하기 전 발생하는 위험은 지급지시인(이체의뢰자 등)이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거래지시 전송 중에 발생한 사고(전송도중 멸실 등)에 대해서 금융기관 등이 손해를 부담한다고 명시(거래법 제9조)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이용자는 해당 거래지시가 거래 금융기관의 정보시스템에 도달하는 순간부터 책임이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6) 추심이체의 출금동의(제14조)

금융기관등은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급인의 출금동의가 필요하다(동조제1항). 이 출금동의의 형태는 서면 또는 전자서명이 첨부된 전자문서, 녹취, ARS로도 가능⁴³⁾하며, 출금동의를 받

43) 동 경우도 채무자와 계좌주(지급인)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며, 채무자와 계좌주가

는 주체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 이외에도 수취인(채권자)이 될 수 있으며 이때 수취인(채권자)은 출금동의서를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출금인의 계좌원장에 출금기록이 작성완료되기 전까지 지급인(채무자)은 금융기관등에게 동의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나 대량처리거래 또는 예약거래 시에는 약정에 따라 동의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동조 제2항), 동의철회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약관에 기재하여야 효력을 발생한다(동조 제3항).

가스비, 보험료, 신문구독료의 자동이체 등 정기적,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자금의 일괄수납을 위해 납부자(지급인)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이용기관(수취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추심이체라고 하는데, 최근 기업들을 대상으로 추심이체 뿐만 아니라 대량의 지급이체⁴⁴⁾도 일괄적으로 취급하는 자금관리서비스(CMS; Cash Management Service)가 제공되고 있다. 특히 추심이체의 경우 지금까지 출금인의 계좌번호와 관련 금융기관명만 수취인이 알고 있으면 바로 이체가 가능하였는데 이러한 위험성⁴⁵⁾을 감안하여 명시적으로 출금인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고 추심이체 하도록 법률은 규정하고 있다.

7) 전자화폐에 의한 지급의 효력(제16조)

전자화폐보유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수취인과 합의에 따라 전자화폐로 지급한 경우 당해 지급채무는 변제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수취인의 (묵시적) 합의에 따라 전자화폐로 지급한 경우

상이한 경우에는 신청인(채무자)이 계좌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수취인(채권자)에게 입증하여야 한다.

44) 급여, 배당금, 이자 등 정기적,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자금의 일괄지급을 위한 서비스이다.

45) 주로 대량 추심이체를 수행하는 기관은 금융결제원 내지 은행들이었는데 이 경우 수취인(채권자)에게 일정부분 담보를 요구하여 출금인 동의없는 추심이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고 있다.

는 당해 지급채무는 변제된 것으로 간주(대물변제)하며 지급인은 지급 효력발생시기 이후에 발생한 사실로 대금 지급채무를 다시 부담하지 않는다. 단, 원래부터 하자 있는 전자화폐를 교부한 것은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8) 전자채권양도의 대항요건(제19조)

전자채권의 양도는 ① 양도인의 채권양도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에 이루어지고, ② 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가 전자채권관리기관에 등록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 민법 제450조제1항에 따른 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다(동조제1항). 또한 채권양도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공인인증기관에 의한 시점확인(전자서명법 제20조)이 있으면 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간주하고 이에 따라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다(동조제2항).

다. 제3장(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1)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제21조)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 그리고 전자금융보조업자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제1항). 또한 이들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전자적 전송·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제2항),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서명법에 규정된 공인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3항).

전자금융거래의 非對面性, 非書面性 등의 특징을 고려할 때 일반 금융거래보다는 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 유지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전자금융보조업자 등은 전문인력, 설비, 인증시스템 등을 갖추어야 하고, 전자금융거래를 관리함에 있어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구비요소를 갖추고 준비하여야 한다.

법에서는 전자금융보조업자의 경우에도 금융위가 정하는 안전대책 기준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에서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에 한해 금감원장이 정하는 최소한의 안전대책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 사실상 보조업자는 준수 의무가 없다고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보조업자의 경우 금융기관등과의 제휴 또는 외부주문계약시 일정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간접강제⁴⁶⁾를 하고 있어 사실상 안전대책을 준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최근 스마트폰 등장 및 여러 가지 컴퓨터 운영시스템(OS) 및 브라우저 등장에 따라 공인인증서만을 인증방법으로 허용하는 현행 규제⁴⁷⁾의 문제점이 대두되어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공인인증서 외 다양한 인증방법을 허용하는 규제완화책이 발표되었으며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등 금융권 인증방법체계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2)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제22조)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는 전자금융거래를 추적·검색하고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를 확인·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5년의 범위 안에서 보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와 방법은 대통령령⁴⁸⁾으로 정한다.

46)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1조.

47)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48) 거래법 시행령 제12조

기록보존을 의무화 하는 이유는 전자적 장치를 통해서 무형으로 거래가 이루어짐에 따라 언제든지 거래의 정확성을 확인할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전자금융사고시 사고원인 및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자료확보가 필요함에 기인한 것이다. 거래기록보존은 최대 5년을 한도로 개별 거래기록의 특성에 따라 단기(1년)로 보존하여야 할 종류⁴⁹⁾를 지정하고 있으며, 보관방법은 전자거래기본법 기타 상법 규정을 준용하여 마이크로필름, 자기테이프,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자금융거래정보가 위치정보, 통신사실자료 등 다른 정보와 결합되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위치정보법, 통신비밀보호법과의 보호체계와 충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사법당국이 범죄사실 입증에 위해 결제정보와 위치정보를 동시에 요청하는 경우 어디까지가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범위인지 여부 등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금융기관이 컴퓨터 식별정보, IP정보 등을 수집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⁵⁰⁾하여 개인정보침해 논란이 끝이지 않고 있다.

3) 전자금융거래약관의 제정·변경(제25조) 및 약관명시·변경통지(제24조)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약관을 제정·변경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금융위에 사전보고해야 하며, 다만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변경 후 10일 이내 사후보고⁵¹⁾가 가능하다. 약관 사전보고의 경우 해당약관 시행

49)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기록,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 등임

50) 최근 증권통이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USIM칩의 고유식별정보 등을 개인 동의없이 무단으로 서비스제공자에 전송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검찰이 기소한 사례도 있다.

51) 사후보고의 조건으로는 1) 이용자 권익확대·의무축소 사항, 2) 감독원장에게 보고된 약관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약관의 제정·변경, 3) 법령개정·금융위 명령에 의한 약관변경, 4) 단순 업무편의를 위한 약관변경, 5) 표준약관을 원용하는 약

예정일 45일전까지 감독원장 앞으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받아야 하고, 약관심사시 필요한 경우 해당부분에 대한 약관변경권고를 할 수 있다.⁵²⁾ 다만 우체국이나 새마을금고연합회는 동 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다(동법 제25조제4항).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 계약체결시 약관명시 및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약관사본을 교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약관 제정·변경 시행일 1월 전에 전자적 장치(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이용자는 약관 변경내용의 게시일부터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해당 변경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약관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4)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등(제26조)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1) 이용자의 인적 사항에 관한 사항, 2)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해당 이용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금융실명법 및 기타 다른 법률근거에 따라 정보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용자의 동의없이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있다.

동조의 경우 금융거래정보는 금융실명법, 신용정보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규율을 받지만 기술한 법률의 규정의 적용되지 않는 전자금융거래정보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금융실명법이나 신용정보법 적용대상기관의 범위가 제한적인 관계로 비금융사업자가 수행하는 결제업무에서 파생되는 거래정보 등의 보호필요성⁵³⁾으로 인해 규정되게 되었다.

관의 제정·변경의 경우에 한한다(전자금융감독규정 제12조 제1항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33조).

52)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2조.

53) 예를 들어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정보, 전화소액결제, 상품권결제, 포인트결제 등 기존 법률이 예상하지 않은 결제수단에 따른 거래정보는 기존 법률에 따

라. 제4장(전자금융업의 허가·등록 및 업무)

1) 전자금융업의 허가·등록 등(제28조, 제29조)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제1항).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금융기관은 해당업법에서 전자화폐 발행업무가 허용되는 은행 관련기관⁵⁴⁾에 한하고 있다(시행령 제15조제1항).

전자화폐 발행 및 관리업무 이외 ① 전자자금이체업무, ②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③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④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 ⑤ 결제대금예치업, ⑥ 전자고지결제업 등의 전자금융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허가업무와 동일하게 일부 금융기관에는 등록이 면제⁵⁵⁾된다. 전자채권의 등록 및 관리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도 금융위원회에 등록⁵⁶⁾하여야 한다(제28조제1항).

금융기관 등 구분에 따른 전자금융업 등록면제

업무 구분	은행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신용카드업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면제	등록필요	등록필요	등록면제

른 경우 보호대상 여부가 불투명한 점이 있다.

54) 우체국, 새마을금고(연합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카드업자, 한국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산림조합(중앙회).

55) 신용카드업의 경우 전자자금이체업은 등록면제가 되지 않으며, 금융투자업과 보험업은 전자자금이체업 이외 등록대상 전자금융업은 등록하여야 해당 업무수행이 가능하다.

56) 실무적으로 허가업무는 금융위원회가 수행하며, 등록업무는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시행령 제30조)

업무 구분	은행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신용카드업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면제	등록필요	등록필요	등록면제
전자자금이체업	등록면제	등록면제	등록면제	등록필요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면제	등록필요	등록필요	등록면제
결제대금예치업	등록면제	등록필요	등록필요	등록면제
전자고지결제업	등록면제	등록필요	등록필요	등록면제

* 전자화폐발행 및 관리업 허가 면제대상 금융기관 범위와 일치

**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포함

2) 최소자본금 및 허가·등록 요건(제30조, 제31조)

전자화폐 발행 및 관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식회사로서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등록 대상 전자금융업자는 상법 제170조에서 정한 회사⁵⁷⁾ 또는 비영리법인(민법 제32조)으로서 자본금·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이 5억원 이상인 자로서 업무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제30조)

전자금융업무별 최소자본금 요건

전자금융업 구분	회사형태	최소자본금	비고
<input type="checkbox"/> 전자화폐 발행 및 관리업	주식회사	50억원	허가대상
<input type="checkbox"/> 전자채권의 등록 및 관리업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민법상 비영리법인	30억원	등록대상
<input type="checkbox"/> 전자자금이체업		30억원	
<input type="checkbox"/>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20억원	
<input type="checkbox"/>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20억원	
<input type="checkbox"/>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10억원	
<input type="checkbox"/> 결제대금예치업(ESCROW)		10억원	
<input type="checkbox"/> 전자고지결제업(EBPP)		5억원	

57) 따라서 합명, 합자, 주식, 유한회사 등의 모든 회사형태가 거론될 수 있지만 자본금의 개념이 없는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의미가 없다.

전자금융업 허가·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1)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며,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하며(전자화폐 발행에 한함),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전자화폐 발행에 한함)(거래법 제31조).

전자금융업 허가·등록시 재무 건전성 기준

감독기구설치법상 검사대상기관		금융기관 이외 일반기관	
금산법 적용 금융기관	금산법 적용제외 금융기관	전자화폐발행업 (허가)	기타 전자금융업 (등록)
해당법령 경영개선권고 (요구·명령)의 요건이 되는 재무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것	부채비율 200% 이내 * 금융위 승인시 금산법 적용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기준 적용가능	부채비율 180% 이내	부채비율 200% 이내

마. 전자금융업 등의 감독(제5장)

1)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의 감독 및 검사(제39조)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준수여부를 감독하며(감독권), 동 감독시 필요한 때에는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무상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업무·재산상태 보고) 당해 기관의 업무를 검사할 수 있다(검사권)(제1항 내지 제3항).

금융감독원장은 검사를 한 경우 해당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제5항),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 법 또

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여 건전한 전자금융업 운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감원장의 건의에 따라 1) 위반행위 시정명령, 2) 기관 주의 또는 경고, 3) 임직원 주의, 경고, 문책요구 4)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 요구를 할 수 있다(제6항).

2)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감독 및 검사(제40조)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전자금융보조업자와 제휴 또는 외부발주업무에 관한 계약체결 내지 변경 시에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과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제1항). 금융위는 전항의 계약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경영건전성 및 이용자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관련계약의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제2항). 아울러 금감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제휴 또는 외부발주업무와 관련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해 관련계약서, 계약서 부속자료 및 전자금융업무와 관련한 자료 등을 직접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자금융보조업자는 자료제출요구에 응해야 한다(제3항, 제4항).

거래법상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해서는 금감원장이 직접적인 감독·검사권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기술한 바와 같이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와 체결한 계약서를 심의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감독을 행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에서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중요성을 감안한 것이라 판단된다.

3) 구분회계 및 건전경영지도 기준 마련 등(제42조)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는 자금운용과 전자금융거래 업무성적을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다른 겸영업무와 구분계리 해야 하며, 관련

업무 및 경영실적 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제1항).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의 건전한 경영활동 및 전자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유동성, 기타 건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한 사항 등 경영지도기준을 정할 수 있다(제2항).

전자금융업 경영지도기준

구 분	내 용	기 준
자본적정성	최소자본금 유지	허가·등록시 자본금요건 항시충족
	자기자본 유지	총자산이 총부채보다 항상 클 것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비율*	20% 이상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에만 적용)
자산건전성	총자산 대비 투자위험도가 낮은 자산비율	20% 이상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에만 적용)
		10% 이상 (이외 전자금융업)
유동성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비율	60% 이상 (전자화폐발행업에만 적용)
		50% 이상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에만 적용)
		40% 이상 (이외 전자금융업)

특히 허가대상 전자금융업(전자화폐발행및관리업)의 경우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해당 사업자가 경영지도기준 중 일부 기준(자본적정성)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등 경영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3항).

등록대상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가 가능하지 않으며, 감독원장은 등록대상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지도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경영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경영개선협

약을 체결할 수 있다(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제3항전단).

전자화폐 발행자에 대한 적기시정 조치 조건 및 내용

구 분 (조치권자)	조치조건	조치내용
경영개선 권고 (금융위)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비율 : 20% 미만 등	인력(조직)개선, 경비절감, 신규투자제한, 부실자산 처분, 자본금 증액(감액), 이익배당의 제한, 특별대손충당금 설정
경영개선 요구 (금융위)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비율 : 10% 미만 등	조직축소, 자산 보유제한(처분), 임원진 교체요구, 영업 일부정지, 합병·제3자인수·영업양도 금지, 경영개선권고 조치
경영개선 명령 (금융위)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비율 : 5% 미만 등	주식 전부(일부) 소각, 임원의 직무집행정지(관리인 선임), 6월 이내 영업정지, 계약의 전부(일부) 이전, 경영개선요구 조치

Ⅲ. 전자금융거래법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정보IT기술의 발전과 현행법상 금융정보보호 체계

가. 전자금융거래 기술의 발전과 문제점 발생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TV 등의 등장에 따라 개인용컴퓨터(PC)가 기존에 다루어왔던 서비스를 언제·어디서나 이용하고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기기들에 대해 서비스제공자가 매력을 느끼는 산업분야 역시 금융분야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기들에서도 언제·어디서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향유하려는 이용자의 욕구는 점점 커져가고 있으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사업자에게도 블루오션 시장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IT기술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는 기존 휴대전화, PC를 통한 전자금융거래가 대부분을 차

지하여 왔고, 새롭게 등장하는 기기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관련 법률은 아직 이를 수용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인터넷뱅킹과 관련 우리나라의 서비스형태는 점유율이 아주 높은 윈도우계열(OS)에다 플러그인 기술을 허용하는 웹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IE)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어 동 환경을 새롭게 등장하는 기기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소수 사용자⁵⁸⁾들에 대한 전자금융서비스 접근성 저해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나.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의 금융정보보호 체계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보안 정책체계는 앞서 기술하였던 바와 같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제9조)와 안전성 확보의무(제21조)로 정의될 수 있다. 즉, 금융기관 등은 동법 제21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안전성 확보 최소기준(시행세칙 제3조 내지 제32조)을 준수해야 하며, 동 기준을 준수하더라도 금융기관 등은 발생하는 전자금융사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일차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특히 시행세칙상 안전성 확보 최소기준 일부규정에서는 금융기관 등이 이용자PC에 보안프로그램 등을 설치(동세칙 제29조제2항제3호)하도록 의무화하여 전자금융서비스 제공자의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금융기관 등은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과 전자금융보안을 위한 이용자PC에 개인용 침입차단시스템(PC방화벽, 백신프로그램), 키보드해킹방지 프로그램 등의 설치(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9조제2항제3호)의무를 부담한다.

58) 전세계적으로 운영체제로는 윈도우이외에도 리눅스(Linux), 맥(Mac) 환경이 있으며, 웹브라우저로는 사파리, 오페라, 파이어폭스, 크롬 등 여러 많은 운영체제에 많은 브라우저가 탑재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 운영체제와 브라우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전자금융거래 안전을 위해 금융기관 내부시스템의 보안은 기본으로 하면서 금융기관 외부시스템(인터넷뱅킹 홈페이지 등)에 대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부과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금융기관 등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구조⁵⁹⁾이다.

다. 현행 금융정보보호 체계와 기술적 문제

기술한 바와 같이 금융기관 등은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실무적으로 정보보호 프로그램의 설치 시에 액티브엑스(Active-X)라는 기술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일단 설치한 후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동 기술은 이용자PC의 환경 중 윈도우+익스플로러 계열에서만 작동되고, 다른 운영체제와 브라우저에서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액티브엑스 기술은 현재 컴퓨터바이러스를 전파시키는 주요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여 금융정보보호 프로그램을 PC에서 내려받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주장⁶⁰⁾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방안은 결국 액티브엑스 기술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현재 전자금융거래에서 유일한 인증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인인증서 이외에도 다양한 인증방법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1) 시행세칙 제29조제2항제3호의 단서조항을 활용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2) 금융기관 등이 강제적으

59) 네트워크책임론(Network Liability) 또는 전문가책임(Professional Liability)이라고도 하는데 고도의 기술을 통한 서비스 제공시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소비자)입장에서 문제발생시 이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과 해당기술의 문제점에 관한 정보를 서비스제공자가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관점에서 입증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을 일차적으로 서비스제공자에 부담시키는 이론이다.

60) 금융기관 웹사이트를 가장한 가짜사이트(일명 피싱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혹은 보안프로그램을 PC에 설치한다고 하면서 이용자를 속여 바이러스, 악성코드를 깔리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는 것 보다 이용자 스스로가 보안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이용자PC에서 설치하여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은 어차피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금융기관 등이 1차적인 책임을 부담하므로 전자금융서비스 보안체계의 책임은 금융회사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하며 금융감독당국은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의 보안체계에 대한 책임만을 물으면 된다는 입장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⁶¹⁾

라. 기술한 주장에 대한 문제점

먼저 시행세칙상 보안프로그램 설치예외 주장과 관련하여 규정상 설치예외는 가능하지만 이러한 계약(이용자가 손해를 부담)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조항을 뒤집는 것은 현행법 해석상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계약적 내용이 법률규정과 배치될 때에는 당연히 법률규정이 우선하는 것이고 앞선 경우 이용자가 손해를 스스로 부담하겠다는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추후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이용자는 소송을 통하여 금융회사의 책임을 묻는 경우 금융회사는 이러한 주장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방식은 전자금융사고의 1차적인 책임을 이용자에게 지우는 것으로 해외법제 사례에서도 이러한 법제형식을 규정하고 있는 나라가 전무하며, 오히려 이용자 보호에 역행하는 정책방향으로서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용자가 보안프로그램을 개인PC에 별도로 설치하여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자는 주장은 현행 전자금융 이용자의 다양한 연령층과 보안의식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전자금융사고의 개연성이 높아

61) 여전법에 따르면 신용카드의 도난, 분실, 신용카드 정보의 노출, 누출에 대한 책임은 신용카드사가 부담하고 있으므로 신용카드 사용환경에 대한 보안체계는 신용카드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지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허용되기 힘든 정책대안이라 판단되며 결국에는 앞서 기술한 보안프로그램 사용해제 동의허용에 따라 발생하는 결과를 보일 수 있다.

마. 문제점에 대한 정책대안

감독당국 입장에서는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를 보호하고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금융정보보호라는 정책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기술한 일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자는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으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안전성을 훼손하는 정책대안을 쉽게 인정하는 것은 금융거래를 감시하는 감독당국으로서는 힘든 일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전자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면서도 전자금융서비스 안전성은 적어도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의 정책대안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현행 전자금융거래법과 전자금융감독규정상 금융정보보호에 관한 규정과 기준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어느 정도의 기술중립성을 띠고 있어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문제는 결국 시행세칙상 너무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조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역효과라 할 수 있다. 즉 특정 정보보호프로그램 설치의무를 기술할 것이 아니라 이용자PC의 정보보호를 위한 선언적인 방법론을 기술할 필요가 있는데 특정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강제하는 규정보다 금융회사로 하여금 이용자PC에서의 입력정보보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시행세칙 규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스마트폰 전자금융서비스 안전대책(‘10.1)’에서도 일부 언급⁶²⁾

62) 스마트폰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기술적 침해대응 부문’과 관련 중요입력정보(비밀번호 등)의 보호대책을 적용하도록 명시하였으나, 구체적인 기술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함이 없이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관련대책을 마련하여 적용하도록 한 바 있다. 세부적으로는 가상키보드입력,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직전 악성코드 확인, 일부

된 바 있는데, 스마트폰에 국한되어 적용될 것이 아니라 전체 전자금융서비스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시행세칙 규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전자금융거래 인증방법과 발전방향

가. 전자금융거래 인증방법에 대한 논의의 촉발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인증방법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거래법 제21조제3항, 감독규정 제7조제1항). 감독규정 개정('10.6.30) 전에는 전자금융거래의 인증방법으로 유일하게 공인인증서만을 허용하고 있었는데,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정보기술 발전에 따라 다양한 전자적 장치(스마트폰, 전자책, IPTV 등) 등이 나오고 있음에도 공인인증서 기술방식이 다양한 전자적 장치를 수용하기에는 제한적인 기술(액티브엑스)을 사용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외부에서는 공인인증서의 제한적 기술에 따른 전자금융서비스의 접근성 문제가 제기되고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인증방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게 된 것이다. 특히 작년 말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스마트폰에서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이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게 된 것이다.

나. 전자금융서비스 공인인증서 도입배경

정부부처(정통부, 금감위 등)는 '02.5월 전자정부서비스 확대구현 방안의 일환으로 금융권 공인인증서 사용확대 방안을 확정하고,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사설인증서를 공인인증서로 전환하도록 하는 정책방향을 결정('02.7월)하였다. 이에 따라 인터넷뱅킹에

스마트폰에서 탈옥여부 검사 등 여러 가지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서 공인인증서 사용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현재 약 6천만의 사용자(은행별 중복)가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터넷뱅킹을 사용하고 있다.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상에서 신원확인(본인인증), 전자문서의 위변조 방지(무결성 보장), 거래사실 부인방지(부인봉쇄), 문서내용 노출방지(기밀성)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안전하고 신속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다. 전자금융거래상 공인인증서 외 인증방법 도입논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스마트폰의 도입이 촉발시킨 공인인증서 사용의 문제점에 관해 정부는 금융권에서 유일한 인증방법으로 사용되는 공인인증서가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저해시키고 있다는 관점에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민관협의체가 구성되어 전자금융거래에서 다양한 인증방법의 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10.4~5월)하였다. 이 당시 논의는 공인인증서 사용기술(액티브엑스)은 취약점이 있으므로 다른 인증방법을 도입하자는 논점으로 시작되었으나 결국 공인인증서도 하나의 인증방법으로 인정하되, 다른 다양한 인증방법을 도입하여 전자금융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자는 결론으로 방향이 정해졌으며 다양한 인증방법 도입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결론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 인증방법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다.

동 가이드라인에서는 공인인증서 외 다양한 인증방법의 허용을 위한 관련규정의 개정필요성을 담았으며, 다양한 인증방법은 5가지 기술원칙⁶³⁾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금융회사 등이 제시하되, 5가지 원칙 모두가 인증방법에서 채택될 필요는 없으며 전자금융거래 규모,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의 인증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63) 1) 이용자 인증, 2) 정보처리시스템 인증, 3) 무결성, 4) 기밀성, 5) 부인방지

가이드라인 확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각각 ‘전자금융감독규정’과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을 개정(6.30, 8.12)하여 공인인증서의 인증방법 사용을 허용하였으며, 동 인증방법의 5가지 기술원칙을 감안한 안전성 평가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인증방법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동 평가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인증방법을 제안하여 평가를 요청할 경우 동 인증방법의 기술적 안전성을 평가하고 해당 인증방법이 적용될 수 있는 전자금융서비스의 이체(이용)한도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공인인증서 외 인증방법의 허용에 따른 효과분석

최근 여러 관련단체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공인인증서 외 인증방법의 대안으로는 생체정보(지문, 홍채, 정맥, 음성 등), 보안토큰 방식(USIM, IC카드 등)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전자금융거래의 특성상 정확하고 신속한 거래를 원활하게 지원하는 방식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과거에도 지문정보를 이용한 인터넷뱅킹 등이 일부 은행에서 선을 보였으나 지문등록의 거부감, 인식오류, 민원발생 등의 이유로 그 사용범위가 확대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인증방법 도입은 비용문제⁶⁴⁾로 인해 무료 발급되는 공인인증서와 비교할 경우 사용범위 확대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외국계 금융회사(특히 은행)의 경우 공인인증서 의무사용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본사의 전자금융 인증시스템⁶⁵⁾을 도입해서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신용카드 온라인 결제시스템에 다양한 인증방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64) 도입비용을 은행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현재 OTP의 경우도 대부분의 은행이 이용자에게 비용부담을 시키고 있어 사용확산에 많은 애로점이 있다.

65) 대부분의 외국은행은 인터넷뱅킹시 SSL(Secure Socket Layer)과 OTP(One Time Password)만을 통해 거래하므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 본사의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실무적으로도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 공인인증서 제도로 인해 인터넷뱅킹 시스템 구축을 주저한 경우도 많다.

감독당국 입장에서는 이미 기능과 효과가 검증된 공인인증서 이외 인증방법의 사용 시 예상될 수 있는 보안상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하는 점 등은 많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앞서서도 언급하였지만 이용자보호와 전자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정책적 부담을 지고 있는 감독당국이 사고발생율이 높은 인증방법을 적용하는 금융회사에 우려를 표명할 경우 오히려 다양한 인증방법의 활용이 더 위축될 우려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므로 다양한 인증방법의 활성화는 결국 철저한 안전성 평가를 통해 전자금융 사고율을 낮추고 이용자 편의를 극대화 하는 것에 달려있다 할 것이다.

3. 해외 전자결제업자의 국내시장 접근과 관련 법률 문제

가. 관련서비스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상 허가·등록의 문제

최근 스마트폰 도입과 국제적인 지급결제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관련시장이 확대되고 이에 따른 국제적인 결제서비스가 인터넷을 통하여 국내에도 상륙하고 있다.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의 경우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구매시 외국회사(애플사, 구글사 등)가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어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수령하고 개발자에게 별도로 정산하는 이른바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외국쇼핑몰에서 물품구매시 국제적인 결제시스템(페이팔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러한 서비스가 국제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많은 이용자가 이러한 결제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결제지원 서비스가 국내법(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내지 ‘전자자금이체업’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및관리업’에 해당된다는 점이다. 현재 이러한 결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사업자의 경우 1) 국내에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과 2) 사법관할권을 고려하여 적극적

으로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있으나 이는 국내법 위반으로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한다.⁶⁶⁾

전자금융거래법상 상호주의(제4조)에 따르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외국법인의 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에 해당될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 또는 등록을 하고 서비스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⁶⁷⁾⁶⁸⁾ 또한 국내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해당서비스의 메뉴가 한국어로 구성되어 제공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는 중요한 ‘영업지표’가 되기 때문에 외국회사의 이러한 주장은 논리가 약하다 할 것이다.

등록과 관련하여 다른 한 가지 문제점은 이러한 외국회사가 등록하는 경우 등록조건을 충족하기가 매우 곤란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등록요건 중 인적, 물적설비의 구비와 관련하여 아웃소싱 문제가 대두되는데 외국회사의 경우 대부분의 인적, 물적설비를 다른 업체에 아웃소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국내법상 금융회사 등의 본질적 업무의 외부위탁 불허⁶⁹⁾ 문제와 충돌될 수 있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상 본질적 업무 외부위탁과 관련하여서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어⁷⁰⁾ 법 해석적으로 업무위탁이 제한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도 있지만, 관련규정

66) 예를 들어 금융업 인허가와 관련 인터넷을 통하여 외국보험사가 국내 이용자에게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국내법상 보험업으로 인허가를 받고 해당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똑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67) 한미FTA 관련조항에 따르면 금융서비스와 관련해서 해당국가의 금융업무 인허가 조항에 따라 인허가를 받고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비준 후에는 관련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어차피 인허가를 받고 해당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8)페이팔의 경우 일본서비스를 위해 일본현지법인이 일본의 ‘지급결제법’에 근거하여 등록을 하고 해당 결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69) ‘금융기관등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에서는 금융기관의 본질적 업무는 외부위탁을 금지하고 있다.

70) ‘금융기관등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상 ‘금융기관’의 범주에 전자금융업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동규정 제2조제1항.

을 준용하여 인적, 물적설비의 제한적 위탁만을 허용하여 관련 전자금융업자가 형태만 남는 상황을 정책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

나. 관련서비스 제공방식의 국내법 위반문제

기술한 외국회사의 결제서비스 제공방식, 특히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해당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신용카드결제와 관련한 규제는 3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결제시에는 공인인증서 또는 동등한 수준의 인증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⁷¹⁾,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시 신용카드사가 인정한 ‘전자인증’ 방식 또는 비밀번호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⁷²⁾ 가맹점은 신용카드 정보를 보관할 수 없도록 규정⁷³⁾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회사의 결제서비스 방식은 회사(신용카드 가맹점)의 서비스페이지에 이용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저장하게 하고, 매 거래시 가입시 등록하였던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결제를 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결제방식은 그 편리성으로 인해 많은 사용자가 있는 반면, 최근 해킹으로 의심되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이 발생⁷⁴⁾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이러한 결제방식을 그대로 국내에 적용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위반이 된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외국회사의 전자금융거래법 등록문제와 별도로 등록 후에도 현재의 동일한 서비스방식을 외국회사가 고수한다면 국내법 위반이 될 것이고, 국내법을 준수하는 방식은 거꾸로 사용편의성을

71)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31조제4호.

72) 30만원 미만의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 시에는 주로 안심클릭 또는 안전결제(ISP)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6제1항단서.

73)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6제3항.

74) ‘아이튠즈’ 해킹 국내 피해 첫 확인... 애플사, 항의 고객엔 환불 처리, ‘10.7.12, 국민일보.

반감시켜 서비스 활성화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결국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장 편리한 결제방식을 제공해야 해결될 것인데, 결국 가맹점이 신용카드 정보 등을 보관하지 않고 매 거래시 신용카드 정보 등을 이 용자로 하여금 입력하게 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⁷⁵⁾

4. 전산시설·금융거래정보(신용정보)의 해외이전 시 관련 법률문제

최근 FTA논의와 관련해서 금융권에서는 전산시설, 금융거래정보(신용정보)의 해외이전이 가장 큰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외국계 금융회사의 경우 기술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전산시설을 외부에 위탁하고 있는데 필연적으로 시설의 위탁은 관련정보의 이전과 밀접한 관련을 띠게 마련이다. 따라서 미국이나 EU 등은 자국의 국내 금융회사의 전산 시설 및 관련 금융거래정보 등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최상의 목표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전산시설의 해외이전과 관련, 이를 업무위탁으로 본다면 ‘금융회사등의업무위탁에관한규정’에서 전산시설의 관련업무를 본질적 업무로 보지 않아 원칙적으로는 해외이전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해당업법에서 금융업 인허가시 전산시설의 국내설치를 조건으로 하거나 유지요건으로 하고 있어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만을 제외하고 아직 해외로 전산시설이 나간 사례는 거의 전무하다. 아울러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에서는 국내에 본점을 둔 금융회사는 국내에 전산실 및 재해 복구센터를 구축하도록 규정⁷⁶⁾하고 있어 사실상 전산시설의 해외이전이 불가능하다 할 수 있다.

75) 가장 유력한 방식은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인증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76) 동 시행세칙 제7조제11호.

금융거래정보(신용정보)의 해외이전과 관련해서는 금융실명법과 신용정보법이 적용되는데, 금융실명법상 금융기관 종사자는 일정한 경우⁷⁷⁾를 제외하고는 명의인 동의없이 타인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공·누설을 금지하고 있으며(동법 제4조제1항)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회사가 수집된 신용정보의 처리를 일정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7조제2항). 따라서 은행·증권업과 관련된 금융거래정보는 원칙적으로 해외이전이 불가능하며, 신용카드 관련정보는 해외이전(처리위탁)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다만 보험정보와 관련해서 이를 신용정보로 본다면 해외이전이 가능하나, 의료정보와 결합된 보험정보는 관련법(의료법 등)에 따라 이전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FTA가 비준될 경우 전산시설의 이전이 가능하게 되고, 이에 따라 관련 금융거래정보의 이전도 예상이 되는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같은 행위가 적법하게 되기 위해서는 FTA비준 이후 관련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금융실명법의 경우 금융거래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이 허용되어야 하며,⁷⁸⁾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상 전산실·재해복수센터 국내설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주요 전산시설을 제외⁷⁹⁾한 기타 금융회사 관련 전산시설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해외이전이 가능하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금융관련 개인정보 국외이전과 관련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이전하는 등 개인정보 해외이전시 조치사항 등을 준수⁸⁰⁾해야 한다.

77) 법원제출명령, 국세징수법에 의한 자료조사, 국정조사자료, 감독검사목적 등에 한하여 명의인 동의없이도 자료제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실명법 제4조제1호 내지 제7호.

78) 현재 금융실명법 하에서는 명의인의 동의만 있으면 타인에 금융거래정보 제공이 가능하지만 명의인의 동의없이 제공받는 자에 대한 일정한 자격요건을 부여하여 보호·관리하는 방안이 예상된다(신용정보법의 관련 규정과 동일한 체계).

79)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된 금융회사의 경우에 한해 그 중요성과 해당법 준수(년 1회 이상 비상훈련 실시 등)여부 감독을 위해 국내에 전산시설을 구축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80) 금융회사 등이 인터넷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동법상 정보통신서비스

5. 마일리지·포인트 등의 확산과 전자금융거래법 규제

최근 많은 기업들이 자사 또는 계열사의 영업활동 강화를 위한 고객유인책으로 마일리지·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동 제도는 일종의 상용고객우대제도로 항공사로부터 시작되어 유통, 통신분야에 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마일리지 등의 사용처가 넓어지면서 사회적화폐의 개념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마일리지 사용과 관련된 이용자의 불만은 급증하고 있는 반면 마일리지에 대한 현행법 체계가 대단히 미흡하여 많은 소비자 문제를 야기시키는 분야이기도 하다.

마일리지·포인트는 발행형태 측면에서 봤을때 크게 자기발행형과 제3자발행형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비용부담 측면에서 봤을 때는 크게 자기비용 부담형, 타인비용 부담형, 비용 혼합형⁸¹⁾으로 구분될 수 있다.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마일리지의 일종인 오케이캐쉬백⁸²⁾은 제3자발행형 및 타인비용 부담형,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는 제3자발행형 및 비용혼합형, GS포인트는 제3자발행형 및 자기비용 부담형으로 볼 수 있다.

마일리지·포인트와 관련한 법률로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소비자기본법 등을 들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이용자가 미리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마일리지·포인트 등을 규제하고 있는데 다만, 마일리지·포인트라 하더라도 모

제공자로 간주되고 관련되는 개인정보보호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동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

81) 마일리지의 발행비용을 자기 이외 타인(신용카드사)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혼합된 형태를 말한다.

82)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의 구매시 결제금액의 일부분을 이용자에게 가맹점이 마일리지로 적립해 주되, 적립비용을 가맹점이 오케이캐쉬백 발행회사인 SK M&C로 주는 형태이다.

두 전자금융거래법상 규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동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요건⁸³⁾을 충족하는 마일리지 등에 대해서만 동법의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다.⁸⁴⁾

마일리지 등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공정위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및 소비자기본법·약관의규제등에관한법률의 규율대상이 된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는 ‘전자결제업자’를 정의하면서 이중 하나의 영업형태로 ‘전자적 매체 또는 정보처리시스템에 화폐가치 또는 그에 상응한 가치를 기록·저장하였다가 재화등의 구매시 지급하는 결제수단의 발행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다수의 사이버몰(3개 이상)에서 사용되는 결제수단의 발행자는 당해 결제수단의 신뢰도의 확인과 관련된 사항, 사용상의 제한이나 그 밖의 주의 사항 등을 표시 또는 고지하여야 하도록 규제⁸⁵⁾하고 있어 전자금융거래법 포섭대상 이외의 마일리지 등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1차적인 적용을 받는다. 기타 마일리지 등의 약관과 관련해서는 약관의규제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될 수 있고 마일리지 등의 분쟁발생시 이용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마일리지 산업의 성장규모가 커짐에 따라 그 관리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는 반면 현행법 체계는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관해 국회에서는 마일리지 등의 전수조사를 통한 현황분석 및 통일적인 소비자보호 대책 마련의

83) 자기(특수관계인 포함)이외 제3자로부터 2개 이상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중 분류 이상)의 재화나 용역의 구매가 가능해야 하며 이외 10개 이상의 가맹점을 가져야 한다. 마일리지 등이 선불전자지급수단 요건에 해당될 경우 자기비용 부담형, 타인비용 부담형 등은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본다.

84) 실제로 오케이캐쉬백은 동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보고 등록을 추진하였으나, 마일리지형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등록면제요건(미상환잔액 100%에 대한 지급보증 또는 상환보증보험 가입)을 충족하여 등록이 면제되었다.

85) 동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3호.

필요성을 국정감사에서 제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요건을 완화하고 현행법상 마일리지형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등록면제요건을 폐지하여 원칙적으로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⁸⁶⁾ 이외에도 항공마일리지 사용에 대한 소비자보호 대책을 공정위에서 추진하여 최근 항공마일리지의 경우 소멸시효 10년 연장, 마일리지 좌석확대 등 많은 정부차원의 대책이 나오고 있으나 마일리지의 특성상 통일된 소비자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부분이다. 따라서 마일리지 산업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1) 해당업체의 재무건전성 등을 확보하는 방안과 2) 소비자 피해발생시 이를 구제하고 보완할 수 있는 통일적인 규범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86) 이성남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법률개정안’ 참고(의안번호 6487, ‘09.11.6 의원발의)

제 2 주 제

전자금융거래로 인한 금융산업의 변화 전망

강 현 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식서비스단 단장)

I. 들어가며

국내 금융산업은 일대 전환기에 있다. 시장에서의 구조조정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해외자본의 국내유입의 증가에 대비한 지속적인 인수합병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에 비해 아직도 전체적으로 금융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대외경쟁력이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국제금융시장은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 전반적인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금융혁신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면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¹⁾ 또한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의 영향으로 새로운 금융서비스 수요가 마련됨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새로 넓어진 금융수요기반에 따른 업무영역 확대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 금융산업은 현재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준비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는 취약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금융 법규를 완화하고, 은행 중심 시스템에서 시장 중심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등 금융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금융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

1) 미국의 경우에도 금융위기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업은행(CB)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은행(IB)과 상업은행의 재분리론이 대두되고 있고 IB와 CB의 고유업무 간 경계를 잘 설정하고 사내겸업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본다.

중에 있다. G20를 계기로 정부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염두에 두면서 금융부문의 체질 개선과 성장에도 정책역량을 집중하여 우리 금융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도록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되고 있는 전자금융산업의 새로운 경향에 주목하여 그 대응책을 논의하고자 한다. 우리나라가 정보통신 분야의 선진국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러한 가운데 전세계적으로 전자금융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²⁾

다음 달이면 애플사의 아이폰이 국내에 출시된 지 꼭 1년이 된다. 그동안 스마트폰은 짧은 시간에 가입자 5백 만을 돌파하면서, 통신 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군에 폭넓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은행과 증권, 보험 등 금융권은 스마트폰 열풍에 가장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산업군으로 꼽힌다. 아이폰이 출시되자 여러 은행과 증권 회사가 앞다퉀 스마트폰 बैं킹과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을 선보인 바 있다. 이제는 단순히 스마트폰에서 बैं킹과 증권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다 ‘스마트’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태블릿, 스마트TV 등 새로운 디바이스가 속속 등장하면서 금융 서비스가 보다 다양한 디바이스로 확산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이런 배경아래 여기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한창 논의 중인 스마트폰의 폭발적인 이용이 전자금융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과 금융산업 생태계의 장기적인 관점의 산업구조 변화에 국한하여 논의하고자 한다.³⁾

2) 우리의 금융산업의 SWOT 분석을 통하여 강점으로 ① 교육수준 높은 인력, ② 소매금융역량 및 경쟁력, ③ IT 경쟁력 및 아시아 개도국에 대한 금융IT 인프라 수출 등을 들고 있다.

3) 이러한 분야에 국한하여 살펴보는 이유는 다른 금융산업 전반을 논의하기에는 아직 전문성이 턱없이 부족하고 필자의 관심 분야에 국한하여 논의함으로써 논리의 오류를 조금이나마 줄여 보고자 함이다.

II. 전자금융서비스 현황

1. 전자금융서비스의 정의

전자금융⁴⁾이란 은행, 증권회사 및 보험회사 등의 금융기관이 컴퓨터,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금융업무와 관련한 시스템을 전산화하고 금융상품의 판매, 금융서비스 채널의 제공, 지급결제 등 금융업무 및 관련 부수 업무를 전자적 방식에 의해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은 전자금융(electronic banking)을 전자적 채널을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예금·대출, 계좌관리, 금융자문의 제공, 전자납부서비스(electronic bill payment), 전자화폐 등의 상품 및 서비스가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미연방금융검사위원회(FFIEC: Federal Financial Institutions Examination Council)는 전통적인 유형과 새로운 유형을 포함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전자적이고 상호적인 의사전달 채널을 통하여 고객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을 전자금융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가능케하는 시스템을 포함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전자금융거래를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로 정의하고 있다.

전자금융은 기본적으로 서비스가 제공자로부터 이용고객에게 전달되는 채널과 서비스 이용고객이 서비스 전달채널에 접근하는 데 사용하는 장치(device)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달채널은 폐

4)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전자금융총람, 2009.5.

쇄형 네트워크(closed network)와 개방형 네트워크(open network)로 분류된다. 폐쇄형 네트워크는 별도의 이용계약에 따른 참가자, 즉 금융기관, 이용고객, 제3자 서비스제공자 등에만 접근이 허락되는 반면 개방형 네트워크에서는 이러한 회원자격이 필요치 않다.

한편, 최근 전자금융에서 이용되고 있는 접근장치는 전화, 현금자동지급기(CD: Cash Dispenser), 현금자동입·출금기(ATM:Automated Teller Machine) 등 전통적인 전자매체에서부터 PC, 휴대전화, 전자화폐 등 새로운 전자매체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새로운 접근장치의 등장으로 통합계좌관리(account aggregation), 전자상거래 대금의 지불, 전자인증, 공과금의 전자고지 및 납부(EBPP : Electronic Bill Presentment & Payment), 개인간 송금(P2P: Person-to-Person) 등 보다 고도의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전자금융과 관련하여 유비쿼터스뱅킹(Ubiquitous Banking)이란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도처에 널려있다’라는 의미를 지닌 라틴어에서 유래된 동 용어는 고도화된 정보화 환경 속에서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금융업무를 볼 수 있게 된 최근의 금융환경을 지칭한다. 특히 휴대전화, PDA, 스마트폰 등 휴대하기 쉬운 각종 정보화기기의 발달에 힘입어 전자금융은 점차 유비쿼터스뱅킹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다.

2. 전자금융서비스의 특성

전자금융은 전통적인 금융서비스와 비교하여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으며 그에 따른 파급효과도 크다. 우선, 전자금융은 기본적으로 비대면·비장표 거래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금융거래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어 고객의 입장에서는 금융서비스 이용편의가 크게 증대된다. 과거에는 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고 따라서 금융기관의 영업시간 내에서만 거래가 가능하였으나 전

자금용의 발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라도 금융거래가 가능해졌다.

또한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도 장표사용 감소에 따라 관리비용과 거래건당 처리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어 수익성이 제고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이 가능하여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밖에 전자금융의 발달은 일반인들의 현금 사용 행태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통화당국의 화폐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비대면, 공개네트워크 이용, 제3자에 대한 IT기술 의존 증가 등으로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전반적인 리스크 상황이나 수준이 전통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때와는 상당히 달라졌다. 특히 전략·운영·법·평판 리스크 등이 이전에 비하여 더욱 중요해졌으며 또한 국경을 초월한 금융서비스의 제공도 보다 용이해짐에 따라 국가간 상이한 법규체계, 고객신용평가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및 관련 당국의 감독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 이용자, 금융기관, 금융당국 등 전자금융을 둘러싼 많은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s)은 전자금융으로 인한 다양한 리스크를 파악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전자금융서비스의 분야별 현황

1) 은행

국내은행의 전자금융은 1980년대초 국가기간전산망 구축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금융정보화 사업을 통하여 발전하여 왔다. 본 사업을 통하여 금융기관 본·지점간 온라인네트워크의 구축뿐만 아니라 CD공동망, 타행환공동망, CMS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등의 금융공동망이 가동되어 전국이 1일 결재권화 되고, 대고객 서비스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해소되는 등 전자금융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후 1990년대 하반기부터는 인터넷을 전달매체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전자금융수단이 등장하였다. 그 중에서도 인터넷을 통하여 자금 이체 등이 가능한 인터넷뱅킹은 그 이용편의성과 비용상의 이점 등으로 이용자가 급증하였으며 현재 가장 중요한 금융거래채널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에는 기업간(B2B) 전자상거래의 확산에 대응하여 물품매매와 대금결제를 온라인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전자외상매출채권 결제시스템이 이용되고 있으며 이외에 다른 전자금융서비스도 개발되고 있다. 또한 전자화폐도 은행 공동으로 개발한 K-Cash와 VisaCash, MYbi 등이 시장확대를 위해 노력 중에 있다. 은행권의 전자금융서비스 이용 확대는 소액결제서비스 중 전자지로, 은행공동망, 신용카드 등 전자방식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뚜렷이 나타난다. 1991년 10%대에 그쳤던 전자금융 이용비중은 매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에는 85.1%까지 확대되었다. 특히, 인터넷뱅킹 중 모바일뱅킹의 이용건수는 2009년 3분기 기준 187만 건으로 전분기 대비 18% 증가하였으며, 동기간 금액은 2,916억원으로 19.5%가 증가하였다. 모바일뱅킹 이용실적의 꾸준한 증가에 힘입어 인터넷뱅킹에서 차지하는 모바일뱅킹의 건수와 금액비중은 2009년 3/4분기 중 각각 전체 인터넷뱅킹 건수 및 금액 대비 6.4% 및 1.0%로 소폭 증가하였다.

2) 증 권

한편 증권 및 보험 등 비은행금융기관도 전자금융서비스의 도입에 적극적이다. 증권업의 경우 전화를 매체로 한 폰트레이딩을 시작으로 PC, 전용단말기, PDA, 휴대전화 등으로 서비스 이용매체를 확대해 왔으며 그중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증권거래가 전체 전자증권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온라인 증권거래는 일반거래에 비해 거래수수료가 저렴하며, 상대적으로 시간·공간적 제약이 없어 매매타이밍의 포착에 유리하고 각종 풍부한 실시간 투자정보를 얻을 수 있는 등 장점이 많아 최근 이용이 크게 증가하였다.

3) 보 험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전자금융서비스는 전화, PC,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보험업무를 처리하는 텔레마케팅, 인터넷마케팅, 모바일마케팅 등을 포괄한다. 최근까지는 은행이나 증권에 비해 상품의 표준화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전자금융서비스의 이용이 저조한 편이지만, 성장잠재력은 큰 것으로 보고있다. 특히 보험업계는 인터넷, 콜센터, 모집인, 대리점 등 다양한 판매채널을 동시에 이용하는 특성이 있는 바, 여러 판매채널을 통해 수집된 보험소비자에 대한 단편적인 자료를 정보로 전환하여 판매채널간에 공유하는 것이 마케팅 능력 제고에 필수적이다. 특히 지난 2003년 9월 방카슈랑스가 국내에 도입되면서 보다 다양한 은행 채널을 통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험회사는 전자금융서비스를 강화하여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국내 보험시장이 맨투맨에 의한 상담영업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전자금융을 통한 신규보험 체결은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4. 전자금융거래법의 제정 및 시행

전자금융거래는 기존의 민·상법과 은행법 등 금융관련 법률로 규율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이는 전자금융거래의 비서면성·비대면성이라는 전자적 특성 때문에 기인한다. 예를 들어 해킹시 손해배상 책임 등은 기존의 법률 내용으로 명확하게 규율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또한 금융과 통신의 융합 현상이 진전됨에 따라 통신회사 등

비금융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금융업무 범위가 모호해지고 있어 기존의 감독체제로는 이를 효율적으로 감시·감독하기 어렵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 전자금융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1월 1일 전자금융거래법이 제정·시행되었다. 동 법은 당초 1993년 전자지급거래를 규율하기 위하여 전자자금이체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이 추진되었으나 대내외적 여건의 미성숙으로 인해 제정이 유보되었다. 이후 2001년 정부 주도로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게 되었으며 동 년말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이 합동작업반을 구성하고 법안 마련에 본격 착수하게 되었다. 이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국 2006년 4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전자금융거래의 기본 절차와 요소, 이용자보호, 책임관계 등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거래법의 성격과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업무범위, 진입규제 및 검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사업법 성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단일법으로 전자금융 전반을 규율하는 경우는 우리나라의 전자금융거래법이 세계 최초의 사례가 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의 시행으로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금융기관 등의 책임이 강화되었고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가 명확화 되었다. 또한 비금융기관인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안전성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처리절차 구축을 의무화시키는 등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이용자 보호장치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금융기관은 물론 비금융기관까지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는데 따른 건전성 감독 근거가 법제화되어 실효성 있는 감독 및 검사업무가 가능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2008년 3월 22일 이후부터 전자금융업중 유무선전화결제방식을 영위하는 통신회사 등의 사업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자금융업자 대신 「동 법」상의 통신과 금 서비스사업자로 등록됨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대상기관에서 제외되었다.

Ⅲ. 전자금융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제언

1. 전자금융이용자의 스마트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1) 스마트 폰의 정의 및 특징

2009년 애플의 아이폰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소개되고, 올해 초 도입되면서 IT 분야에서 스마트폰(Smart-phone) 광풍이 불고 있다. 스마트폰은 일반적으로 PDA 등에서 제공되던 개인정보 관리 기능과 휴대전화의 휴대전화 기능을 결합한 휴대용 기기를 지칭한다.

스마트폰은 휴대폰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음성과 데이터 통신뿐만 아니라 무선인터넷을 지원하며, 점차 PDA폰과 스마트폰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이 둘을 통칭하여 스마트폰으로 통칭하고 있다. 컴퓨터의 핵심 기능을 전화기와 연결한 것이 스마트폰 기술의 핵심으로 이메일이나 웹브라우저 사용은 물론 업무용 오피스 프로그램까지 휴대전화로 가능하게 되었다.

스마트폰은 PC싱크나 와이파이(WiFi) 등을 통해 직접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어 지금까지 이동통신사들이 제공하던 콘텐츠를 통하지 않고도 제한 없이 각종 인터넷 콘텐츠나 애플리케이션을 내려 받을 수 있다. 일반 휴대전화는 데이터 통화료가 발생하지만 스마트폰은 Wi-Fi라는 무선랜이 탑재되어 있어서 무선랜이 가능한 곳에서는 무선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3G, 3G+(HSPA), WiBro 등 이동통신 기술이 발전하여 기존에는 가정, 학교, 기업 등 고정된 장소에서 사용하던 인터넷 서비스를 시간

과 위치에 구애받지 않고 이동 중에도 이용 가능하며, Wi-Fi가 적용된 스마트폰은 상대적인 빠른 속도와 저비용이라는 장점을 바탕으로 기존 유선 인터넷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2) 스마트폰 이용 현황

이동통신과 Wi-Fi를 모두 지원하는 스마트폰(이동전화단말기)는 2008년 약 6천만대로 세계 이동전화단말기의 약 4.7% 수준이었으나, 2012년에는 약 5억 7천만대로 세계 이동전화단말기의 약 31.5%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⁵⁾

스마트폰의 Wi-Fi 적용을 촉진하고 있는 요인으로는 무선 인터넷을 빠른 속도에 저비용으로 이용하려는 이용자의 증가, Wi-Fi를 이용할 수 있는 접속 인프라의 증가, Wi-Fi 기술의 지속적인 개선, Wi-Fi를 활용하는 신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증가, 이동통신 망과 Wi-Fi망 간 역할 분담을 통한 모바일 시장 활성화 등을 들 수 있다. 2009년 4분기 아이폰이 국내에 본격 소개되면서 스마트폰 가입자가 증가세로 전환되었고,⁶⁾ 아이폰에 대응한 국내 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국내 통신업체간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어 가입비용이 저렴해지고 있다.

3) 스마트폰이 전자금융서비스에 미치는 효과

전자금융서비스는 주로 유선 PC 기반의 인터넷 서비스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무선에 기초한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로 전환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과 소비가 주로 유선 PC 기반에서 이루어지다가 무선-휴대폰으로 확산되는 추세

5) Gartner Dataquest(2009), In-stat: 향후 Wi-Fi 탑재 이동전화단말기(스마트폰)의 보급이 점점 증가하여 2012년에는 3억대가 넘는 Wi-Fi 내장 단말기가 출시될 것으로 전망한다.

6) 스마트폰 이용자수는 현재 500백만명을 넘어, 연말에는 600백만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며, 특히 스마트폰이 인터넷의 무선화를 촉진하고 있다.⁷⁾ 스마트폰은 와이브로가 지원되는 장소에서 노트북 사용이 불편하고 기존 휴대폰 단말기로는 활용하기 어려운 기능상의 여러 서비스를 동시에 해결 가능하며, 전자금융서비스와 연계하여 고려해 보면 기존 PC 기반의 인터넷 금융거래를 스마트폰에서 가능하게 되어 모바일 banking과 인터넷 banking이 결합된 형태의 금융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 금융 채널의 혁신

은행 마감시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고객이 편리한 시간에(Any-time), 은행 창구가 아닌 어디에서든지 고객이 편안한 장소에서(Any-where), 다양한 정보화 기기를 이용한(Any-device) 고급 모바일 정보의 활용이 가속화될 것이다. 모바일 인터넷을 통한 금융거래가 일반적인 금융 채널로 자리 잡게 되면서 디지털에 익숙한 고객들이 다양한 서비스와 거래 혁신을 요구하게 된다.

다양한 형태의 모바일 인터넷 거래 어플리케이션이 자유롭게 개발, 제공되면서 금융기관별 어플리케이션 개발 노력이 경쟁적으로 발전하며,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시간, 공간 등의 서비스 제약 요건이 약화되어 고객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원거리 은행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PC에 국한된 인터넷 banking서비스가 휴대전화, ATM과도 연동되어 상호작용성이 매우 강한 인터넷을 자유로운 이동상태에서 구현할 수 있고, 실제세계와 유사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7)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banking 이용자는 올 3분기에 100만명을 돌파해 137만명에 달했다. 이용건수는 전분기 대비 약 370%(105만건), 이용 금액은 약 300%(483억원) 증가했다. 아직은 규모 면에서 전체 모바일 banking 사용자나 인터넷 banking 사용자 숫자에 비해 크게 못미치지만, 스마트폰이 가져다 줄 다양한 가능성에 금융권도 주목하고 있다(한국은행, 2010.10. 재인용).

나. 인터넷 전문은행 탄생에 기여

정보통신 네트워크가 소매금융의 주요 채널로 등장하면서 스마트폰을 통한 증권, 보험거래가 일반화되고, 인터넷 बैं킹을 통한 증권, 보험 관련 소액 지급결제 시스템 중개기관 설립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 은행 수수료가 절감되면서 소비자도 소액결제 중개기관 없이 직접 보험, 증권사와 직거래할 수 있는 채널이 형성되어 정부는 점포 없이 인터넷과 콜센터를 통해 예금수신, 대출 등의 업무를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09년부터 전면 허용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은 '08년 5월 25일 금융회사 진입규제와 관련해 금융산업의 경쟁을 촉진하도록 은행·보험·전자화폐 발행업 등 금융사 진입요건을 완화하고 진입관련 절차를 간소화 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다. 통신사업자의 금융사업자의 융합

모바일 지급결제 시스템 발전으로 통신업계는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대신한 새로운 지급결제형태를 제공함으로써 유사금융기관으로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SK텔레콤의 OK Cashback 서비스, T-money 등 통신사업과 연계한 가맹점과 업무제휴 등을 통한 지급결제 수단 확보하고 있다.

또한, 금융과 통신의 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데 관심을 가지며, 기존의 금융기관이나 유통기업들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망을 활용하여 이동통신 시장과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KT와 마케팅 제휴를 하고 있는 신한카드도 모바일 카드 사업의 일환으로 별정통신사업자연합(MVNO사업협의회) 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며, 신용카드사와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MVNO사업 참여를 모색 중이고, BC카드사 등이 현재 MVNO에 관심을 갖고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⁹⁾

8) 그러나 아직 지점 방문 없이 계좌개설 등이 가능한 편리성을 강조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은 '금융실명제'와 상충되고 있어 오프라인을 통한 대면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금융실명제'가 완화되어야만 수익모델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9)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라. 범용가입자인증모듈(USIM)활용과 보안의 중요성 증대

범용가입자인증모듈(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 USIM)을 내장한 스마트폰의 발전으로 은행업무뿐 아니라 백화점이나 주유소 멤버십, 교통카드 역할이 가능하여 지갑이 없어도 휴대전화 단말기만으로 모든 지불이 가능하게 된다. 2008년 5월 22일 W-CDMA 단말기의 잠금 설정(USIM Lock) 해제를 위한 관련 규정 제정을 의결하여 이동전화사업자를 바꾸더라도 USIM 카드만 바꿔 꽂으면 이전 단말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스마트폰 금융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구매·여가·결제활동이 보다 자유롭게 확장되면서 개인인식장치에 대한 보안장치 발전하는 등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전자결제 및 각종 서비스의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폰에 내장된 가입자 인증모듈에 대한 보안이 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마. 신규 서비스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확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은행상품과 서비스 등장으로 금융기관의 수익기반을 확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전자 요금고지 및 지불¹⁰⁾과 금융EDI가 가장 대표적인 신규서비스로 이는 IT제품의 기능제고와 가격하락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대부분의 요금 징구기관이 규모와 관계없이 업무프로세스를 온라인화 할 수 있는데 기인한다.

바. 기업과 소비자의 전자상거래 활동을 지원

전자화폐 등 새로운 지급결제 수단을 제공하여 은행 외 기타 기관들이 전자상거래 결제수단으로 전자화폐, 전자수표, 전자어음을 개발 가능하게 된다.¹¹⁾ 스마트폰 열풍 이후 전통산업과 IT산업의 융합이 촉

10) 전자요금고지 및 지불서비스(EBPP, Electronic Bill Presentment and Payment)는 고객들이 은행 웹사이트를 통해 요금징수 내역을 살펴보고 지불을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

11) B2B전자상거래(전자수표, 전자어음, 전자구매카드), B2C전자상거래(전자화폐, 인

진돼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는 이른바 ‘스마트 비즈니스’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4) 전자금융서비스에 있어 스마트폰 이용의 문제점

가. 보안 등 기술적 문제점

2009년 12월부터 아이폰이 본격 도입되면서 스마트폰 백신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했으나, 백신 프로그램이 완성되기까지 최소 5~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는 최근 1년 사이에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아이폰 출시 이후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는 5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스마트폰에 작용하는 악성 바이러스도 해외에서는 올 1/4분기 현재 900여개가 발견되고 있어 이들 바이러스가 국내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로 인식된다.

현행 액티브엑스 방식의 보안프로그램 장착은 웹에서 응용프로그램을 이용자의 PC에 설치하도록 하는 기술로, 국내에선 보안프로그램과 인터넷뱅킹, 전자상거래 웹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작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으로 노트북이나 PC는 물론, 제3자의 스마트폰까지 실시간으로도 감청할 수 있으며, 해킹중인 PC의 원격조정까지 가능하다는 사실이 시연을 통해 알려진 바 있다.

나. 어플리케이션 자유로운 공급에 따른 전자금융서비스의 중앙통제 문제

각 스마트폰과 연계된 어플리케이션 스토어를 통해 다수의 제작자가 다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수많은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이에 대한 개별 통제가 불가능해 중앙통제를 핵심으로 하는 금융산업에 보안에 대한 문제가 가중될 것으로 여겨진다.

터넷 기반 신용카드)

다. 모바일 지급결제 표준화의 미비

이동통신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폰빌 및 가상계좌 서비스 외에 모바일 뱅킹 및 단말기 서비스의 호환성이 결여되고 있다.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준의 선점이 기업의 사운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지만 단일화 된 표준화 구현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다.¹²⁾ 국내 모바일 지급결제 표준화는 전자상거래 표준화 통합포럼에서 논의 중에 있으나 아직 해결하여야 할 과제들이 산적하여 있다. 한편 아이폰의 국내 시판으로 국외 표준화 문제도 걸림돌로 제기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통일된 표준화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과거 인터넷뱅킹에서 CD/ATM기를 통한 모바일 현금카드 서비스 개발 등에서 각 은행별로 서비스 추진방향이 달라서 또 다시 전체은행이 모여서 상호 호환이 가능한 서비스 개발을 진행한 경험이 있었다. 스마트폰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전체 은행들과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등이 참여해 표준화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¹³⁾

라. 금융감독체계를 벗어난 전자결제로 결제시스템 위험노출 가능성 증가

지급결제제도(시스템)의 비효율성 및 불안정으로 결제가 종료되지 못할 경우 경제 내 자금 흐름에 문제가 생겨 금융시스템 전체가 흔들리고 국가 경제활동도 위축되는 등 국민의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

12) 모바일 표준플랫폼, 암호화 및 인증기술, 모바일 지급결제 통합, 스마트 카드 등이 모바일 지급결제의 핵심 표준화 대상기술이다.

13) 이에 반해 실제로 그러한 플랫폼을 만들어서 해외에 진출한다면 그 주체는 은행이 아니라 다른 사업자들이 될 것이라는 이유와 공동으로 개발한 인프라는 은행의 소유인지 남의 소유인지 애매한 상황으로 시스템에 매몰되어 은행들이 공동 시스템의 개별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돼 버릴 수 있다는 반대론도 있다.

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지급결제의 완결성 및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담보할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마. 스마트폰 금융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및 금융보안 시스템 비용 증가 문제

신규금융기관이나 지방금융기관, 상호금융 등 소규모 금융기관들은 스마트폰 금융 어플리케이션이나 관련 보안 시스템의 추가적인 개발 여력 부족하다. 이에 금융의 집중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대형 금융기관의 금융독점 가능성이 예상되고, 특히 금융보안과 관련하여 보다 엄격한 기준들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막대한 유지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존 대형 금융기관 혹은 대형 통신사만이 스마트폰 전자금융서비스를 독점할 우려가 있다. 서민금융기관은 자본력이 부족하여 전자금융시장에서 소외되면서 존립에 문제로까지 확산될 가능성도 있게 된다.

2.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 기술의 적극적 활용

1) 금융산업의 생태계 변화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구조조정을 통한 내실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금융시장은 국내시장을 벗어나지 못한 채 과당경쟁을 펼치며 여전히 ‘우물안 개구리’식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¹⁴⁾ 금융산업은 경제의 혈관이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우리 경제가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선 강한 금융시장 육성이 필요하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경제는 대기업 중심의 제조업 위주의 수출전략으로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룩해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진입했다.

14) 이투데이, 한국 금융, 이제 세계가 무대다, 2010. 10. 13

이제 선진국을 넘어 세계 초일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리 금융의 국제적 도약이 필수적이다. 금융선진화 없이 지금처럼 제조업 위주의 수출전략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 금융시장이 흔들리면서 빈틈이 생겨 일부 선진금융기관들이 이 기회를 이용해 인수합병을 통한 시장 선점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 금융도 금융선진화 도약과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해외 시장에 눈을 돌릴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

우리 경제가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금융산업 선진화를 이루지 않고서는 미래성장동력을 마련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금융산업의 현실은 선진국이나 다른 이머징마켓 시장에 비해 글로벌 경쟁력이 뒤떨어져 있어 금융선진화의 도약을 위한 과제가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본다. 국내 금융산업은 실물부분에 비해 양적·질적 수준, 자본시장 발전, 신금융기법 개발, 금융국제화,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등에서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올 9월 발표한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2010년 우리 금융시장성숙도는 83위로 후진국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 금융시장은 다시 각국 정부가 규제를 가하면서 새로운 개편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국내 금융산업이 도약하기 위한 과제에 대해 정리하여 본다.

2) 금융산업 가치사슬에서 정보의 역할 변화

기존의 가치사슬에서 정보는 가치창출을 위한 하나의 지원 수단에 불과하였으나 정보지식사회에서는 가치사슬이 버추얼화 됨에 따라 부가가치 창출이 3I(information, idea, intelligence)에 의해 실현되고 있다.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가치사슬이 정보 및 정보통신기술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그 동안 하나의 기관에 의해 수행되던 모

든 물리적 가치창출 활동들이 정보를 중심으로 네트워크상에서 분리되는(disaggregated) 현상이 금융서비스 산업에서 심화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증권 중개기관(brokerage industry)에서 기존의 증권회사들은 고객에게 주식시장에 대한 접근, 실시간 데이터나 정보, 트레이드의 실행, 안전한 지급결제, 주식 매매에 대한 조언 등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온라인 증권 중개기관인 E-Trade는 이러한 부분들을 분리하여 파트너와 함께 웹상에서 재결합하였다. 그 결과 고객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을 뿐 아니라 예전에는 브로커들의 전유물이었던 정보의 세계에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개인고객들은 더욱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어 그들의 투자 목적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저렴하고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금융산업, 특히 소매금융 분야에서의 정보기술 영향으로 금융산업 가치사슬의 전자화가 진행되면서 금융산업의 생태계가 변하고 있다. 소매 금융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참여자들이 이제는 금융기관들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하부구조 제공자, 통신부가서비스 제공자 등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즉 전자금융의 발달에 따라 금융산업을 보조하거나 이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금융산업 참여자들에 의한 6단계 산업 모델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내용물 제공자, 주변환경 조성자, 하부구조 제공자, 지급결제 처리자, 최종 사용자 접근 서비스, 그리고 고객 등에 의해 금융 서비스의 가치사슬이 구성된다. 그리고 이들간의 융합화 현상이 정보기술의 영향으로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그 과정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업점과 같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던 은행이나 증권사는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형성된 전자적인 가치사슬 상에서도 여전히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내용물 제공자로서 금융 및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고객에게 제공한다. 더욱이 전자적인 가치사슬에서는 전통적인 금융기관의 역할 뿐 아니라 상품과 서

비스를 고객의 선호도에 맞추어 취합하여 전자물의 형태로 고객에게 광고하는 전문적인 서비스 전달자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전화회사와 같은 하부구조 제공자는 전자물이 고객과 연결되기 위해 필요한 전화선이나 케이블선과 같은 통신 라인을 제공한다.

또한 가치사슬이 전자화되면서 앞으로는 금융기관이 아닌 지급결제 처리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기관이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기관은 전자적인 지급결제 채널을 구축하여 고객계좌로부터/에게로의 자금 입금과 출금 등 자금 흐름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이미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기관들이 많이 출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고객이 금융 서비스를 전달받는 매체가 ATM, PC, 핸드폰, PDA, 태블릿 등으로 다양화되면서 고객들이 느끼는 서비스의 질이 은행과 같은 내용물 제공자의 수준 뿐 아니라 통신회사나 전자회사의 서비스 또는 기기의 성능에 따라 결정되는 현상이 증가할 것이다. 결국 금융기관들은 고객이 느끼는 서비스의 가치가 금융기관이 아닌 통신회사나 전자회사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결정될 수도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들은 앞으로 고객이 느끼는 서비스의 가치가 전화회사나 통신회사가 아닌 금융기관에 의해 제공됨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해진다.

3) IT를 활용한 금융경영 혁신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하드웨어 중심의 전산화를 기반으로 정보축적과 활용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했지만, 이제는 온라인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각종 금융정보의 DB화 및 금융 관련 심사의 정보화 등을 통해 신용정보를 체계화하고 신용에 기초한 영업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신용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2008년 9월,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당시 세계 4위의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가 쓰러지면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덮쳤을 때 이에 대한 대처도 결국 “신기술이 야기하는 문제는 결국 신기술로 풀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IT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 바 있다.¹⁵⁾ 달리 표현하면 우리는 정보통신기술을 금융업무의 주요한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정작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나 심사업무에는 등한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분야는 결코 새로운 것도 아니고 다대한 예산을 투입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지만 결국 금융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마인드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선진 금융기법에 대한 대비, 각종 금융정보에 대한 판단 등도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가능하다고 본다.

15) 트렌드컨설팅사 미국 민킨연구소의 배리 민킨(Minkin) 대표가 언급

< 참고문헌 >

- 강임호, 2007, 「디지털 금융, 누가 주도할 것인가?」,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권민정, 2009, “국내 M 커머스 동향 및 활성화 기회”, KT 경제경영연구소 Issue Report
- 금융감독원, 2010, “스마트폰 전자금융서비스 안전대책”,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0.1.7
- 김민정·김성숙, 2005, 「디지털 경제와 소비자」, 서울: 태일사
- 김성우, 2009, “대중화 문턱에 선 모바일웹, Telco의 대응은?”, KT 경제경영연구소 Issue Report
- 김종기, 2009, 최근 세계 휴대폰시장의 환경 변화와 시사점, 「산업경제」, 한국산업개발연구원, 2009. 4
- 동양종합증권, 2010, “스마트폰, 통신 그리고 무선인터넷”, 산업분석 리포트, 2010.1.10
- 조진만 외, 2005, “모바일 지급결제 시장현황 및 표준화 동향”, 대전: 전자통신정책연구원(www.etri.re.kr)
- 한국은행, 2009, “2009년 3/4분기 국내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현황”, 한국은행 보도자료, 2009. 10. 26
-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2009, 「전자금융총람」, 서울: 한국은행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2009 한국인터넷 백서」,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KT 경제경영연구소, 2009, “아이폰이 가져올 혁신과 변화”, 서울: KT
경제경영연구소, 2009.11.26

ROA Group, 2009, 「2010 통신시장 전망보고서」, 서울: ROA Group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Gartner Dataquest (<http://www.gartner.com/it/products/research/dataquest.js>)

제 3 주 제

전자금융과 지급결제업무에 관한 법적고찰

김 선 광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들어가며

2010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하게 될 법률 제10281호인 상법 제46조 기본적 상행위에는 제22호에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을 이용한 지급결제 업무의 인수’를 규정하고 있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들여다보면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여 방송, 지급결제 업무의 인수 등 새로운 상행위를 신설하고, 공중접객업자의 비현실적인 엄격책임을 완화하며, 새로운 상행위인 리스, 프랜차이즈, 팩토링의 법률관계를 구체적으로 이 법에 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서, 경제살리기 관련 법안’이라고 설명한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거래시장에서의 상관습이 법적확신을 얻어 뒤늦게나마 입법된 것으로 거래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려는 입법 의도를 찾아 볼 수 있겠다.¹⁾

정보통신기술의 압축팽창은 이미 법제화(Kodifikation)의 속도를 넘어 새로운 거래유형을 끊임없이 창출해내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बैं킹(Banking)은 이미 다양하게 확산되었고, 전자장치로 자금을 이체한다거나, 온라인망을 통해 증권을 거래하고, 신용카드나 전자화폐로 전자결제를 하는 등 전자적 거래방식을 통한 금융거래가 증폭되어 가고 있

1) 拙稿, 상행위개념의 변화와 상법개정, 상사법연구, 제28권 제2호 별책, 2009.8, 9쪽 이하 참조.

는 것이다. 물론 입장일단이 있다. 이러한 전자금융거래의 양적인 폭 증은 신속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거래환경을 만들어 금융 거래를 좀 더 효율적으로 편리하게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상상을 초월하는 금융사고의 위험은 일방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아야만 하는 금융소비자에게 상시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전자금융거래 중에서 이번에 시행될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을 이용한 지급결제 업무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우선 전자금융 거래가 어느 정도 일상적인 거래로 자리잡고 있고, 얼마나 다양한 거래유형이 있는지를 알아본 다음, 지급결제업무가 가지는 법적 문제점과 금융소비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를 되도록 법적고찰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II. 현실인식의 토대

1. 전자금융

전자금융(Electronic Finance)은 기존의 금융거래방식이 전자적으로 거래방식이 바뀌는 환경에서 인터넷이나 다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은행업무, 증권거래, 지급결제, 보험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련의 전자식 금융거래를 의미한다. 따라서 논리필연적으로 온라인 전산망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전산망은 유·무선 설비를 통해 금융기관의 운용구조와 금융소비자의 전자적 접근장치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증권사도 2009년 7월부터 금융소비자에게 자금이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에 따라 소액결제시스템의 이용자수가 증가하고 결제구조가 완전히 전자통신망을 이용하는 일대 변환을 맞게 되었다.²⁾

2) 전자금융과 관련된 법규를 살펴보면,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과 정보보호에 관한 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이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는 ‘전자금융공동망’ 등 소액결제시스템³⁾에 참가하여 지급결제 등 자금이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금융투자회사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 금융소비자는 계좌이체 거래시간을 특정한 제약조건이 없는 경우 Off-Line을 통한 계좌이체보다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창구송금, 지로납부 및 자동이체 등 다양한 지급결제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좀 더 편리한 거래환경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표 1] 소액결제시스템과 주요 처리업무⁴⁾

시스템구분	주요 처리업무	참가기관수	
		은행	특별참가 ⁵⁾
어음교환	- 어음·수표의 교환	18	5
지로	- 각종 대금수납, 급여·연금 등의 대량자금이체 - 자동이체	18	7(21)
전자금융공동망	- 인터넷뱅킹의 계좌이체, 조회	17	9(25)
타행환공동망	- 창구송금	17	12(21)
CD공동망	- CD/ATM 현금인출, 계좌이체	17	7(15)
CMS공동망	- 자동이체	17	8(24)
지방은행공동망	- 계좌이체, 조회	6	
직불카드공동망	- 직불카드대금 이체	17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이 있고, 2010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하게 될 개정 상법에 기본적 상행위의 한 유형으로 지급결제거래가 포함됨으로써 상법도 관련을 가지게 되었다.

3) 금융투자회사(증권회사)는 소액결제시스템 중 계좌이체, 자동이체, 현금인출기와 같이 국민경제생활과 밀접한 업무처리에 사용되는 CD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타행환공동망, 지로, CMS공동망 등 5개 핵심 소액결제시스템을 그 참가대상으로 선택하였다.

4) 최윤영, 자본시장법과 지급결제서비스 채널전략, 지급결제학회지, 제3권 제2호, 2009. 12, 87쪽.

시스템구분	주요 처리업무	참가기관수	
		은 행	특별참가 ⁵⁾
전자화폐공동망	- 전자화폐 사용대금 이체	17	
PG	- 개인·기업 간 전자상거래	16	
B2B	- 기업 간 전자상거래	15	

1997년 IMF 구제금융협약 이후에 눈에 띄게 확산된 전자금융은 금융서비스의 운용형태를 다양하게 하여 금융거래를 편리하게 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면서도 금융소비자들의 정보접근성과 거래비용의 절감효과를 이끌어내어 실질적인 금융실명과 거래안전을 실현하고 있는 셈이다.

2. 전자화폐

전자화폐(Electronic money)⁶⁾는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선불형 전자지급수단⁷⁾이나 가치소재형 지급수단을 말한

5) 금융결제원의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려는 기관이 은행법상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 특별참가의 형태로 참가하는데 현재 우체국, 농·수협회원조합,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일부 외국계은행 등이 특별참가하고 있다.

6) 전자화폐는 1993년 4월 덴마크에서 발행된 Danmont Card를 시작으로 초기에는 IC카드형 전자화폐가 주로 개발되어 사용되다가 최근에는 전자상거래의 급증에 따라 네트워크형 디지털전자화폐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이 2001년 89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IC카드형 전자화폐는 34개국이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고, 네트워크형 디지털전자화폐는 보안성 때문에 활성화되지 않아 2009년 12월 현재 6개국 정도가 상용화를 위한 시험운용 중에 있다.

7)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 가. 발행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나.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

다.⁸⁾ 전자화폐는 IC카드형 전자화폐와 네트워크형 디지털화폐로 나뉘는데 IC카드형 전자화폐는 플라스틱카드의 IC칩에 현금과 같은 통화 가치를 내장시켜 이를 상품 또는 금융서비스판매자의 은행계좌로 직접 이전하는 것이고, 네트워크형 디지털화폐는 인터넷과 연결된 PC에 통화가치를 저장하여 온라인망을 통해 디지털신호의 형태로 지급과 결제에 이용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전자화폐의 거래절차는 ① 발행 및 통화가치저장 ② 통화가치이전 ③ 결제의 세 단계로 나뉜다. 발행(Issuance)⁹⁾은 통화가치를 저장하고 금융소비자에게 교부되는 시점이나 금융소비자가 스스로 통화가치를 저장하는 경우에 발행자의 전자계좌에 입금된 현금통화만큼 기장(記帳)된다. 이 경우 통화가치의 저장>Loading)은 ATM(Automatic Teller Machine), 모바일 휴대전화 및 스마트카드 판독기 등 전자적 장치가 주로 이용되고 이러한 전자적 장치는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에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게 된다. 통화가치는 일반적으로 은행계좌에 현금통화액과 동일한 액수만큼 저장된다. 통화가치의 이전(Transfer)은 카드형 전자화폐인 경우 금융소비자가 거래점 단말기에 카드를 인식하게 하고 지급금액을 입력한 후 카드에 내장된 잔액에서 그 금액만큼 차감하고, 디지털 전자화폐의 경우

위가 2개 업종(통계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 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한다) 이상일 것.

8)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5호 '전자화폐'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지역 및 가맹점에서 이용될 것 나. 제14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5개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수 이상일 것 라.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될 것 마. 발행자에 의하여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될 것.

9) 전자화폐의 발행기관은 대부분 은행이지만 이외에도 신용카드사, 통신정보업체 및 운송회사가 참여하고 있다.

원격지의 거래당사자가 온라인통신망을 이용하여 거래내역별로 통화 가치가 이전된다. 결제(Settlement)는 기존의 은행간 결제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통상 ATM을 이용한 통신망이나 Dabitcard 또는 신용카드통신망을 사용하게 된다.¹⁰⁾

전자화폐의 발행과 통화가치 저장·이전 및 결제는 대부분 접근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접근매체는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와 전자서명법 제2조 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동조 제7호의 인증서와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수단이나 정보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이용되는 것이다.

3. 전자결제시스템

지급결제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어음·수표는 수기로 작성되어 통용되므로 기재오류 및 결제처리구조의 비합리성 등이 증가일로에 있어 결제시스템 개선이 필요성이 대두되어 오다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장표를 사용하는 방식에서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결제시스템으로의 전환이 가능하게 되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주요국을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이연차액결제시스템(Deferred Net Settlement)이 사용되는데, 이연차액결제시스템은 중앙은행이 영업마감 시점에서 참가 금융기관의 총수취금액과 총지급금액을 상계한 후 그 차액을 최종 결제하는 방식으로 결제건수 및 금액을 최소화하는 이점이 있으나 결제불이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급박한 부도위험에 노출되는

10) 최근에는 순수한 네트워크형 디지털전자화폐보다는 보안성이 뛰어난 IC카드형 전자화폐를 네트워크에 겸용화하여 인터넷상에서 사용하는 나라도 등장하고 있다.

단점이 있다. 따라서 급박한 부도위험을 줄이기 위해 거래발생시마다 건별로 즉시 결제가 이루어지는 실시간총액결제(Real-Time Gross Settlement)시스템으로 대체되기 시작했는데 실시간총액결제시스템은 거래건수별로 결제가 완료될 경우 취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급박한 부도상황과 같은 결제위험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서 자금이체, 증권대금동시결제(Delivery Versus Payment) 및 외환거래대금동시결제(Payment Versus Payment)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 실시간총액결제시스템은 거래건수별 총액결제에 따르는 금융기관의 자금결제에 따르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이를 완화하고자 각국의 중앙은행은 유동성 자금대출방식 등으로 결제자금이 부족한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다.¹¹⁾

최근에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결제시스템에다가 고도의 거래탐색 알고리즘을 구축할 수 있게 되어 실시간총액결제시스템과 이연차액결제시스템의 장점을 살린 연속차액결제(Continuous Net Settlement)시스템¹²⁾, 유동성절약(Queue-augmented) 실시간총액결제시스템¹³⁾ 등 혼합형 결제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다.¹⁴⁾

11) 미국연방준비위원회(FRB)의 Fedwire(1982), 일본은행의 BOJ-NET(1988), 독일연방은행의 ELS(1987) 등과 같은 실시간총액결제시스템이 각국의 중앙은행에 의해 직접 운영되고 있다.

12) 연속차액결제시스템은 참가 금융기관의 지급지시가 초기에는 대기상태에 있다가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 결제계정 잔액범위 내에서 상계 가능한 지급지시의 조합을 찾아 최종결제가 이루어진다.

13) 유동성절약 실시간총액결제시스템은 지급지시를 거래건수별로 받아 즉각 결제가 가능하지만 결제자금 부족으로 대기상태에 있는 지급지시는 양자 간 상계방식 또는 상계 가능한 다수의 지급지시를 묶어 다자간 상계방식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독일연방은행의 RTGSplus(2001)가 대표적이다.

14) 함정호/홍승재, 전자금융 발달과 통화정책, 지급결제학회지, 제3권 제2호, 2009.12, 123쪽 참조.

Ⅲ. 지급결제업무

지급결제(Payment & Settlement)는 거래당사자가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채권·채무관계를 통화가치의 이전을 통해 변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지급수단이란 현금 이외에도 그 소지인이나 사용자가 자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장표(帳票) 또는 전자적 지급방식을 모두 포함한다. 현금을 이용할 경우 현금 지급과 동시에 결제되지만 신용카드나 전자화폐를 사용한 지급결제는 지급결제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 지급결제시스템이란 자금의 이체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의미하며 지급수단, 참여기관, 운영조직, 업무처리 규정 및 절차, 전산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용기관은 지급결제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지급수단의 교환 또는 이체지시의 송·수신을 중계하고 이에 따른 거래의 청산 또는 결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지급결제는 정보통신기술과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인한 상품시장에서 거래환경이 급변하면서 은행의 고유업무로 분류되어 오랜 기간 독점적으로 이용되어 왔으나 통신회사, 유통업체, 운송업체, 제조업체,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이 전자지급결제와 금융서비스판매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급결제구조를 운용하고 있다.¹⁵⁾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교통카드가 전국에서 호환사용이 가능하도록 국토해양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사업자에게 호환단말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불이행시 정부보조금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동법 제10조의2에서는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이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경우 교통요금을 전자적으

15) 拙稿, 상행위개념의 변화와 상법개정, 상사법연구, 제28권 제2호 별책, 2009.8, 239쪽.

로 지불·결제하는 카드나 그 밖의 매체(교통카드 등)가 전국 어디서나 호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전자적 장치를 통한 지급결제가 교통요금 지불수단으로도 확대·운용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급결제업무의 전자화는 거래시장에서의 지불관련 거래관행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맞물려 지급결제방법을 완전히 변환하게 되는 획기적인 것으로 실질적 상행위로서 상법 제46조 제22호에 규정되어 곧 시행일을 앞두고 있다. 금융소비자의 지급결제수단이 다양한 지급매체별로 다기하게 지급·결제되어지고 있는 반면 금융소비자의 거래안정도 그에 못지않게 보장되어지거나 보호되어지는지는 아직 미진한 구석을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IV. 금융소비자보호

1. 법익보호의 필요

전자금융거래에서 일방 당사자인 금융소비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소정의 접근매체를 통한 자금이동과 관련하여 거래시스템의 위협성과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및 해킹 등 금융관련 범죄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의 권리·의무관계와 책임소재가 상당부분 미진한 채로 운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법률문제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관점에서 규율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금융소비자와 전자금융사업자의 이해조정에 관점을 두고 규율되어야 하는 것인지가 관건이다. 소비자 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 포함)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의미한다. 위의 소비자 개념에 금융소비자를 포함하여 다시 정의하면 금융소비자는 전자

금융 등 금융사업자가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를 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가 되므로 금융거래의 일방 당사자라는 관점에서 법익충돌을 전제로 보호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일반 소비자는 독립적으로 업무나 직무에 책임지지 않는 법률행위의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전자상거래 및 전자금융거래의 소비자의 개념도 이에 포함시키고 있다.¹⁶⁾

2. 약관에 의한 보호

전자금융거래법 제24조에는 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거래내용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하고 변경할 경우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사업자는 금융소비자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이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약관을 명시해야 하고, 금융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이에 반하여 약관을 명시하거나 설명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또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월 전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고 금융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즉시 게시하고 금융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소비자는 약관의 내용이 변경되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금융소비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사업자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을 제정

16) Gounalakis, Rechtshandbuch Electronic Business, C.H.Beck, 2003, S. 16 ff.

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건전한 전자금융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사업자에 대하여 약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그리고 약관의 제정 및 변경의 경우 금융위원회는 보고의 시기·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3. 개인정보의 보호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금융소비자의 인적사항이나 금융소비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에 관한 사항을 알게 되었을 경우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동의접근법(Consent Approach)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으로 데이터의 안전성 및 무결성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의 공개 및 사용에 관한 결정에 정보주체가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서도 전자어음거래시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과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고,¹⁷⁾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5항에서도 결제대행업체가 신용정보 및 거래대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¹⁸⁾ 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사업자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위하여 소비자에 관한 정

17)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17조 참조.

1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5항 결제대행업체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신용정보 및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내용을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보를 수집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공정하게 수집 또는 이용하여야 한다고 하고, 사업자가 재화 등을 거래함에 있어서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되어 당해 소비자가 재산상의 손해가 발행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한다.¹⁹⁾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소비자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도용여부의 확인 및 당해 소비자에 대한 관련 거래 기록의 제공이나, 도용에 의하여 변조된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원상회복 및 도용에 의한 피해의 회복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금융정보분석원의 소속공무원은 관련 규정에 위반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이를 거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⁰⁾

V. 나오며

일반적인 소비자보호와 비교하여 금융소비자에게는 다른 형태의 손해배상법리 및 손해보전제도와 금융거래시 금융사고의 위험을 예고·통지할 수 있는 사전예방조치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금융거래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인 전자금융사업자의 사전예고 없는 금융서비스 중단에 대한 대비책 및 금융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보호방법에 관한 논의는 지 금껏 입법이 등한시해 온 천덕꾸러기인 셈이다. 전자통신기술의 발달 속도를 입법이 따라잡지 못한다는 명제는 적어도 과학기술법 분야에서는 맨 먼저 버려야 할 명제가 아닌가 한다. 전자금융거래는 통한 접근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이를 통한 전자거래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

1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참조.

2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참조.

용한 금융소비자의 관련 정보제공과 이를 매개하는 거래행위는 늘 전자통신기술의 발달속도와 발달정도가 설정해주는 정합성에 구속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전자통신기술이 언제나 정합하고 완전한 장치인가. 금융소비자는 전자금융거래의 형태가 다양해질수록 그보다 더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갑작스런 금융서비스 중단도 그렇고,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본인의 승낙없이 누설되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주변 일상속에서 별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는데 주목해야 한다. 또 전자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및 전자계좌에 이체된 자금 또한 해킹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를 대비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이 정하고 있는 분쟁처리와 분쟁조정에 관한 소극적 규정만으로는 미진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이는 디지털화한 가치를 사법이론의 중심축에 놓고 법익충돌과 금융시장의 거래방식을 전제한 전자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는 특단의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잠정적인 의견이다.

제 4 주 제

中國에 있어서 電子銀行業에 대한 規制의 現況과 課題

오 일 환

(중국법정대학교 교수)

I. 序 論

일반적으로 전자금융이란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이 컴퓨터, 정보통신기술 등을 이용하여 금융업무 관련 시스템을 전산화하고 금융상품의 판매, 금융서비스의 제공, 지급결제 등 금융업무를 전자적 방식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결제은행(BIS)은 전자금융을 전자적 채널을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¹⁾, 미국, 한국을 비롯한 적지 않은 국가들에서 입법 또는 기타 방식을 통하여 전자금융에 대한 정의를 두고 필요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현재 전자금융에 대한 포괄적인 입법은 아직 없으며 전자금융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부터 인터넷사용의 증가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금융기관의 전자금융 관련 업무가 시작되고 끊임없이 증가하여 왔다. 1993년에 중국은 금융전자화계획을 실행하기로 하고 은행들은 컴퓨터의 이용을 기초로 한 업무전자화에 치중하기 시작하였다. 1995년에 上海浦東發展銀行이 처음으로 종합적인 소비신용카드인 IC신용카드를 발행하여 ATM기기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예금할 수 있게 하였으며, 2000년부터 공상은행 등 주요은행들이 온라인업무를 시작하였다.

1) 劉豐名, “論電子金融法”, 『法學評論』, 1997년 제5기, 제7면.

그 후 전화은행업무, 셀프은행서비스, 휴대폰은행업무 등이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대 중반에 들어 전자은행업무가 보편화되었고 전체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공상은행의 전자은행업무의 건수는 전체 은행업무총량의 1/4을 초과하였다고 한다.²⁾ 이러한 전자은행업무의 급속한 발전에 부응하여 중국 인민은행은 2001년 6월에 “온라인은행업무관리점정방법”(網上銀行業務管理暫行辦法)을 제정하여 온라인은행업무를 규율한 데 이어 2006년 1월에는 “전자은행업무관리방법”(電子銀行業務管理辦法) 및 “전자은행안전평가지침”(電子銀行安全評估指引)을 제정·공포하여 그해 3월부터 시행함으로써 전자은행업무를 규범화하고 전자은행업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본고는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제정한 위의 두 규칙에 따라 현재 중국 전자은행업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이 두 규칙을 중심으로 중국에 있어서 전자은행업의 발전에 따른 규제 현황을 소개하고 현행 규제의 특색과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외국인들의 중국 전자금융제도에 대한 이해에 편리를 제공하려고 한다.

Ⅱ. 電子銀行業의 發展과 現行 規制形式

1. 전자은행업의 생성과 발전

1990년대 이래 국제상 전자은행업무의 발전에 따라 중국 상업은행의 전자은행업무도 1990년 이후부터 생성하고 급속하게 발전하여 왔다. 1993년부터 중국은 금융전자화계획을 실행하기로 결정하고 상업은행들은 전산이용을 기초로 한 업무전자화에 치중하기 시작하였다. 1995년 초에 전국적으로 전자은행망에 참가한 도시가 400여개 도시가 되었고

2) 『認真貫徹落實‘電子銀行業務管理方法』, 제2면.

중국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농업은행, 中信實業銀行 등이 SWIFT의 회원은행이 되었다. 그리고 1995년 10월에 上海浦東發展銀行이 중국 최초로 종합적인 소비신용카드인 IC카드를 발행하여 ATM기기를 이용하여 입출금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해남경제특구의 경우 1995년 11월에 지방성 법규로 “해남경제특구 IC카드관리규정”을 만들어 적용하기 시작하였다.³⁾ 한편 1991년에 국무원에서 제정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조례”(計算機軟件保護條例)와 1994년에 제정한 “컴퓨터정보시스템안전보호조례”(計算機信息系統安全條例)는 컴퓨터의 금융업무에로의 광범위한 이용에 법적인 보호장치를 제공하였다.

1999년 하반기에 중국공상은행이 중국인민은행에 인터넷뱅킹업무를 신청하였고 2000년부터 주요 국유상업은행들이 인터넷뱅킹사업을 시작하였다. 인터넷뱅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국인민은행은 2001년 6월에 “온라인은행업무잠정방법”(網上銀行業務管理暫行辦法)을 제정하여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온라인은행업무잠정방법”의 제정 및 공포는 상업은행의 온라인업무를 규범화하고 온라인업무를 급속한 발전을 위한 법적인 기반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공상은행의 경우 2000년 온라인 자금이체, 지급 등 업무를 개설한 이래, 2004년 말에 이르러 전자은행업무가 이미 전체 업무량의 25%를 점하였고 1000만명의 개인 온라인은행 고객과 11만여호의 기업온라인 고객을 확보하였으며, 온라인지급 누적액이 50억위엔을 초과하여 중국내 최대의 전자상거래 온라인지급서비스제공업체가 되었다. 건설은행의 경우 2004년 말에 이르러 온라인 개인고객이 300만명 새로 증가하여 389만명이 되었고 온라인은행 개인거래액이 1019억위엔이 되어 전연도보다 2.1배 증가하였으며, 온라인은행 기업고객수는 39,573호가 증가하여 68,705호가 되었고 온라인 기업거래액은 32,937억위엔이 되어 전연도보다 83%가 증가되었다. 농업은행의 경우에도 2001년부터 전자은행업무를 시작한

3) 劉豐名, 전계문, 제2면.

이래 4년간의 발전을 거쳐 고객의 수량, 거래액 등 면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하여 전자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⁴⁾ 또한 전체적으로 보아 각 상업은행들에서 전자은행에 대한 관리방식이 초보적으로 형성하고 서비스기능이 끊임없이 향상되고 있으며, 내부관리가 갈수록 규범화되어 전자은행업무가 이미 기능성을 강조하는 데로부터 경영효율성을 강조하는 데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상업은행 전자은행업무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라 “온라인은행업무잠정방법”은 이미 전자은행의 리스크감독관리의 요구에 적용할 수 없었고 또한 당해 방법이 온라인업무의 감독관리에 한하여 휴대폰은행업무, PDA은행업무 등에 대하여 적절한 감독과 규율을 할 수 없었으므로 전자은행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이 고객이 사용하는 설비가 다름으로 하여 차이가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온라인업무에 대한 감독관리는 근거가 있었지만 기타 유사한 은행업무는 규율할 근거가 없어 전자은행의 리스크를 진정으로 통제하는 데 불리하게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온라인은행업무잠정방법”상의 규정이 국제적으로 온라인은행 또는 전자은행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통상적인 규제방법과 차이가 커 국경간 전자은행업무의 감독관리에 불리하였다. 그리고 “온라인은행업무잠정방법”의 공포시 상업은행의 정보화가 초급수준에서 중급수준으로 과도하는 시기에 처해있었으나 2002년 이후 상업은행의 정보화가 가속화되어 4대 국유은행과 대부분의 주식제은행들이 데이터집중계획을 제정하였고 공상은행의 경우에는 이미 전국의 데이터집중을 실현하였는 데, 데이터집중을 실현한 후 상업은행의 리스크관리와 감독방식에 비교적 큰 변화가 있어 전자은행업무의 운영방식 및 관리방식도 상응하게 변화가 발생하였으므로 전자은행업무발전의 새로운 정황에 대하여 조정과 개정을 할 필요가 있었다.⁵⁾ 이러한 상황

4) 『我國電子銀行業務發展現狀』, 聖才學習網(2010년 10월 7일 방문), 제2면.

5) “銀監會發言人就電子銀行業務管理辦法等答問”, 銀監會사이트(2010년 10월 20일 방

에 비추어 전자은행업무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가급적이면 빨리 전자은행의 감독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상업은행의 전자은행업무발전경험을 총화한 기초위에서 기존의 금융법률제도와 결부하고 외국 관련기구의 전자은행업무에 대한 감독관리경험을 참조하여 2006년 1월 26일에 각각 “전자은행업무관리방법”과 “전자은행리스크방지지침”을 제정하여 공포하였다. 이로써 중국의 전자은행업무는 더욱 규범화되고 업무 관련 리스크가 방지될 수 있어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다. 그리하여 현재까지 급속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2. 전자은행업에 대한 현행 규제형식

현행 전자은행업에 대한 규제는 일반 상업은행업에 대하여 제정한 “상업은행법”이 적용되는 외에 주로 전자은행업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전자은행업무관리방법”과 “전자은행리스크방지지침”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1) 전자은행업무관리방법

당해 방법은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명의로 2006년 1월 26일 제정 및 공포되었으며,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당해 방법의 구조를 보면 총 9장 99조로 되어있다. 제1장 총칙에서는 전자은행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하여 명확히 정의하였고 전화은행, 온라인은행, 휴대폰은행 등을 일괄적으로 전자은행의 감독관리범위에 넣었다. 아울러 당해 방법의 적용범위 및 전자은행업무전개의 기본적인 원칙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제2장은 전자은행업무의 신청과 변경에 관한 내용인데 금융기관이 전자은행업무를 신청하는 것을 규정하였고 전자은행업

문), 제1-2면.

무의 종류에 대한 조건, 요구와 심사비준절차를 규정하였다. 제3장은 리스크관리에 대한 내용으로서 전자은행의 전략적 리스크, 명예리스크, 운영리스크, 법률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등에 대한 관리의 기본원칙과 방법을 규정하였고 전자은행리스크관리체계와 내부통제제도의 수립, 수권관리체제 등 요구를 명확히 하였다. 제4장은 데이터교환이전관리에 관한 내용인데 주로 전자은행 데이터이전의 조건과 관리방식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제5장은 업무외주의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서 전자은행업무의 외주 및 외주사를 선택하는 기본요구를 규정하였고 업무외주리스크에 대한 관리원칙을 규정하였다. 제6장은 국경간 업무활동에 대한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서 국경간 업무활동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국경간 업무활동을 전개하는 요구를 명확히 하였다. 제7장은 전자은행업무의 감독관리검사에 대한 내용으로서 전자은행업무의 일상적인 감독관리의 기본요구를 규정하였다. 제8장은 법적 책임이고 제9장은 부칙이다.

(2) 전자은행리스크방지지침

당해 지침도 “전자은행업무관리방법”과 마찬가지로 2006년 1월 26일에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명의로 제정 및 공포되었고 같은 해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당해 지침은 총 5장 57조로 되었다. 제1장은 총칙으로서 전자은행안전평가의 의의를 규정하였고 전자은행안전평가관리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다. 제2장은 안정평가기구에 관한 내용으로서 전자은행안전평가에 종사하는 기구의 종류, 조건 및 관련 자질인정에 대한 규정을 두었다. 제3장은 안정평가의 실시에 관한 내용으로서 전자은행안전평가가 응당 준수하여야 할 기본절차, 평가내용 및 평가방식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제4장은 안전평가활동에 대한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서 전자은행안전평가와 관련되는 기구를 설명하였고 전자은행안전평가과정에서 응당 준수하여야 할 요구를 설명하였다. 제5장

은 부칙으로서 당해 지침과 관련된 기타 문제에 대하여 해석과 설명을 하였다.

Ⅲ. 電子銀行業規制의 主要內容

1. 전자은행의 개념과 종류

(1) 전자은행업무의 개념

전자은행업무란 상업은행 등 은행업금융기구가 사회대중에 개방된 통신채널 또는 개방형 대중네트워크 및 은행이 특정셀프서비스시설 또는 고객을 위하여 수립한 전용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은행서비스를 말한다.⁶⁾

(2) 전자은행업무의 종류

전자은행업무에는 (i)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개하는 은행업무(이하 “온라인은행업무”라고 함), (ii) 전화 등 음성설비와 유선망을 이용하여 전개하는 은행업무(이하 “전화은행업무”라고 함), (iii) 이동전화와 무선망을 이용하여 전개하는 은행업무(이하 “휴대폰은행업무”라고 함), (iv) 그리고 기타 전자서비스설비와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고객이 셀프서비스방식으로 금융거래를 완성하는 은행업무가 포함된다.⁷⁾

2. 전자은행업무관리방법의 적용범위

(1) 규제대상 금융기구

“전자은행업무관리방법“에 따라 은행업금융기구와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금융기구관리조례“에 따라 설립한 외자금융기구는 “전자은행업무

6) “전자은행업무관리방법” 제2조 제1항.

7) “전자은행업무관리방법“ 제2조 제2항.

관리방법“에 따라 전자은행업무를 전개하여야 한다.⁸⁾

또한 중국 경내에 설립한 금융자산관리회사, 신탁투자회사, 재무회사, 금융리스회사 및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비준하여 설립한 기타 금융기구가 전자은행성격의 전자은행업무를 전개할 경우 “전자은행업무관리방법“상의 금융기관의 전자은행업무의 전개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⁹⁾

(2) 해당하는 업무지역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금융기관이 중국경내에서 전자은행업무를 진행하여 중국 경내의 기업, 주민 등 고객에 전자은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전자은행업무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라 국경간 전자은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¹⁰⁾ 국경간 전자은행업무란 전자은행업무를 진행하는 금융기관이 중국경내의 전자은행시스템을 지용하여 중국경외의 거주민 또는 기업에 전자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단, 금융기관의 중국경내의 고객이 중국경외에서 전자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국경간 업무활동에 속하지 않는다.¹¹⁾

3. 전자은행업무의 신청 및 변경

(1) 전자은행업무의 일반요건

- 1) 금융기관의 경영활동이 정상적이며 비교적 완전한 리스크관리체계와 내부통제제도를 수립하여야 하고 전자은행업무 신청전 1년 내에 금융기관의 주요정보시스템과 업무처리시스템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8) “전자은행업무관리방법“ 제3조 제1항.

9) “전자은행업무관리방법“ 제3조 제2항.

10) “전자은행업무관리방법“ 제4조.

11) “전자은행업무관리방법“ 제71조.

- 2) 전자은행업무의 총체적 발전전략, 발전계획과 전자은행안전책략을 제정하고 전자은행업무리스크관리의 조직체계와 제도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 3) 전자은행업무발전계획과 안전책략에 따라 전자은행업무운영의 기초시설과 시스템을 수립하고 아울러 관련 시설과 시스템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검측과 업무테스트를 진행하여야 한다.
- 4) 전자은행업무리스크관리정황과 업무운영시설 및 시스템 등에 대하여 감독관리에 부합되는 안전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 5) 명확한 전자은행관리부문을 건립하고 합격된 관리인원과 기술인원을 보유하여야 한다.
- 6)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기타 조건이다.¹²⁾

(2) 온라인은행업무와 휴대폰은행업무 등에 대한 특수요건

금융기관이 인터넷을 매개로 하는 온라인은행업무와 휴대폰은행업무 등 전자은행업무를 전개할 경우 위의 일반적인 요건외에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¹³⁾

- 1) 전자은행기초시설설비가 전자은행의 정상적인운행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 2) 전자은행시스템이 필요한 업무처리능력을 구비하고 고객의 적시 업무처리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 3) 효과적인 외부공격검측시스템을 건립하여야 한다.
- 4) 중국계 은행업금융기관의 전자은행업무운영시스템과 업무처리서버를 중국 경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 5) 외자금융기관의 전자은행업무운영시스템과 업무처리서버는 중국 경내 또는 경외에 설치할 수 있다. 단, 중국 경외에 설치할 경우

12) “전자은행업무관리방법“ 제9조.

13) “전자은행업무관리방법“ 제10조.

중국 경내에 업무거래데이터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시설설비를 설치하여 금융감독관리부문의 현장검사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하고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국 사법기관의 조사 및 증거취득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3) 외자금융기관이 전자은행업무를 전개하는 특수요건

외자금융기관이 전자은행업무를 진행할 시에는 위의 (1), (2)에서 정한 요건을 만족시키는 외에 별도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즉 법률, 행정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중국 경내에 영업성 기관을 설치하고 그가 소재한 국가(지역)의 감독관리당국이 전자은행업무에 대하여 감독관리를 진행하는 법률체계와 감독관리능력을 갖추어야 한다.¹⁴⁾

(4) 정부허가의 유형

금융기관이 전자은행업무의 전개를 신청할 경우 전자은행업무의 유형에 따라 각기 심사비준제와 보고제를 실시한다.¹⁵⁾

- 1) 인터넷 등 개방성 네트워크 또는 무선망을 이용하여 전개하는 전자은행업무(온라인은행, 휴대폰은행 및 PDF 등 개인데이터보조 설비를 이용하여 전개하는 전자은행업무를 포함함)에 대하여는 심사비준제를 적용한다.
- 2) 중국 경내 또는 지역성 통신망, 유선망 등을 이용하여 전개하는 전자은행업무에 대하여는 보고제를 적용한다.
- 3) 은행의 특정셀프서비스시설 또는 고객을 위하여 설립한 전용망을 이용하여 전개하는 전자은행업무에 대하여는 법률법규와 행정규장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규정에 따르며, 규정이 없을 경우 보고제를 적용한다.

14) “전자은행업무관리방법“ 제11조.

15) “전자은행업무관리방법“ 제12조.

단,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금융기관이 전자은행업무를 전개한 후 특정의 고객과 직접적으로 망을 연결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는 전자은행의 일상적 업무에 속하고 전자은행업무전개신청의 유형에 속하지 않는다.

(5) 전자은행업무신청의 절차

금융기관이 전자은행업무의 전개하려면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에 신청하거나 보고해야 하며¹⁶⁾ 심사비준형의 업무를 신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와 소통하여 신청하려는 전자은행업무시스템과 기초시설설계 및 건설방안, 그리고 기본업무운영방식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전자은행시스템에 대하여 사전테스트를 진행하여야 한다.¹⁷⁾

그리고 금융기관이 전자은행업무의 전개를 신청할 경우 하나의 신청 보고서에 여러 가지 유형의 전자은행업무를 신청할 수 있으며¹⁸⁾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신청자료를 받은 후 3개월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비준을 하지 않을 경우 응당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¹⁹⁾

(6) 전자은행업무의 추가 및 변경의 허가 및 절차

- 1) 금융기관은 업무발전의 수요에 따라 전자은행업무의 유형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경우 심사비준제 또는 보고제를 적용한다.²⁰⁾ 금융기관이 다음의 전자은행업무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경우 심사비준제를 실행한다. (i) 관련 법률법규와 행정규장의 규정에 따라 심사

16) “전자은행업무관리방법“ 제8조.
17) “전자은행업무관리방법“ 제13조.
18) “전자은행업무관리방법“ 제14조.
19) “전자은행업무관리방법“ 제17조.
20) “전자은행업무관리방법“ 제21조.

비준을 받아야 하나 금융기관이 아직 비준신청을 하지 않았고 또한 이를 이용하여 전자은행을 개설할 경우; (ii) 금융기관이 이미 비준을 받은 업무를 전자은행에 이용할 경우 증권업, 보험업 관련 기구과 직접적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교환해야 실시가능할 경우; (iii) 금융기관간에 상호 연결된 전자은행시설을 이용하여 연합으로 전개할 경우; (iv) 국경간 전자은행서비스를 제공할 경우.²¹⁾

2) 전자은행업무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경우 업무활동이 제한이 받지 않는 은행의 경우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에 신청하고 지역적인 금융기관의 경우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파견기구에 신청하며 외자금융기관의 경우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²²⁾

4. 전자은행업무의 리스크관리

(1) 리스크관리체계의 수립

1) 금융기관은 전자은행업무리스크관리를 본 기관의 리스크관리의 총체적인 체계에 포함시키고 전자은행의 운영특징에 따라 전자은행리스크관리체계와 전자은행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²³⁾

2) 금융기관의 전자은행리스크관리체계와 내부통제체계는 응당 명확한 관리체계, 완전한 규장제도 및 엄격한 내부수권메카니즘을 구비하고 전자은행업무가 직면한 전략적 리스크, 운영리스크, 법률리스크, 명예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등에 대하여 효과적인 식별, 평가, 검측 및 통제를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²⁴⁾

21) “전자은행업무관리방법“ 제22조.

22) “전자은행업무관리방법“ 제24조.

23) “전자은행업무관리방법“ 제31조.

24) “전자은행업무관리방법“ 제32조.

- 3) 금융기관이 전통업무에 대하여 제정한 주의성 리스크관리의 원칙과 조치 등은 전자은행업무에 적용되지만 응당 전자은행업무환경과 운행방식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리스크관리제도, 규칙 및 절차에 대하여 필요하고 적당한 수정을 가해야 한다.²⁵⁾

(2) 안전검사체계의 수립

- 1) 금융기관은 전자은행의 시스템, 위험시설, 정보 및 기타 자원의 중요성 및 그것이 전자은행안전에 대한 영향에 대하여 평가를 하고 적당한 안전책략을 제정하고 리스크통제절차와 안정운영규정을 수립하고 건전히 하며 상응하는 안전관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각종 안전통제조치에 대하여 응당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검토했으며 아울러 실제정황에 근거하여 적시에 조정하고 안전조치의 계속 유효성과 적시의 갱신을 보장하여야 한다.²⁶⁾
- 2) 금융기관은 응당 전자은행의 운영시설설비를 보장하고 안전통제 시설설비의 운영을 안전하게 통제하고 전자은행의 중요한 시설설비와 데이터에 대하여 적당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²⁷⁾
- 3) 금융기관은 정당한 비밀조치를 취하여 전자거래데이터전송의 안전성과 비밀성을 보증하고 전송하는 거래데이터의 완전성, 진실성 및 불가부인성을 보증하여야 한다.²⁸⁾
- 4) 정기적으로 관련 설비와 시스템에 대하여 검사하고 아울러 검사정황을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²⁹⁾

25) “전자은행업무관리방법“ 제33조.

26) “전자은행업무관리방법“ 제36조.

27) “전자은행업무관리방법“ 제37조.

28) “전자은행업무관리방법“ 제38조.

29) “전자은행업무관리방법“ 제48조.

5. 데이터의 교환 및 이전의 관리

(1) 데이터 교환 및 이전의 의의

전자은행업무의 데이터의 교환 및 이전이란 금융기관이 업무발전과 관리의 수요에 근거하여 전자은행시설을 이용하여 외부의 조직 또는 기관과 상호 전자은행업무정보와 데이터를 교환하거나 전자은행 관련 업무데이터를 외부조직 또는 기관에 이전하는 활동을 말한다.³⁰⁾

(2) 데이터 교환 및 이전에 대한 요구

- 1) 금융기관은 업무발전의 수요에 근거하여 기타 전자은행업무를 전개하는 금융기관과 전자은행시스템데이터교환체제를 수립하고 전자은행업무시설의 직접적인 연결을 실현하고 중국 경내에서 실시간 정보교환과 은행간 자금이전을 진행하여야 한다.³¹⁾
- 2) 금융기관은 업무발전의 수요 또는 관리의 수요에 근거하여 비은행금융기관과 직접적으로 일부 전자은행업무데이터를 교환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금융기관은 비은행금융기관과 전자은행데이터를 교환하거나 이전할 경우 응당 데이터교환(또는 이전)용도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리직책을 명확히 하는 서면합의서를 체결하고 아울러 각 측의 데이터의 비밀유지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³²⁾

6. 전자은행업무의 외주에 대한 관리

(1) 전자은행업무 외주의 의의

전자은행업무의 외주란 금융기관이 전자은행 일부 시스템의 개발, 건설, 그리고 전자은행업무의 일부 서비스와 기술지원, 전자은행시스

30) “전자은행업무관리방법“ 제54조.

31) “전자은행업무관리방법“ 제55조.

32) “전자은행업무관리방법“ 제57조.

템의 유지 등 전문화정도가 비교적 높은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임하여 책임지게 하는 활동을 말한다.³³⁾

(2) 전자은행업무 외주에 대한 요구

- 1) 금융기관은 전자은행업무의 외주시에 응당 실제수요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외주의 원칙과 범위를 확정하고 업무외주에 존재하는 위험에 대하여 분석하고 평가하여 관련 규장제도를 건전히 하고 상응하는 리스크방지조치를 제정하여야 한다.³⁴⁾
- 2) 금융기관은 전자은행업무외주서비스공급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응당 업체의 경영상황, 재무상황 및 실제리스크통제와 책임부담능력을 충분히 심사하고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실사를 하여야 한다.³⁵⁾

7. 국경간 업무활동에 대한 관리

(1) 전자은행의 국경간 업무활동의 의의

전자은행의 국경간 업무활동이란 전자은행업무를 전개하는 금융기관이 중국 경내의 전자은행시스템을 이용하여 중국 경외의 거주민 또는 기업에 전자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금융기관의 중국 경내 고객이 중국 경외에서 전자은행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은 국제업무에 속하지 않는다.³⁶⁾

(2) 전자은행의 국경간 업무활동에 대한 요구

- 1) 금융기관은 국경간 전자은행업무를 제공할 경우 중국의 법률, 법규 및 외환관리정책 등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또한 중국 경외

33) “전자은행업무관리방법“ 제62조.

34) “전자은행업무관리방법“ 제63조.

35) “전자은행업무관리방법“ 제64조.

36) “전자은행업무관리방법“ 제71조.

거주민 국가(지역)의 법률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중국 경외의 전자은행의 감독관리부문이 국경간 전자은행업무에 대하여 심사비준을 요구할 경우 금융기관은 국제업무활동을 제공하기전에 응당 중국 경외 전자은행에 대한 감독관리부문의 비준을 얻어야 한다.³⁷⁾

2) 금융기관은 국경간 전자은행업무를 수행할 시 응당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에 신청함과 아울러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에 다음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여야 한다.³⁸⁾

- (i) 국경간 전자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지역) 및 당해 국가(지역)의 전자은행업무관리에 대한 법률규정;
- (ii) 국경간 전자은행업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대상 및 서비스 내용;
- (iii) 향후 3년 국경간 전자은행업무발전의 규모, 고객규모에 대한 분석예측;
- (iv) 국경간 전자은행업무의 법률 및 준법성에 대한 분석.

3)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국경간 전자은행서비스를 제공할 시 반드시 관련 서비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금융기관과 고객의 서비스계약문본은 응당 중문과 고객소재지의 국가 또는 지역(또는 고객이 동의하는 기타 언어)언어 두가지 문자로 작성하고 두가지 문자는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³⁹⁾

8. 전자은행업무에 대한 감독관리

(1)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법에 따라 전자은행업무에 대하여 비현장감독, 현장검사 및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전자은행안전평가

37) “전자은행업무관리방법“ 제72조.

38) “전자은행업무관리방법“ 제73조.

39) “전자은행업무관리방법“ 제74조.

에 대한 관리를 실시하며 아울러 전자은행의 업종자율조직에 대하여 지도와 감독을 진행한다.⁴⁰⁾

(2) 전자은행업무를 전개하는 금융기관은 응당 전자은행업무통계체계를 수립하고 아울러 관련 규정에 따라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에 통계데이터를 보고하여야 한다.⁴¹⁾

(3) 금융기관은 응당 정기적으로 전자은행업무의 발전 및 관리정황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하고 아울러 응당 매년 “전자은행연도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⁴²⁾

(4) 금융기관은 응당 전자은행업무의 중대한 안전사고와 위험사건에 대한 보고제도를 수립하고 아울러 감독관리기관과 경상적인 소통을 하여야 한다.⁴³⁾

(5)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감독관리의 수요에 따라 법에 근거하여 금융기관의 전자은행업무에 대하여 현장검사를 실행하고 외부전문기관을 초빙하여 전자은행업무시스템에 대하여 안전누수, 공격검측 등 검사를 하여야 한다.⁴⁴⁾

(6) 전자은행안전평가는 금융기관이 전자은행업무를 개설하고 지속적으로 경영하는 필요한 조건으로서 금융기관의 전자은행업무리스크관리 및 감독의 중요한 수단이다. 금융기관은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전자은행시스템에 대하여 안전평가를 하고 아울러 이를 전자은행리스크관리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40) “전자은행업무관리방법“ 제75조.

41) “전자은행업무관리방법“ 제76조 제1항.

42) “전자은행업무관리방법“ 제77조.

43) “전자은행업무관리방법“ 제80조.

44) “전자은행업무관리방법“ 제81조.

하여야 한다.⁴⁵⁾ 금융기관의 전자은행업무에 대한 안전평가는 응당 일정한 자질에 부합되고 상응하는 평가능력을 구비한 평가기구에서 실행하여야 한다.⁴⁶⁾

9. 전자은행에 대한 안전평가

(1) 전자은행 안전평가의 의의

전자은행의 안전평가란 금융기관이 전자은행업무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전자은행의 안전책략, 내부통제제도, 리스크관리, 시스템안전, 고객보호 등에 대하여 진행하는 안전검사와 관리통제능력에 대한 고찰과 평가를 말한다.⁴⁷⁾

(2) 전자은행의 안전평가기구

금융기관의 전자은행에 대하여 안전평가를 진행하는 기구는 금융기관 외부의 사회전문기구도 될 수 있고 금융기관내부의 상응하는 조건을 구비한 상대적으로 독립된 부문도 될 수 있다.⁴⁸⁾ 전자은행의 안전평가기구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⁴⁹⁾

(3) 전자은행 안전평가의 실행 및 관리

전자은행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은 적어도 2년에 한번씩 전면적인 안전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⁵⁰⁾ “전자은행안전평가지침“에는 전자

45) “전자은행업무관리방법“ 제85조.

46) “전자은행업무관리방법“ 제86조.

47) “전자은행안전평가지침“ 제2조.

48) “전자은행안전평가지침“ 제7조.

49) “전자은행안전평가지침“ 제8-9조.

50) “전자은행안전평가지침“ 제3조.

은행안전평가를 실행할 시의 요구사항 및 이에 대한 관리요구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⁵¹⁾

IV. 電子銀行業에 대한 規制의 特色과 向後의 改善課題

1. 전자은행업에 대한 규제의 특색

(1)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려는 노력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에서 “전자은행업무관리방법”과 “전자은행안전평가지침”을 제정할 시 바젤위원회의 “전자은행업무리스크관리 원칙”을 비롯한 대량의 국제기구의 규정 및 주요국의 규정을 참조하여 전자은행의 감독관리방식, 정보기술기준, 감독관리의 원칙 등 면에서 기본적으로 국제기준을 도입하였다.

(2) 전자은행의 업무범위를 확대

기존의 “온라인은행업무감정관리방법”에 비하여 “전자은행업무관리방법”은 전자은행업무에 대하여 포괄적인 규정을 둠으로써 전자은행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온라인은행에서 전화은행, 휴대폰은행, 기타 전자서비스설비와 네트워크를 이용한 서비스까지 확대하였다.

(3) 국제적 전자은행업무에 대하여도 규정

“전자은행업무관리방법”은 중국경내에서 진행되는 전자은행업 뿐만 아니라 중국 경외에서 진행하는 전자은행업무에 대하여도 규정을 하였다. 따라서 중국계 은행이 해외에서 전자은행업무를 제공할 때 필요한 근거가 있게 되었다.

51) “전자은행안전평가지침” 제25-55조.

(4) 전자은행업무의 신청에 대한 이원화규정

전자은행업무의 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은행업무관리규정”은 이원화된 규정을 두어 일부 리스크가 비교적 큰 업무의 경우 심사비준제를 실행하고 리스크가 비교적 작은 업무의 경우 보고제를 실행하도록 하였다.

(5) 전자은행업무에 대한 리스크방지에 치중

“전자은행업무관리방법”은 전자은행업무를 전개함에 있어서의 리스크방지에 치중하여 필요한 리스크방지체계의 수립 및 내부통제제도의 수립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었고 이러한 제도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감독기관의 감독관리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었다.

(6) “전자은행업무관리방법”과 “전자은행안전평가지침”을 동시에 제정·공포

전자은행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전자은행업무관리방법”과 “전자은행안전평가지침”을 동시에 제정 및 공포하였다. 이로써 전자은행의 리스크방지와 안전한 운영이 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겠다.

2. 전자은행업에 대한 규제의 향후 개선과제

(1) 입법형식의 개선

현행 규제는 주로 “전자은행업무관리방법”과 “전자은행안전평가지침”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 두가지 규정은 입법의 형식상 중앙부처의 規章, 즉 부령에 해당하는 입법형식으로서 그 효력차원이 대단히 낮다고 할 수 있어 법집행의 효과성에 직접한 영향을 준다고 하겠다. 따라서 전문적인 법률을 제정하거나 적어도 행정법규로 전자은행업무에 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2) 국제적인 기준과의 정합성 강화

현행 규제내용이 적지 않은 면에서 국제적인 기준을 도입하였지만 아직도 적지 않는 면에서 국제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국제적인 기준과의 정합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

(3) 정부인허가기준의 완화

비록 “전자은행업무관리방법”에서 정부인허가와 관련하여 이원화된 방식을 도입하여 일부 업무는 심사비준제를 실행하고 일부 업무의 경우 보고제를 실행하고 있지만 전자은행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기존의 심사비준제에 대하여 더욱 완화할 필요가 있다.

(4) 전자금융 관련 기타 제도를 도입할 필요

현재 전자은행업무 외에도 전자화폐 등 전자금융 관련 기타 제도도 도입하여 전자금융제도의 체계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전자금융거래법”이라는 명의를 전자금융에 관한 포괄적인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V. 結 論

이상으로 중국의 전자은행 관련 제도를 살펴보았다. 중국은 2006년에 전자은행업무의 신속한 발전에 힘입어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명의로 “전자은행업무관리방법”과 “전자은행안전평가지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기존의 제도와 비교하여 볼때 새로운 제도는 전자은행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를 두고 국제적인 기준을 많이 도입하는 등 전

자은행업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시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직 입법의 형식상 그 차원이 많이 떨어져 법집행의 효과성이 영향을 받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외국의 선진적인 입법례를 참조하고 중국의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제 5 주 제

우리나라 금융시장 개방과 FTA

현 대 호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제 1 절 국내 금융산업의 개방현황

1. 의 의

우리나라 금융산업도 개방을 통하여 빠른 발전을 이루어왔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선진국 수준의 자본자유화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금융시장 개방을 추진하여 왔으며, 1996년 OECD 가입과 1998년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금융서비스 산업은 다른 서비스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개방이 이루어져 외환자유화를 포함한 자본자유화 수준도 크게 높아진 상태이다. OECD의 자본자유화 평가에 따르면 완전자유화를 100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자본자유화 수준이 85.1%이며 일본, 독일, 영국 등의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금융개방의 공과를 현재 시점에서 평가해본다면, 그 동안 개방이 활발히 이루어진 부문에서의 성과가 다른 부문보다 높았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그 동안 국내금융시장은 다른 여타 서비스시장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은행권은 2005년-06에 걸쳐 사상 최대의 이익을 실현하고 있으며 주식시장은 사상최고치를 지속적으로 경신하고 있다. 국내보험시장의 규모도 이미 세계 7위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 단적인 예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취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산업

은 아직까지 글로벌 스탠다드와 선진금융시스템 구축 등에 있어서는 여전히 뒤쳐진 상태이다. 따라서 현재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FTA 협상, 특히 금융서비스협상은 국내 금융부문의 선진금융시스템 구축을 가속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 금융서비스 개방경과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외국인 해외직접투자 및 포트폴리오 투자 확대와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점진적이 금융서비스 부문의 개방을 진행하여왔다. 1983년에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자유치법을 개정하였으며, 1984년 Korea Fund를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을 계기로 외국인의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간접투자 활성화의 기초를 다지게 되었다. 1996년 OECD 가입 이후에는 해외직접투자 관련 규제를 OECD 수준에 맞게 완화하였고,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국내의 부족한 외환을 확충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증권투자에 대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철폐하였다.

우리나라는 해외수출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수출에 따른 외화의 유입이 크게 이루어진 반면에 폐쇄적인 자본시장구조로 인하여 금융부문의 발전이 실물부문에 비해 크게 뒤처지게 되었다. 금융산업 선진화를 위하여 1985년 국내증권회사의 해외자산취득, 1987년 외국환취급은행 해외은행업 진출 허용과 같은 점진적인 자본시장 개방을 추진하였으나,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하여 IMF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단기간에 전면적인 자본자유화 조치를 단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7년에는 외국환 취급은행의 파생상품 거래를 전면 허용하였으며 외환위기로 부실해진 국내은행들의 회생을 위하여 외국자본의 국내 산업은행 소유권 규제를 완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가입협상과 1997년 IMF 긴급자금지원협상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금융서비스 산업의 대외개방이 선

진국 수준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의 주식 및 채권투자는 전면 자유화되었으며, 은행, 증권 부문의 현지법인 설립 허용 등 금융서비스기업의 법적 형태에 대한 규제는 대부분 철폐되었다. 또한 1999년 1월에는 금융서비스 모드 2(mode 2)가 ‘해외소비’가 증권업 및 해상보험업에 대하여 허용되었으며, 해상보험업의 경우에는 금융서비스 모드1(mode 1)인 ‘국경간 서비스공급’까지 허용되었다. 이와 더불어 은행업무중 선물환 외환매매시 실수요원칙 및 실수요 증명요건 적용과 같은 은행의 외환업무에 대한 각종 규제도 제1단계 외환자유화 조치로 폐지되었다. 이밖에 신용정보평가업, 투자자문업 등도 국경간거래가 허용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금융산업 배강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예금 및 대출관련 업무,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보험중개업 등의 경우 국경간 공급이나 해외소비 형태로는 공급될 수 없는 등 아직 몇 가지 제한요소가 남아 있는 실정이다.

3. 금융산업별 개방현황

(1) 은행산업

은행산업을 살펴보면 1950년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설립이 허용되면서 국내 은행산업의 외국은행 진출이 법적으로 가능해졌으며 1967년 시티은행이 최초로 국내에 지점을 설립하면서 실질적인 외국 금융회사의 진출이 시작되었다. 1980년대까지는 외국은행의 국내진출이 극히 제한적이었으나 1990년대이후 점진적으로 허용되기 시작하였다. 1997년에는 세계 500대 은행에 한하여 국내 지점설치가 허용되던 규제를 폐지하고 1998년 현지법인 설립이 허용되면서 외국은행의 국내은행산업 진출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완전히 폐지되었다.

외국인에 대한 지분소유제도도 철폐되어 시중은행 지분의 50%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외환은행, 제일은행, 한미은행은 외국계 자본에 의하여 인수·합병(외국인 최대주주)되었다. 2005년말 현재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총자산 비중은 우리나라 은행산업 전체 자산총액 대비 11.6%에 그치고 있지만, 외국계 은행전체(외국은행 국내지점, 외국인 최대주주)의 국내 은행산업의 29.6%에 달하고 있다.

(2) 증권산업

증권산업은 외국증권사 진출은 1991년 10월 JP Morgan이 국내에 지점을 설립하면서 시작되었다. 1990년대 중반이후 외국인에 대한 제한조치가 점진적으로 철폐되었으며, 예컨대, 1995년 외국증권사 국내지점의 최소영업기준이 축소되었고, 복수지점 설치가 허용되었으며 CD(Certificate of Deposit) 매매 및 중개업무 등도 할 수 있게 되었다. 1997년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 증권회사에 대한 지분참여비율 제한이 폐지되었으며, 1998년에는 현지법인이 설립되면서 대부분의 제한조치가 철폐되었다.

외국계 증권회사의 국내진출을 살펴보면, 2005년말 현재 4개의 외국계 증권회사의 현지법인과 15개 외국증권사 국내지점이 국내에 진출해 있다. 이들 외국계 증권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을 보면, 2005년 유가증권거래실적은 762조원으로 전체 유가증권거래의 7.7% 수준이며 수탁수수료 수입은 5,870억원으로써 전체 시장의 15.9%를 차지하고 있다.

(3) 보험산업

국내보험업에 대한 시장개방을 살펴보면, 손해보험업의 경우 1945년 법적으로 지점 설립이 허용되었으나, 생명보험업은 1987년 외국회사의 지점, 현지법인, 합작법인 설립이 허용되면서 국내에 진출하게 되었다. 1995년에는 수입적하보험, 항공보험에 대한 국경간공급(mode 1)이 허

용되었고 1996년에는 외국인의 국내생명보험사에 대한 49% 지분소유 제한을 폐지하였다. 또한 1997년 1월에는 생명보험업의 국경간 공급 서비스가 허용되었다. 손해보험업도 외국인의 현지법인 및 합작법인 설립이 허용되었고 장기상해 및 여행선박보험 부문에 국경간 공급이 허용되었다. 1999년에는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사부소 설치에 대한 허가제가 폐지되었고 외국보험사업자가 본국에서 보험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규제와 국내보험회사와 합작법인 설립이 금지되는 규제이외의 별도의 소유제한은 폐지되었다.

외국계생명보험회사의 보유계약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말 현재 외국계 생보사 시장점유율은 18.0%로서 2001년 8.6% 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보장성보험의 경우 209조원으로 국내생보사의 22.5%를 차지하고 있고, 저축성 보험은 19.1% 정도이다. 변액보험의 경우에는 국내생보사의 보유계약고는 외국계의 3배 수준에 그쳐 보장성보험이나 저축성 보험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바, 이는 변액보험이 상대적으로 신금융상품에 속해 외국계생보사의 경쟁력이 우위에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4) 투자 신탁업

투자신탁업의 개방은 1996년 12월 투자신탁업 지점설치 및 외국인 지분 50% 미만의 합작법인 신설이 허용되면서 시작되었다. 1997년 1월 외국투신사의 국내사무소 설치에 대한 허가제가 신고제로 전환되었고 동년 12월에는 기존 투신사의 외국인의 지분참여제한제도가 폐지되었다. 또한 1998년에는 현지법인 설립 및 외국인에 대한 50% 이상 합작법인 설립이 허용되었다. 이에 따라 상업적 주재(MODE 3)와 관련한 제한조치는 거의 폐지되었고 mode 1과 mode 2인 국경간 거래와 해외소비만 미개방상태로 남아 있다.

4.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은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금융시장의 변화와 금융 하부구조의 변화 및 규제, 감독 등의 변화로 금융회사의 경쟁력은 크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국내 금융회사의 경쟁력은 선진 금융회사에 비해 뒤떨어져 있고 영업범위도 국내시장에 국한되어 있어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많은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인수·합병 등의 구조조정으로 급속한 대형화가 추진되었으나 규모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크게 미달되고 있다. 대형화에 대한 과점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나 대형화·겸업화를 통한 선도 금융회사의 업무영역 확대 등과 같은 금융회사의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보았을 때, 국내 금융회사에 대형화 수준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상위 4개 은행의 2005년 기준 평균 총자산규모는 1,392억 달러로 2004년 미국, 일본의 13.3%, 14.3%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직원 1인당 자산규모도 대규모 인원감축, 인수·합병 등으로 크게 증가하여 2005년 기준 1,110만 달러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미국(550만달러), 영국(920만 달러)에 비해서는 앞서 있으나 일본(4,150만달러), 독일(2,390만 달러)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미국, 영국의 경우에는 투자은행 관련 비중이 높아 1인당 자산규모가 적을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우리나라 은행의 대형화는 선진금융회사에 비해 열세라고 할 수 있다.

겸업화 측면에서 살펴보더라도 국내 금융회사는 선진 금융회사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은행산업의 경우, 은행업에서 겸업 및 부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수산업무에 치중하고 있고 증권산업의 경우에는 위탁매매에 편중된 결과 IB(Investment Banking)나 PB(Private Banking) 등의 기타 사업영역에서의 경

쟁력이 뒤쳐지고 있다. 이는 금융회사들이 비슷한 금융상품을 공급함으로써 그들간의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수익성 측면에서 보았을 때도 전반적으로 국내 금융회사의 수익성은 선진금융회사에 비해 뒤떨어져 있다. 은행산업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지속적인 경영혁신으로 건전성과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었지만, 선진국 은행에 비교해 볼 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내 상위 4대은행의 자산수익률은 2005년 기준 평균 1.07%로서 2004년 미국의 1.65%에 비교해 볼 때 큰 차이가 있다. 세전 수익 규모를 비교할 때도 미국의 12.1%, 영국의 15.5%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증권산업의 경우 2005년 기준 우리나라 증권회사 평균 자기자본이익률은 16.6%이고 평균당기 순이익은 4천 9백만달러로 이는 2005년 주식시장 호황에 따른 일시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상위 3개사의 평균 당기 순이익은 2004년 미국 골드만 삭스의 7.0%, 일본 노무라증권의 30.8%에 그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내 증권회사의 수익성 및 대형화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져 있다.

이와 같은 대형화, 겸업화의 미흡으로 인한 낮은 수익성은 국내 금융회사의 경영형태를 안정성 위주로 영위하도록 만들고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1997년 외환위기를 통하여 위협에 대한 기피현상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경쟁력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수익성 개선 및 리스크관리시스템의 선진화가 지연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차별화된 서비스제공을 위해 경쟁이 활발해져 져야 한다.

제 2 절 우리나라 FTA 금융서비스협상의 주요 내용

1. 금융서비스 개방방식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부터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선진국 수준의 자본자유화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금융시장 개방을 추진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금융서비스산업은 여타 서비스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개방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다. 지역무역협정에서의 금융 서비스 개방방식은 자유화 기재방식에 따라 크게 서비스교역에 대한 일반협정(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개방방식(이하 GATS 개방방식)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개방방식(이하 NAFTA 개방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GATS 개방방식은 서비스의 네 가지 공급형태를¹⁾ 규정하고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와 시장접근(market access), 최혜국대우(MFN;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를 약속할 분야를 기재하는 열거주의방식(positive list approach)을 취하는 반면, 자유화대상 분야에서는 제한조치만을 기재하는 포괄주의방식(negative system)을 취하는 이른바 ‘업종개방은 열거주의방식, 개방된 업종에 대한 규제는 포괄주의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에 NAFTA 개방방식은 국경간 거래(cross-border trade; modes 1,2,4)와²⁾ 상업적 주재(mode 3) 관련규정을 별도로 두고, 부속서에 유보나 비합치조치(non-conforming measures)가³⁾ 명기되지 않으면 개방을

1) 1) GATS는 서비스의 공급형태를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① 국경간 공급(Mode 1: cross-border supply): 일국의 영역에서 타국의 영역으로의 서비스의 공급(예: 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는 원격교육, 원격진료 등)

② 해외소비(Mode 2: consumption abroad): 소비자와 그의 재산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 다른 회원국의 영역으로 이동함을 말한다.(예: 관광, 해외유학, 선박수리, 항공기 정비 등)

③ 상업적 주재(Mode 3: commercial presence): 일국의 서비스공급자가 서비스공급을 위해 자회사나 지사의 설립 등을 통해 타국의 영도에 주재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본이동을 수반(예: 은행지점, 대학분교 등)

④ 자연인의 주재(Mode 4: presence of natural persons): 서비스공급을 위해 자연인이 일국에서 타국으로 이동하여 서비스를 공급함을 의미(예: 자회사 임원, 회계사 등)

2) 국경간 금융서비스는 일국의 금융회사가 타국에 거주하는 금융소비자에게 지점 및 자회사없이 공급하는 금융서비스로 정의된다.

3) 비합치조치란 내국민대우, 시장접근, 상업적 주재, 이행요건,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국적요건 등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 규정에 의해 부과되고 있는 의무와 합치하지 않는 조치를 말한다. 이는 현행유보(reservation for existing NCM)와 미래유보(reservation for future measures)로 구분된다. 현행유보란 부속서에 별도로 유보하되 기존 조치를 유지하는 방식으로서 서비스협정상의 의무에 불일치하는 현존하는 정부조치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포괄주의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업종개방 및 규제가 포괄주의방식이며 협정체결 후에 추가적인 자유화조치가 자동적으로 협정에 반영되는 톱니바퀴방식(ratchet mechanism)이⁴⁾ 적용된다.

국내 금융규제 및 법률체계가 열거주의방식으로 되어있는 상황에서는 NAFTA 금융서비스 개방방식의 선택은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할 수 있다.⁵⁾ 따라서 우리나라는 싱가포르 및 EFTA(유럽자유무역연합)와의 FTA와 같은 기존의 FTA 협정에서는 GATS 개방방식을 채택하여 왔으며,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한-캐나다 FTA 협상에서는 캐나다측이 우리에게 NAFTA 방식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금융서비스 개방방식과 관련하여 한·미 FTA 금융협상에서는 기존 FTA와의 형평성 유지와 현행 금융법제가 열거주의방식인 점 등을 감안하여 GATS 방식을 유지하는 것으로 타결된 바 있다. 또한 미국이 기존에 체결한 기존의 미국-호주간 및 미국-싱가포르간 FTA에서도 '상업적 주제는 포괄주의(negative)방식, 국경간 거래는 열거주의(po-

를 의미하며 장래에는 현존하는 것보다 더 규제적인 방향으로 개정이 불가능(stand-still 원칙 적용)하다. 미래유보란 새롭게 추가적인 제한조치를 도입하기 위한 유보로서 서비스협정상의 의무가 배제되는 분야를 의미하며 현행보다 더 규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

- 4) 우리나라가 체결한 한-싱가포르 및 한-EFTA FTA에서는 향후 추가적인 자유화조치가 자동적으로 협정에 반영되는 방식이 아닌 향후 협상권만을 부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5) 한·미 FTA 협정에서 금융서비스부문에서 포괄주의(negative)방식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미국의 금융회사들은 동 협정과 국내 금융업법을 동시에 적용받는 반면에 기타 국가들 및 국내 금융회사들은 국내 금융업법만 적용을 받는 감독적용의 이원화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금융회사들이 국적에 따라 차별적 금융규제가 적용되는 경우 감독정책에 대한 신뢰성과 실효성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비협상국과의 통상마찰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규제는 국내의 동등대우를 원칙으로 하는 상황에서 국민경제측면을 감안하여 부과되는 경제적 규제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국내의 국가간 경쟁조건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감독당국의 입장에서 감독이원화에 따른 비용발생이 불가피하므로 특정국가에 대한 차별대우는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sitive)방식'을 취하는 혼합방식(hybrid approach)을 채택하고 있는 점을 십분 활용하여 同 방식의 채택을 관철시킨 상태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금융상품에 대해 열거주의 규제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등 규제가 상대적으로 많아 금융상품이 다양하게 발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동북아 금융허브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금융시장의 발전과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점진적인 포괄주의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국내 감독시스템과 금융법제가 충분히 선진화된 이후 포괄주의방식으로의 이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우리나라의 FTA 진행현황

전세계적으로 FTA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와 WTO의 DDA(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과 같은 다자간 협상이 동시에 활발히 진행되는 등 국제통상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시장개방과 협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아가 필요가 증대되고 있다. 특히 FTA는 2003년 9월 칸쿤 WTO 각료회의 합의도출 실패이후에는 많은 국가들의 양자간 지역협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세계적인 FTA 체결 경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전세계적인 FTA 확산에 따른 역외국가로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세계통상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외교역 규모가 GDP대비 80%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전세계적인 FTA 체결 흐름에 뒤처지게 될 경우 기존의 수출시장을 유지하기 어려워 질 수 있다.

제 3 절 한·미 FTA와 국내금융산업

1. 미국의 금융분야에서 FTA 체결전략과 우리나라와의 협상과정

미국은 달러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이점을 살려 80년대 중반이후 지식서비스 산업중심으로 산업구조조정을 거치며 자본 스스로가 급속도로 금융화 되었고, 전세계적인 금융세계화 전략의 일환으로 자본(금융)자유화를 주도해왔다. 미국의 금융산업은 미국이 해외로부터 벌어들이는 총수익의 25% 이상, 민간서비스부문 수출수익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등 미국에서 가장 특화되고 전문화되어 있는 산업으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한미 FTA 협상은 결국 미국 금융자본이 주도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는 견해도 있다.

금융세계화가 지향하는 목표는 전 세계적 차원에서 금융국경을 제거하여 자본의 이동과 활동에 대한 완전한 자유를 획득하고, 자본(투자자)에 대한 최대한의 보호(투자 및 자본회수의 안전판 확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본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배력을 확장시키는데 있다. 결국 미국 금융자본의 입장에서 한·미 FTA 협상 중 최우선적으로 관철시켜야 할 과제는 투자부문과 금융서비스 부문이었다고 평가된다.

- 투자부문 : 투자정의의 광범위성,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투자투자자-국가 소송제, 수용과 보상, 레킷시스템 등
- 금융부문 : 영미식 금융시스템 도입(겸업화, 네거티브 규제 환경으로 전환), 금융감독의 투명성 제고(사전적 규제에서 사후적 규제로 전환), 미 금융자본이 정통한 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사전승인 폐지 등

2. 주요 타결내용

(1) 적용대상 금융거래 유형

한·미 FTA가 2007년 4월 2일 타결되었고 5월에는 협정문도 공개되었다. 한·미 FTA 금융서비스 부문의 협정 조문은 예상했던 대로 미국이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FTA 금융협정문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부속서에서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에 따른 예외항목들을 상당수 찾아 볼 수 있다. 한·미 FTA 금융협상에 따라 우리나라 금융부문에 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살펴보고 그 영향을 평가해보기로 한다.

한·미 FTA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FTA의 대상이 되는 금융 개방의 유형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에 의하면 금융개방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의 유형은 4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Mode 1은 ‘국경간 거래’로서 소비자가 국내에 있고 서비스 공급자가 외국에 있는 유형을 말한다. 둘째 mode 2는 ‘해외소비’로서 국내소비자가 외국에 가서 외국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유형이다. 셋째 mode 3은 ‘상업적 주재’로서 외국의 금융회사가 국내에 현지법인이나 지점의 형태로 진입해서 국내의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형태이다. 넷째 mode 4는 ‘자연인의 이동’으로서 외국의 회계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가 자연인의 자격으로 국내에 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 4가지 유형 중에서 현재 mode 3 즉 상업적 주재는 대부분 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미 FTA를 통해 추가적으로 개방할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상업적 주재와 관련하여서도 요구들이 있을 수 있는 바, 미국계 금융회사들을 국내에서 차별하지 않고 공정경쟁이 가능하게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들의 영업편의에 도움이 되도록 규제환경을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등이다. mode 2 즉 해외소비

는 국내소비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자신의 위험부담하에 미국에 가서 거래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금지할 필요도 없고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한 것도 많아서 큰 쟁점은 없다. mode 4 자연인의 이동 역시 상업적 주재가 허용된 상황에서 시장을 교란할 만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mode 1 국경간 거래는 허용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국내 금융부문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만약 예금의 국경간 거래가 허용되어 국내소비자가 인터넷이나 전화, 팩스를 통하여 미국에 소재하는 은행에 예금할 수 있게 된다면 국내 예금시장에는 큰 혼란이 올 수 있다. 따라서 FTA에서 국경간 거래에 관한 부분은 보통 개방할 분야를 하나 하나 열거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한·미 FTA도 예외는 아니다. 다시 말해서 한·미 FTA 금융협상에 따른 개방의 확대 정도는 국경간 거래를 얼마만큼 허용하느냐 그리고 상업적 주재와 관련하여 규제나 업무상 편의에 관한 요구를 수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2) 국경간 거래의 추가개방

국경간 금융서비스(cross-border supply of financial services)란 일국에 위치한 금융회사가 타국에 거주하는 소비자에게 지점이나 자회사 형태의 상업적 주재없이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선전(solicitation)을 하고 공급하는 금융서비스로 정의된다. 국경간 거래와 관련된 쟁점 분야는 자산운용업, 보험 중개업 및 보험 부수 서비스업, 금융정보 처리의 해외위탁 등이다. 현재 각국의 WTO 협상 양허안에는 해상보험, 항공보험, 재보험 등 보험산업의 몇몇 부문을 제외하고는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를 양허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IT기술의 발달로 인해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제도적으로 이를 허용할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선진국들도 감독당국의 정책목표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경간 금융서비스의

거래를 점차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여 향후 협상에 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금융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의 점진적 개방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선진 금융서비스의 국내 금융소비자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통해 국내 금융산업을 더욱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부문으로 만들기 위해서도 해외 금융서비스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제도상의 미비와 개방에 따른 예상치 못한 충격에 대비하여 국내법상 투자자문, 생명보험, 수출입적하·항공·여행 및 선박, 장기상해, 재보험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국경간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국경간 거래를 허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사실상 우리나라는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를 허가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해 규제·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한 국내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목표로 하는 감독당국의 규제와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진출로 인해 국내 시장이 빠르게 외국금융회사에 의해 잠식될 수 있다. 셋째, 국경간 거래의 특성상 상업적 주재를 기반으로 하는 국내진출과는 달리 고용창출, Know-how 이전 등과 같은 시장개방의 부수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미 FTA 금융협상의 결과 국경간 거래가 추가로 허용되는 분야는 보험업을 중심으로 한 일부 금융부수서비스에 국한된다. 우선 보험중개업의 국경간 거래가 허용되는데, 여기에는 ‘비대면방식’이라는 제한조건이 부과된다. 즉, 소비자가 공급자를 직접 만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비대면 방식을 유지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거래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 현행법에도 중개사는 국내법상의 자격요건을 충

족하면 국내에 주재하면서 중개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비대면 방식을 유지하는 한 굳이 상업적 주재가 아닌 국경간 거래를 통한 거래를 시도할 가능성이 적은 것이다. 현재에도 허용되고 있는 국제교역 관련 보험, 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 등의 비대면 방식 국경간 거래의 경우에도 거래규모는 시장규모의 1% 미만으로 극히 미미하다.

또한 계리, 손해사정, 위험평가, 컨설팅 등 보험부수 서비스업의 국경간 거래도 허용된다. 이 중에서 위험평가와 컨설팅의 경우에는 현재 명확한 법규정이 없이 허용되던 거래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FTA로 인한 거래규모의 실질적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들 분야에는 현재 관련 규정이 없지만 FTA를 계기로 등록요건을 신설하게 되므로 규제가 강화되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계리 및 손해사정의 경우 현재 국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제한과 유사한 기준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국경간 거래를 허용하게 되는 바, 이들 분야에서의 국경간 거래는 사실상 자연인의 국내 방문이 수반되어야 확대가 가능하므로 현재에도 허용하고 있는 상업적 주재를 통한 개방과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종합금융회사법은 동업종의 외국금융회사의 사업영위에 대해 상업적 주재(mode 3)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국경간 거래를 고려한 감독조치를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방에 앞서 이와 관련된 감독방안이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국경간 거래를 허용하기 이전에 국내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충분히 향상시키는 동시에 선진제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현재 영업규제중심의 금융감독체제에서 위험중심(risk-based)의 감독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국경간 금융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국내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감독기능의 강화가 전제되어야만 한다는 차원에서 단계적인 개방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의 미개방 ⇒ 부분개방 ⇒ 완전개방의 3단계로 추진하되 각 단계별로 소비자보호를 위한 감독 등 금융서비스 관련 제도의 개선이 실행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금융회사가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를 통해 동아시아를 비롯한 해외진출을 항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각국의 금융산업이 세계화의 물결과 실물거점이 없는 가상공간을 매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전자금융거래가 급속히 발달함에 따라 국가간 금융서비스 거래에서도 국경간 거래의 비중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금융허브 육성계획은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전제해야 하며, 이를 통해 향후 다가올 새로운 세계 금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시스템 전환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업무 편의

국내에 진출한 미국 금융회사가 해외에 정보처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미국측의 요구가 있었는 바, 이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관련 감독체계가 미비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금융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전제로 2년 유예후에 허용하기로 하였다. 전제조건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정보 보호, 위탁받은 금융정보의 재판매를 포함한 재사용 금지, 우리나라 금융감독당국의 해외수탁기관에 대한 검사권 수행가능, 적절한 수준의 전산시설 국내유지 등의 조건 명문화 등이다.

아울러 법적 사실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국내 소재 미국계 금융회사가 백오피스(후선업무) 기능을 미국 본점에 위임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여기에서 후선업무기능이라 함은 금융기관 본연의 업무인 대출·예금·보증 등의 업무를 제외한 인력채용·인사·회계 등의 업

무를 의미한다. 양국은 ‘사정이 허락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국 지점 또는 현지 법인의 일부 후선업무기능을 본점에 통합처리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합의하였는 바, 이 부분은 글로벌 경영의 확대라는 금융산업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미국측에서 요구하였던 투자펀드 원화자산 운용의 해외위탁은 허용하지 않고 2년후에 재협약하기로 하였다.

(4) 공정경쟁

상대국에 진출할 때 금융감독당국의 인·허가뿐만 아니라 관련 협회 가입이 필요한 경우 관련 협회들은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및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였다. 즉 당사국(미국)의 보험협회 등 관련 협회는 자국(미국) 또는 제3국(예컨대 일본)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국(한국) 금융기관을 불히하게 취급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이는 금융협회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들이 그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상대국 금융기관의 자국내 활동을 사실상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미국측은 국내 금융회사와 미국계 금융회사 간에 차별이 없도록 요구사항들을 제시하였는 바, 그중 하나가 우체국 보험문제이다. 미국측의 논리는 미국 보험회사가 국내에 진출하는 데는 제약이 없다고 하더라도 보험시장에서 규제감독 등의 측면에서 우체국 보험에 대하여 특혜를 준다면 사실상 미국 보험회사가 시장에서 공정경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체국 보험도 다른 보험회사와 마찬가지로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결과 우체국 보험이 갖는 공공성을 강조하여 예외를 인정하되, 금융감독위원회의 협조하에 우체국 보험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규제상의 특혜를 줄이기로 하였다.

한편,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특수은행에 대해서도 미국측은 유사한 논리로 특혜 폐지를 요구하였는 바, 이들과 관련하여서는 이들 기관이 공공성을 인정하여 변동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예외 인정은 미국측도 농업금융, 학자금금융, 주택금융 등의 부문에서 정부의 특혜를 받고 있다는 점을 상당 부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 금고 등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지 않고 농림부 등 관련 부처의 감독의 받아온 4개 기관에 대해서는 이들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 협정 발효 후 3년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도록 한다는데 합의하였다.

(5) 투명성

미국측은 우리나라 금융감독 당국이 규제를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하도록 요구하였고 우리나라는 이를 수용하였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구두에 의한 행정지도고 가능하지만 구구 행정지도가 있는 후 이해관계자가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도록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사후적으로 행정지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제시를 허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금융규제의 투명성과 관련한 우려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6) 미국진출 애로 해소 채널 마련

한편,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의 미국 진출과 관련하여 우리측도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을 제시하여 관철시켰다.. 은행업의 경우 뉴욕주 자산유지비밀의무 비율은 폐지하기로 하여 비용절감 및 한국계 은행의 신뢰도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업의 경우에도 재보험 담보요건 완화와 관련된 미국측의 법개정을 2007년 중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7) 신금융상품

WTO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에서는 “신금융서비스”를 기존의 상품 또는 새로운 상품과 관련된 서비스나 상품이 인도되는 방법과 관련된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특정 회원국에서는 제공되지 않지만 다른 회원국에서는 제공되고 있는 금융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미국은 그 동안 다른 국가들과 맺은 FTA 협상과정에서 신금융서비스 개방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왔다. 실례로, 미국 등 선진국들은 WTO 금융서비스 부속서 제15항(금융정보, 금융관련 자료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 및 제16항(자문 및 기타 부수금융서비스)의 제한없는 양허를 요구한 전례가 있었다.

한·미 FTA에서 “신금융서비스”를 개방할 경우 한국은 우리나라 영토 내에 주재하는 미국의 금융서비스 제공자가 국내에서 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 한편, 각국의 FTA협정의 예를 보면, 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개방협정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나 우리나라가 추진한 한국-싱가포르, 한국-EFTA(유럽자유무역연합) FTA에서는 아직까지 신금융서비스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서비스에 대한 개방은 협상상대국에 존재하는 모든 금융서비스에 대한 개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비록 타국에 존재하는 금융서비스가 우리나라의 금융서비스와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금융서비스의 life-cycle이 짧아지고 지속적으로 진화한다는 점과 장래에 출시될 수 있는 잠재적 금융상품에 대한 개방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한편, 감독체계가 미비한 현재의 금융감독체계 하에서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신금융서비스를 허용할 경우, 금융시장을 혼란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금융서비스의 개방은 감독체계가 지금보다 선진화된 시스템을 갖춘 이후에 협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다

시 말해, 신금융서비스 개방에 앞서 금융고객 보호를 위한 국내의 법체계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미국의 금융서비스 분류와 우리나라의 금융서비스 분류간에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아 새로운 개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장래의 개방에 대비하여 금융감독체계의 선진화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신금융서비스를 허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상품 허가에 대해 열거주의(positive system)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포괄주의(negative system)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금융회사가 자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게 된다면 국내 금융회사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현행법체계를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둘째, 금융서비스분야의 대부분은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 경쟁력이 뒤쳐져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아직 개발되지 않거나 거래되지 않고 있는 첨단 금융상품이 개방되는 경우, 국내 금융회사들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외환거래 자유화 조치와 맞물려 빈번한 자본이동으로 인해 국내 금융시장이 불안정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신금융서비스가 개방될 경우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체계가 선진국에 비해 빈약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즉, 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개방은 새로운 상품 또는 방식에 의한 금융서비스 제공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신금융서비스에 대해 상품공시, 분쟁해결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 특히 국내 금융분쟁해결제도의 경우, 분쟁해결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권한이 상호간 합의를 권고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분쟁해결능력에 한계가 있으며, 소비자 분쟁기구간 네트워크가 부족하고 전문성이 낮

아 사후적 소비자보호도 미흡한 실정이다.

한·미 FTA 금융협상 진전과정에서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미국에는 있는 신금융상품의 도입을 어떻게 허용할 것인가가 쟁점이 되었는데, 이러한 신금융서비스 개방은 미국 금융자본의 핵심적 요구하고 할 수 있으며 2차 협상에서 타결되었다.

협상 결과 신금융서비스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될 때에만 허용하기로 하였다. 즉 당사국의 금융감독기관이 자국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신금융서비스를 허용하기로 정책결정을 하였을 때, 신금융서비스가 국내 법상 허용될 때, 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이 현지법인일 때(즉, 지점 또는 국경간 거래의 형태로는 신금융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함), 그리고 신금융서비스에 대해 건별 인허가 제도를 운용할 수 있을 때에만 허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 따르면 국내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현지법인을 통해서만 신금융상품이 공급되므로 사실상 큰 변화가 없다. 이와 같이 국내법의 범위 내에서 국내 금융기관에 대해 공급을 허용하는 서비스와 유사한 형태의 신금융서비스를 상대국 금융기관에도 허용하게 된다. 다만, 새로운 법률을 도입하거나 기존 법률을 변경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자국법 범위 내에서 상업적 주재 형태로만 공급을 허용하기로 하였으며 건전성 감독차원에서 당국의 허가를 명문화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새롭게 개방될 신금융서비스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나아가 개방에 따른 충격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⁶⁾

6) 신금융서비스 개방은 '①상업적 주재가 있어야 하고 ②상대국 법률의 제·개정을 요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며 ③건별로 금융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원칙에 합의했다'며 극히 보수적인 입장에서 금융시장 개방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FTA협상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비할 것이라는 것이 금융협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신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 상업적 주재는 이미 모든 금융영역에서 완전 자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걸림돌이 되지 못하고,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통합법(금융상품의 범위를 기존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으로 인해 ②,③의 원칙도 결국 사문화된 조건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에 대한 반대의 논리를 제시하는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신금융서비스의 주된 대상인 각종 파생상품이나 복합금융상품과 관련하여 국내에는 관련 전문가는 물론이고 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본적 시스템조차 부족하다고 점이다. 일반투자자들에게도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주가지수연동예금(ELD)이나 주가연계증권(ELS) 등 기초적 파생상품마저 대개는 외국금융회사가 설계한 것을 국내 금융기관들은 판매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고도의 수학, 통계학적 논리에 제반 경제적 요인들을 포괄해야하는 파생상품의 특성상 금융의 역사가 짧은 국내 금융기관은 상품개발은 커녕 그 기본적 구조조차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2006년 상반기 국내 금융기관 영업이익 중 파생상품 관련 이익 비중은 3.6%에 불과하지만 국내 진출 외국계 은행의 경우 이 비중이 86.7%나 된다는 사실은 이러한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신금융서비스 수용은 미국 금융기관의 각종 금융상품이 국내 금융시장을 완전히 잠식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며 시장잠식만이 아니라 리스크관리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신금융서비스와 자통법과 관련하여 자통법 통과로 금융상품 허가에 포괄주의가 도입되면 미국 금융기관의 다양한 투자 상품들이 국내에서 판매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내 시장을 미국계에 내주는 워블턴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뿐만 아니라, 미 금융자본의 입장에서 증권사의 리테일부문(지점영업)은 군더더기와 다름없으며 결국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본점에서 이미 개발되어 있는 각종 파생금융상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영업권 자체가 중요하다는 점도 지적한다. 결국 자통법과 관련하여 증권업계에서는 하나증권의 예에서 보듯 리테일부문(지점영업)은 배제한 방식의 M&A가 성행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금융상품의 포괄주의(네거티브시스템)를 채택하고 있는 자본시장통합법은 제정경제부가 한미 FTA 개시 선언 며칠 후인 지난해 2.17일

제정방안을 발표했고, 6월 30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게다가 자통법은 미 무역대표부(USTR) 무역장벽보고서나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한국 금융시장에 요구하고 있는 모든 내용을 전격적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한다. 보다 개방화된 기업주의 금융시스템으로의 전환이나, 대폭적인 규제완화 및 규제투명성 강화,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등이 바로 그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한미 FTA와 자본시장통합법은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한마디로 양자 간의 관련성을 부인한 바 있다. 정부는 『“한미 FTA 금융협상에서 초국적투기자본이 추가적으로 국내시장을 초토화할 어떠한 규제완화 및 개방조치를 합의한 적이 없음...(중략)... 실제 협상에서 우리 측은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했던 국경간 거래와 신금융서비스의 개방을 최소화함으로써 한미 FTA로 인해 추가로 개방되는 금융상품은 거의 없음...(중략)... 신금융서비스 개방도 국내법 체계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즉, 새로운 법률을 도입하거나 기존 법률을 변경할 필요가 없이 자국법 체계 내)에서 허용하되... (중략)... 국내법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내법제상 이를 변경하지 않는 한 추가적으로 개방할 금융상품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이하생략)”』라고 지적하고 있다. 자본시장통합법 중 금융상품의 인·허가권 관련 조항은 없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장내 파생상품 및 장외파생 상품의 거래 규모 제한에 관한 조항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신금융서비스 개방에 대한 부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금융허브를 지향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개발 및 재조합과 수출을 가능하게 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금융상품 거래에 관해 열거주의(positive) 규제방식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제가 많고 이에 따라 금융상품이 다양하게 발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새로운 금융상품의 도입은 동북아 금융허브를 지향하고 있

는 우리의 입장에서 금융상품의 발전과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8) 단기세이프 가드

단기 세이프가드는 외환부족 등 금융유동성 위기 발생시 일시적으로 투자자의 자금 이동을 중지(자금의 해외 유출 일시 정지)함으로써 유동성 위기의 악화를 방지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세이프가드의 필요성은 IMF의 금융위기에서 충분히 검증된 바 있다. 한편, 최근 전 세계적으로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의 단기성 투기자금이 국경 없이 이동되고 있으며, 자본시장의 전격개방으로 외국인 지분율이 40%를 넘나들고 있어 FTA 상황을 전제 시 금융시장 및 경제 전반의 안정을 위한 필수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미국측은 협상에서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경우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생기게 된다면 수용불가 입장을 견지했었으나, 세이프가드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유출입이 제한된 자금을 대해 정상적인 수익이 보장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세부 사항에 대한 정부발표는 없으나 일부 언론에 따르면 조건부 수용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위기시 자본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단기 세이프가드 문제도 끝까지 쟁점이 되었으나 협상결과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게 되었다. 즉, 발동기간이 1년 이내일 것(다만 필요시 미국측과 협의를 거쳐 연장 가능), 몰수(confiscatory) 금지, 이중환율제(dual exchange rate) 금지, 외환규제로 해외로 나가지 못하고 국내에 묶인 자산의 운용에 대한 제약 금지, 불필요한 경제적 피해의 초래를 회피하고 경제여권 개선시 해제, 내외국 차별 및 국가별 차별 금지, 투명한 절차유지(발동시 즉시 공포) 등의 조건들이 그것이다. 이에 따르면 위기시 1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자본유출을 제한할 수 있게 되므로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국내 금융부문에 큰 충

격이 가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작동 조건이 사전 미국에 대한 사전 통보와 승인 등을 필요로 하고, 주식투자자금의 세이프가드 배제, 차입금에 대한 차환불가 조건이 있을 경우 사실 세이프가드 도입은 무의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비판론도 있다.

(9) 지급결제시스템

FTA에서 지급결제시스템(payment and clearing System)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큰 쟁점이 되지 않았지만 안정적으로 효율적인 지급결제제도를 보유하는 것이 원활한 결제활동과 금융시스템의 안전의 기반이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FTA 금융서비스 협정문에 그 내용이 명문화되어 있다. 지금까지 FTA 협정문에 나타난 지급결제시스템 관련 협정문의 기본정신은 외국 금융회사들로 하여금 자국내에서 공공기관에서 운용하는 지급결제시스템 이용과 일반적인 영업활동과 관련한 자금조달 등을 허용하여 자국에 진출한 외국 금융회사가 경제활동 결과 수반되든 자금의 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대내적 제도 인프라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주는데 있다.

우리나라는 FTA와 관계없이 국내 지급결제만 사용에 있어서 국내 금융회사와 외국은행 국내지점과의 차별성이 없으며 참여자격에 있어서 동일한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실제로 지급결제제도 운용·관리규정 제 23조에 의하여 한국은행의 당좌예금거래 금융기관으로서 한국은행 총재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회사들은 한국은행 금융망(BOK-Wire)에 가입한 후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미국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지급결제시스템(Fed-wire funds system) 참여제한이 없다. 즉, 미국은행 국내지점 및 대리점을 포함한 모든 미국 연준회원 금융기관(Federal Reserve Member Institution)은 수개의 하부계좌를 가질 수 있는 주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10) 상업적 주재 문제

국내 감독당국은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진출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으나 현재 극히 일부분야에 대해 양허표상 상업적 주재와 관련된 제한을 유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① 외은지점의 본점자본금 불인정, ②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③ 증권투자시 외국인 등록제, ④ 상장주식장외거래 금지, ⑤ 국내 외국계 보험사 설립의 외국 동종 보험사에 제한하는 조치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금융서비스 상업적 주재 관련 잔존 규제는 크게 상이한 금융 규제 및 감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전성 유지 및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규제,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금융서비스시장 개방, 국내영업을 위한 자격요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국내 건전성 조치와 관련된 사항은 금융 감독 및 규제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당한 규제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특히, 국경간 거래가 증가할 경우, 건전성 유지를 위한 규제로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건전성 유지 및 제고 차원의 조치로써 필수불가결한 부분과 향후 국내 금융서비스산업 선진화 및 발전정도에 따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과의 FTA 협상과정에서 미국 감독체계 및 감독기관의 신뢰성이 보장된다면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 차원에서 상업적 주재 관련 일부 사항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아직 국내에 존재하지 않아서 관련 법규가 없거나 정비되지 않은 부분은 금융시장 발전 및 선진화 측면,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 금융시장 잠식 방지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신용정보업(credit information) 및 투자자문업(investment advisory)의 개념을 각각 금융정보업(financial information) 및 금융자문업(financial ad-

visory)으로 확대하여 개방을 요구할 경우,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업종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전략이 미비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융서비스 분류를 상호 비교한 후 기존 금융상품 및 신종 금융상품 등 금융상품별 개방가능분야를 선정하고, 미래시점의 개방요구에 대해서는 타국간의 FTA의 예를 들어 개방을 불인정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국내 영업을 위한 자격요건 완화 및 개선과 관련해서는 먼저 해당 규제가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인지에 대한 여부, 국내 금융회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차별성과 무관한 조치인지에 대한 여부 등을 조사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를 검토하고, 국내외 금융회사간 차별적 성격을 띠는 규제에 대해서는 차별요인을 제거하여 향후 미국이외의 FTA 협상시에 라도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미 FTA 금융협상 주요 쟁점별 타결 현황>

주요쟁점	공세(요구)국		비 고
	미 국	한 국	
신금융서비스	○		수용
국경간거래	○		수용
자산 운용업	○		외화표시 자산운용의 해외위탁 허용
보험 중개업	○		비대면방식허용
보험부수서비스	○		자연인이동허용
금융정보처리의 국외위탁	○		수용
신용평가업 진출기준 완화	○		국경간거래불허, 진출조건 완화
단기 세이프 가드		○	조건부수용(조건불분명)
급여지급·인사관리·회계업무 국외본점 위임허용	○		수용

제 5 주 제

주요쟁점	공세(요구)국		비 고
	미 국	한 국	
금융정부조달의 내국민대우	○		수용
포괄주의 규제로의 전환	○		수용
임원·이사회 국적 거주지 제한금지	○		수용
산은 등 국책금융기관 FTA 적용	○		협정문에 예외 인정(한국요구수용)
우체국보험 민간보험사처럼 감독	○		수용
금융감독의 투명성 제고	○		수용

※ 참고 : 한국측(업계 요구 반영)이 미국에 건의한 사항

분 야	주요 건의 사항
은 행	자산유지의무비율(90%)의 완화 또는 폐지
	10만 달러 이하 소액예금 취급 금지 폐지
	지역사회재투자법(CRA)의 적용 배제
	주재원의 미국체류신분(Visa Status) 개선
	임점검사의 주기 및 검사기간 단축
	신용평가 별도 요구 철폐
증 권	점포당 자격요건 인원수 완화
	미국의 Qualified Intermediary 제도 개선
	미국의 이전가격배분 관련 보고의무 완화
	미국 현지 사무소 과세 문제
	미 현지법인 설립 시 까다로운 설립절차 및 영업 제한
	공모형태의 증권발행 시 SEC 등록관련 절차 개선
보 험	외국보험사에 대한 예치금 차별 폐지
	재보험사에게 요구하는 담보 또는 보증 요구 완화
	외국보험사업자의 신탁자산 관련 규제 완화
	보험회사의 이사회 임원 자격요건을 완화하거나 폐지

3. FTA 금융협상에 대한 평가

전반적으로 한·미 FTA 금융협상은 금융개방의 일반적 원칙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금융개방의 긍정적 측면은 제도 개선과 개혁의 촉진 및 선진노하우 습득이고 부정적 측면은 단기적 자본이동으로 인한 시스템의 불안정화 가능성이므로 금융서비스의 국경간거래에 대해서는 보수적이되 제도개선 및 상업적 주재의 확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필요가 있다. 한편, 금융개방이 이득이 되는지의 여부는 개방 당사국의 수용능력(absorbative capacity)에 의하여 크게 좌우되므로 금융부문의 발전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방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미 FTA 금융협상에서 여러 항목들이 2-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이로써 우리나라의 금융선진화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며 우리나라 금융부문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FTA가 금융선진화의 촉매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러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한편, 금융서비스는 비교역재로서 상업적 주재를 통한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금융상품 자체의 국경간 거래와 관련한 추가 개방은 없기 때문에 FTA 금융협상의 효과를 계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러나 추가개방분야가 금융상품 거래가 아닌 부부 서비스의 거래이며 양국 금융회사들의 업무 편의와 관련된 내용들을 위주로 협상이 진행되었음을 고려한다면 개방확대의 직접적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FTA를 계기로 그동안 제도정비가 미흡했던 부분에서 일부 법·규제의 정비가 예상된다. 국경간 거래공급자의 등록요구 근거를 마련하여야 하고 양국 감독당국간 정보교환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야 하며 금융정보처리 해외위탁과 관련한 감독규정의 마련, 금융감독위원

회와 우체국보험과의 협의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절차 마련 등이 예상된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금융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깝게 선진화되고 투명해짐으로써 중장기적으로 금융회사간의 경쟁을 심화시켜 금융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융제도의 선진화 및 투명화는 미국 금융규제당국의 한국 금융제도 및 한국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미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의 영업여건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규제당국은 외국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검사시에 해당 금융회사 모국(home country)의 규제감독 수준을 명시적·비명시적으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미 FTA 체결과 금융관련법의 재·개정이라는 환경변화는 1차적으로 증권, 보험 등 제2금융권에 대한 미국 금융자본의 급속한 유입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는 입장도 있다.

4.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한·미 FTA가 체결된다면 분명한 것은 금융시장의 개방 폭이 좀 더 확대된다는 것이다. 1996년 OECD가입과 1997년 외환위기는 금융서비스의 개방을 선진국 수준까지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투자부문에서 외국인의 주식 및 채권 투자가 완전히 자유화되었다. 외국인이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게 된 것은 1992년부터였다. 당시에는 특정종목을 10%이상 보유할 수 없었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한도가 늘어나면서 1998년 5월부터는 한 기업의 주식을 모두 살 수 있게 됐다. 은행과 증권 부문에서 이전에 금지되었던 현지법인 설립까지 허용되어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법적 형태에 대해 대부분 허용되었다. 또 1999년에는 금융서비스의 해외소비와 국경간 공급이 해상보험업, 신용평가업, 신용정보업, 투자자문업에 대해 허용되었다. 증권업 및 외환거래의 해외소비도 허용되었다. 은행업 중 외환업무에 관한 각종 제한도 폐지되었다.

2006년에는 국내 자본시장에서 비거주자의 원화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 외국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과 단기 원화증권 발행이 허용되었다.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가 허용되면 국내 거주자들이 인터넷 등 전자상거래를 이용해 곧 바로 미국에 있는 은행에 예금도 하고 대출도 받게 되며 미국에 있는 보험회사에 보험도 가입할 수 있다. 이는 조달금리 등의 이점으로 외국의 금융사들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고수익 상품을 선보이면 국내 시장의 잠식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일반 국민들은 더욱 안전하고 보다 높은 수익성을 보장해주는 금융기관과 거래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국경 간 거래에 대한 규제가 없어진다면 세계적으로 명망 있는 우수 금융기관으로의 자금이전이 일어날 것이다. 국내외 금리 차이도 자금유출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럴 경우 잘못하면 안전성과 수익성 면에서 경쟁력이 약한 국내 금융산업이 큰 타격을 입게 됨은 물론 금융시장의 불안정이 커지고, 심지어는 외국금융기관들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국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큰 파장이 우려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국과 다른 나라가 체결한 기존의 FTA 협정문에는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 허용을 본문에 규정하고는 있지만 거래 가능한 범위를 국가별 여건을 반영해 부속서에서 정하고 있다.

한국의 증권, 투신업의 경우 결국 규제는 완화되고 증권업은 주식과 채권투자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해질 것이다. 국내 소비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뉴욕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주식을 곧바로 미국 증권사를 이용해 사고파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국경간 거래가 허용되는 것은 지금처럼 외국의 금융기관이 국내에 진출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창출이나 선진금융기술의 이전 등과 같은 부수적 효과도 이끌어 내기 어려워질 것이다. 그 외 모든 금융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쟁점사항으로 고객에게 판

매할 수 있는 금융상품종류를 법에 열거해 놓은 ‘포지티브시스템(원칙 금지, 일부허용)’을 ‘네거티브시스템(원칙 허용, 일부 금지)’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할 것이 전망된다.

이처럼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는 단기적으로 외국계 금융기관의 진입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그것은 금융산업의 선진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아직 거래되지 않고 있는 새로운 첨단 금융상품의 등장은 한편으로는 동북아 금융허브를 지향하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금융시장의 발전과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생각할 수 있다.

연구 한 년 간

토 론 문

이 훈 중

(동국대학교 법대교수)

강준모 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의 전자금융에 대한 우리나라 국내법 규제내용과 개선방안, 현대호 한국법제연구원 산업경제법제연구실장의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개방과 FTA, 강현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식서비스단장의 전자금융거래로 인한 금융산업의 변화 전망, 김선광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전자금융과 지급결제업무에 관한 법적 고찰 및 오일환 중국 정법대 교수의 중국 전자금융거래입법의 현황과 과제 등 5분의 발표를 흥미 있게 경청하였다.

5분 모두 좋은 발표를 하여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이중 강준모 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의 발표를 중심으로 토론을 전개하고자 한다. 발표자는 마일리지·포인트 등의 확산과 전자금융거래법 규제와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발생시 이를 구제하고 보완할 수 있는 통일적인 규범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에 대하여 다양한 법규가 적용되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법규를 이해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하며, 효율적으로 전자금융거래를 규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통일적인 규범을 마련할 필요가 크다고 사료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하여 발표자의 고견을 들어보고 싶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요건을 충족하는 마일리지 등에 대해서만 전자금융거래법의 규율대상이 되며, 금융위원회가 감독검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마일리지 등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공정위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규제할 수 있다. 적용법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현실

적인 문제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규범을 마련해야하는지 발제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검사권이 금융위원회, 행안부, 및 지경부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예를 들어 새마을금고의 보험(공제)가입기준은 지방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과 동일하지만,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검사권은 행안부에서 행사한다.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검사권이 나뉘어져있기 있기 때문에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규범을 마련해야 하는지 발제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발제자에 따르면 “항공마일리지 사용에 대한 소비자보호 대책을 공정위에서 추진하여 최근 항공마일리지의 경우 소멸시효 10년 연장, 마일리지 좌석확대 등 많은 정부차원의 대책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항공마일리지의 경우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대책은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일리 있는 대책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상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며(상법 제64조), 민법과 상법은 이보다 짧은 다양한 단기의 소멸시효를 인정하고 있다. 민법은 다양한 채권에 관하여 3년(제163조)과 1년(제164조)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은 2년(제662조), 1년(제121조, 제147조, 제662조) 또는 6개월(제154조) 등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다른 법과의 통일적인 소멸시효기간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하면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대책이 타당한가에 대한 발제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토 론 문

김 형 준

(한국정보화진흥원 책임연구원)

- 전자금융에서의 스마트폰의 도입에 관하여
 - 다양한 접속환경, 개인정보, 이메일 저장 등 통합단말기 역할로 인해 스마트폰은 기존의 유선 및 PC이상의 보안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 특이성 존재
 - 스마트폰의 이용확대는 무선 인터넷 환경에서의 바이러스 감염, 해킹 등 보안사고로 인한 피해 증대가 가능하며, 7.7 DDoS와 같은 사고가 모바일 환경에서 재현 될 가능성이 높아짐¹⁾
 - 최근 공공부문 및 금융거래분야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업무처리 및 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안문제 제기
 - 국가정보원은 스마트폰으로 내부 전산망에 들어가 전자결재를 하거나 내부 이메일을 열람하는 행위를 제한할 것을 지시하는 공문을 모든 공공기관에 송부(2010.1)
 - 독일정부는 보안문제로 공무원에게 블랙베리와 아이폰 사용 금지를 권고(2010.8.11)하였으며, 프랑스도 아이폰 등에 대한 정보유출 및 통화도청 가능성을 경고 (2010.8.6)
 - 스마트폰의 이동성 등에 따른 악성코드 노출가능성이 증대될 수 있기 때문에 PC와는 다른 금융거래상의 보안정책이 필요할 수 있음
 - 고정적 위치기반을 가진 PC와는 달리 상시 이동성 및 휴대성이 강하기 때문에 분실·도난에 따른 보안 위협을 고려한 정책 필요

1) 스마트폰을 이용한 악성코드로 Hobbs, CxOVER, Commwarrior, PBStealer, Allcano, Flocker, Porn-Dialer 등스마트폰을 통한 악성코드의 증가(약 600여 종 발견)

- 그러나, 지극히 개인화된 단말기의 사용에 따른 개인정보의 유출가능성·오남용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접근방식이 필요

□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공인인증서 사용에 관하여

- 온라인상의 인증방식으로 현재 전자서명법의 공인인증이 가장 보편적 방식으로 활용 중
 - 현행 전자서명법에서는 전자문서의 유통 등을 위하여 전자서명에 따른 방식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고 있으므로 전자서명이 곧 공인인증서에 의한 방식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님
 - 다만 전자서명법은 공인인증서에 의거한 전자서명에 법률당사자간에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민사책임의 특칙을 인정하는 등 공신력을 부여²⁾
 - 특히 1998년 은행에서 먼저 시작한 PKI방식의 사설 인증서를 2002년 인터넷 뱅킹시 공인인증서 기반으로 전환해서 현재까지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용하고 있으며, 공인인증서 방식은 대부분의 온라인 거래에 있어서 본인확인 수단으로 널리 사용
- 그러나 공인인증서 방식은 ① 사용의 불편성, ② 보안상의 취약점 노출, ③ 전자문서 활성화와 전자거래의 걸림돌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음
 - 공인인증서는 아무 제약 없이 물리적으로 복제가 가능하며, 모든 PC(USB, 하드)에서 그 위치가 동일하여 해커에게 쉽게 노출 될 수 있고, ActiveX를 기반으로 하는 MS-Explorer에서만 설치 및 사용이 가능한 폐쇄적인 구조

2) 제26조제1항 ;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공인인증서를 신뢰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인증기관이 과실 없음을 입증하면 그 배상책임이 면제된다.

※ 05년 발간된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의 ‘공인인증서의 사용과 소비자의 반응에 대한 연구’에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불편사항을 보면 공인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절차가 복잡하다(54.5%), 제한된 저장매체를 이용하고 있다(36.2%), 거래사이트에서의 인증서를 사용하는 절차가 복잡하다(36.2%)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국무총리실의 주관으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 인증방법의 안전성 가이드라인’을 발표³⁾
- o 공인인증서 이외의 방식으로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전자금융감독규정 등 관련 법규가 개정되었으나, 현재에도 여전히 공인인증서에 의한 방식으로만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
 - 공인인증서 이외의 방식으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으나, 공인인증서 이외의 방식을 채용하는 경우 공인인증서와는 달리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다른 방식은 인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10년 6월 전자금융감독규정의 개정으로 공인인증서 이외의 방식으로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방식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인증방법평가위원회를 두고 동 평가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인증방법을 제안하여 평가를 요청할 경우 동 인증방법의 기술적 안전성을 평가하고 해당 인증방법이 적용될 수 있는 전자금

3) 전자금융거래시 적용될 인증방법이 갖추어야 할 기술적 안전성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서, ① 이용자 확인(이용자 인증), ② 서버(정보처리시스템)인증, ③ 통신채널 암호화(기밀성), ④ 거래내역의 위변조 방지(무결성), ⑤ 거래부인방지 기능 등 5개 항목이 제시되었고,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각자의 거래유형이나 보안위험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인증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 요건을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선택권을 부여

용서비스의 이체(이용)한도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으로는 공인인증서 방식만을 강제하는 결과 초래

- 스마트폰은 플랫폼 다양성, 이동성, 휴대성 등으로 공격·침입 가능성은 높으나, 본인추정력은 강하므로 강화된 보안정책과 완화된 인증정책의 상호 조화가 필요
 - 다만 강화된 보안으로 인해 사용의 편리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보안과 활용성 양자의 적절한 고려 필요
- 기존 온라인상에서 활용된 공인인증서 중심의 인증체계를 플랫폼과 앱의 구현형태가 다른 스마트폰 이용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곤란
 - 스마트폰에서는 각각의 앱 마다 독립된 저장공간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독립된 어플리케이션 마다 독립된 공인인증서를 자기고 있어야 하는 등의 문제점 발생
 - ※ 금감원이 스마트폰 보안기준을 유선에서 액티브X기반으로 작동되는 공인인증서 도입, 악성코드 예방대책 등을 제시함으로써 글로벌 흐름에 부합하지 못하다고 보안전문가 비난
 - 정부는 공인인증서 의무화 규제를 폐지하여 모바일 전자결제를 할 때 공인인증서 대신에 금융기관에서 인정하는 다른 인증방법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정성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으나, 금융업권은 공인인증서 외에 대체인증방안 제시에 소극적
- 공인인증기관에 의한 공인인증서 방식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는 현행 전자서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선 필요
 -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의 공인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제21조제3항)”고 하여 실질적으로 공인인증서 방식을 강제

- 금융위원회 역시 “전자금융 감독규정” 제7조에서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이하 ‘공인인증서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정해두어 공인인증서 이외의 방식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도 인정하고 있으나, 다른 방식에 따른 경우 별도의 심의를 거치고 금융감독원이 그 이용범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은행, 카드사 등 전자금융 사업자들이 오로지 공인인증서만을 사용하도록 사실상 강제
- o 미국 등 국제적으로도 특정 방식의 인증을 강제하기 보다는 기술중립성에 기반한 다양한 인증방식을 인정
 - 미국의 경우 미국 연방 금융감독 위원회가 2005년에 작성한 “인터넷 뱅킹 환경에서의 인증(Authentication in an Internet Banking Environment)”이라는 문서에서 “특정 기술을 지지하지 않는다(This guidance applies to both retail and commercial customers and does not endorse any particular technology.)”고 명시
 - 은행감독에 관한 바젤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의 “전자금융 위험관리 원칙”은 전자금융 보안에 있어 특정 기술을 강제하지 않고 개인의 신원확인 및 거래를 위한 모든 종류의 인증 기법을 인정⁴⁾
- o 공인인증서 이외의 방식에 의한 인증의 경우에도 당사자의 합의, 또는 금융기관 고객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기관의 개입을 최소화할 필요 있음

4) 은행은 PIN, 암호, 스마트카드, 생체정보, 디지털인증서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인증 기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어떤 인증 기법을 사용할 것인지는 전자금융 시스템 전반 또는 각 구성 부분이 제기하는 위험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에 기초하여 은행이 결정한다고 명시

- 개별 사업자가 인증방식에 관한 별도의 기준과 이용범위를 설정하는 가능성은 업계의 자율적, 창의적 선택에 맡겨두면 적절하고, 공인인증제도의 일부로서 일괄 제공할 성질은 아님
- 공인인증서 외 인증방법의 대안으로 생체정보(지문, 홍채, 정맥, 음성 등), 보안토큰 방식(USIM⁵⁾, IC카드 등) 등 전자금융 거래의 특성상 정확하고 신속한 거래를 원활하게 지원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한 접근방식 필요

5) 그러나 이에 대하여 USIM에 가입자인증서를 저장하는 것이 무선단말기에 이미 제공되는 방법으로 인증서를 저장하는 기법보다 탁월하거나 유리하다는 점에 대한 확립된 견해도 없고, 현재 널리 사용되는 USIM은 인증서를 저장하기에 충분한 용량도 아니라는 주장이 있다(고려대 김기창 교수).

토 론 문

김 유 석

(한국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산업팀장)

1. 사이버 금융회사(인터넷 은행) 허용 관련 법적 쟁점(강현구 단장 및 강준모 선임 발표에 대한 토론)

- 최근 입법을 시도한 인터넷 은행의 개설 허용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실명법 및 전자서명법 등 관련 법령상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당사자의 본인 여부의 확인을 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 해결이 필요함
 -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인터넷 은행을 포함)의 본·지점 또는 영업소 등에서 금융회사 임직원과 대면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어야 사이버 금융회사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음
 - 외국의 경우 사이버 금융회사의 설립 및 영업활동에 있어서 금융소비자의 계좌 개설 및 금융거래 자체를 사전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으며, 추후 금융소비자의 계좌에서 출금(또는 환매)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본인을 확인하도록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어서 제도적으로 우리의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를 위한 사전적, 대면 방법에 의한 본인확인 절차의 개선을 위한 방법론적 접근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 금융투자업 관련하여서는 펀드의 판매를 독립적으로 사이버공간에서 전적으로 영위하는 업자(가칭 ‘펀드수퍼마켓’) 제도의 도입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동제도의 도입을 위한 대전제는 결국 본인의 실명확인 방법의 다양화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참고하여 금융실명법상 다양한 본인 확인 제도 도입을 검토할 단계로 판단됨

2.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제도의 유용성 제고에 대한 문제점 (김선광 교수 발표에 대한 토론)

□ 자본시장법상 투자자의 분류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고 있는데, 전문투자자를 별도로 구분한 실익이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자본시장법에서 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투자권유규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시장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였을 때 금융투자업자와 대비하여 비대칭적인 지위에 있는 일반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 입법정책적으로 내재되어 있음

○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사건 및 KIKO 사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재산상태, 투자경험 등에 따른 투자위험의 감내 정도에 차이가 있음

- 투자에 따른 위험(시장위험, 법률위험, 발행법인 파산 위험 등)에 대하여 금융투자업자에 준하거나 그와 동등한 정보수집 및 분석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의 경우에 대하여는 투자권유 및 판매 단계에서 일반투자자와 구분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제도의 기본정신에도 부합하는 것을 사료됨

토 론 문

손 영 화

(선문대 법대 교수, 법학박사)

I. 서 설

전자금융법제에 관한 5분 발표자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중 간략하게 3분의 발표문에 대하여 각각 하나 정도의 질문이나 코멘트를 하는 것으로 토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II. 토론 내용

1. 전자금융에 대한 우리나라 국내법 규제내용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이용자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에 따라 금융거래정보 취급이나 금융유관기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의 위조·변조 기타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이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는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에는 사실상 거의 모든 금융기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우체국은 지식경제부의 소관하에, 새마을금고와 연합회는 행정안전부 소관하에 있어 금융감독원에서 감독 검사권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발표문 9페이지에서 “다른 접근장치 분실(ex. 신용카드)의 경우에 금융기관 등이 책임을 지는 것과 비교하여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

단을 분실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를 부담시키는데, 이는 동 접 근수단에 충전된 가치를 결국 현금과 같은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음에 기인한 것이다. 다만 후술하겠지만 분실·도난 신고시점 이후라 하더라도 실무상으로는 발행업자가 해당 금액을 진정한 소유자에게 돌려 주지 않고 있어 이 부분을 실무적으로 풀어야 할 것인지 관련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인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전자화폐의 경우에는 당연히 화폐의 분실이 현금의 분실과 동일한 위험이 있다고 사료되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와 같이 언급한 것인지요?

2. 전자금융거래로 인한 금융산업의 변화 전망에 대하여

오늘날 전자금융거래는 이른바 스마트폰의 사용에 의하여 급속히 진 전할 것으로 생각된다. 스마트폰은 2010년말 기준으로 500만대 핸드 폰 사용자 가운데 2-30%인 100만 이상의 고객이 사용할 것으로 전망 된다고 합니다. 통신사업자와 금융사업자의 융합의 경우 얼핏 생각해 서 통신규제와 금융규제를 중복해서 받게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은 아 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하여 연구되어진 것이나 실무상 문 제제기된 것이 있으면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전자금융 지급결제업무에 관한 법적 고찰에 대하여

발표문의 중심적인 축이 이른바 금융소비자의 보호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금융소비자의 보호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약간의 의문이 있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금융소비 자보호문제가 표면으로 부각되게 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얼마 전에 발생한 금융상품인 KIKO의 판매와 관련된 중소기업의 도산 등이 그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는 이른바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를 분리하

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할 때, 예컨대 KIKO상품을 구매한 중소기업과 같이 일반사기업인 회사에게도 금융소비자로서의 보호를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